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B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ontents

- 발간사
- 제1장 서 문 1
-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G20 정상회의 5
 - 1. 글로벌 금융위기와 G20의 대응7
 - 가. 개 요7
 -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7
 - 다. G20의 위기대응10
 - 2. G20 정상회의10
 - 가. 워싱턴 정상회의10
 - 나. 런던 정상회의12
 - 다. 피츠버그 정상회의13
- 제3장 FSB의 설립과 금융규제 개혁 논의 17
 - 1. FSB의 설립 및 조직구성19
 - 2. 금융규제 개혁의 논의 구조22
 - 3. FSB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23
 - 4. 한국의 역할26
- 제4장 금융규제 개혁 분야별 논의 현황 29
 - 1.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31
 -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44
 - 가. 대형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위험 축소44
 - 나. 다국적 금융회사 정리51
 - 다. 공동감시단53
 - 3. 보상체계 개선57
 - 4.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65
 - 5. 회계제도 개선70
 - 6.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76
 - 7. 기 타78
 - 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78
 - 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81
 - 다. 국제기준이행 및 비협조적 지역(국가)에 대한 대응85
 - (1) 국제기준이행85
 - (2)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비협조 국가 대응88
- 참고자료93
 - 1.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95
 - 가. 워싱턴 정상회의95
 - 나. 런던 정상회의103
 - 다. 피츠버그 정상회의121
 - 2. FSB 정관 (FSB Charter)144
 - 3. FSB 총회 주요내용153
 - 가. 창립 총회 주요내용153
 - 나. 제2차 총회 주요내용157
 - 다. 제3차 총회 주요내용161
 - 4. 국제기준 제정기구177
 - 5. G20 및 FSB 일지185

I 발 간 사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였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지도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때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되면서 전세계에 대공황의 공포가 드리워지기도 하였으나, 각국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대응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특징중의 하나는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대응이 전례 없이 확고한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경제를 이끌던 G7 위주의 논의구조로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BRICs 및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이 포함된 G20이 새로운 글로벌 최상위 경제협의체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G20 차원에서 진행중인 정책의제는 거시경제정책 공조부터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개혁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있지만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혁이 G20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시스템 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역은 금번 위기를 통해 그 위상이 강화된 금융안정위원회(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G20으로부터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규제 개선의 임무를 부여(mandate)받은 FSB는 G20이 정한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부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규제개혁 작업까지 총괄 조정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그간 그 중요성에 비해 일반 국민들에게 덜 알려진 FSB의 활동 성과와 최근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우리나라가 FSB 논의과정에 기여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려는 목적에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FSB의 논의 동향 제시를 통해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망해보면서,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향후 대응방향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실제 FSB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개혁 과제는 금융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결정지를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10월 FSB 총회의 개최국으로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 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FSB의 논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간 보도자료 등을 통해 FSB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알려져 있으나, 이 보고서는 금번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시작으로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개혁 방안과 그에 대한 이론적 배경까지 총망라했기 때문에 금번 금융위기를 되돌아보고 향후 금융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외교사뿐만 아니라 금융 역사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금융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간 바쁜 업무중에도 이 책자 발간을 위해 수고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4월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제 1 장

서 문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위기의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당면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국제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했고, 동시에 향후 위기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질서와 금융규제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기구와 G7 위주의 논의 구조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고, 위기를 초래한 기존의 국제 금융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기존의 G7을 대신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신흥국이 참여하는 G20이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금융질서 개편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첫 번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제2차 회의가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제3차 회의가 2009년 9월 피츠버그에서 개최되었다.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간 논의 구조가 G7에서 G20으로 전환되면서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국제적 논의 구조도 G7 중심의 금융안정포럼(FSF)에서 G20을 구성하는 각국 금융당국과 국제기구 제정기구를 포괄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FSB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G20의 출범과 함께 태동한 FSB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우선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 개편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논의 진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국제 금융질서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던 데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 금융 기준의 설정자(rule setter)의 일원이 된 것이다. 또한, 국제 금융시스템 개편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선진화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를 국내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우리 금융시장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변화 현장에 참여해온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FSB에서의 금융규제 개혁 관련 논의 경과와 성과를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자의 구성은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FSB 설립 등 국제적 대응 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다음, 금융규제 개혁 분야별로 구체적인 논의 현황을 기술하는 순서로 짜여졌다.



제 2 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G20 정상회의

1. 글로벌 금융위기와 G20의 대응
 - 가. 개요
 -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 다. G20의 위기대응
2. G20 정상회의
 - 가. 워싱턴 정상회의
 - 나. 런던 정상회의
 - 다. 피츠버그 정상회의

1. 글로벌 금융위기와 G20의 대응

가. 개요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내에 그치지 않고 다국적 금융회사와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확산되었다. 위기의 발단이 된 서브프라임모기지론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금융상품 부실이 표면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극도의 신용경색에 빠져들었고, 건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금융회사까지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세계적인 신용경색의 여파로 국가간의 교역이 위축될 조짐을 보였으며, 주가가 폭락하고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되는 등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워싱턴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 금융기구가 참여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은 다음과 같이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였다.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¹⁾

(1) 저금리 체제하의 과도한 위험 선호 현상

2007년 여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금융시장 혼란의 원인중 하나는 전세계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였다. 저금리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대규모 경상수지 불균형,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여건 등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와 같은 저금리 여건하에서 투자자들은 정상적인 기대수익을 벗어난 초과수익을 찾아 나섰고, 그 결과 신용위험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평가를 하고 제대로 된 실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했는데, 투자자가 금융상품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레버리지가 크고, 리스크를 감추고 있는 상품들

1) 워싱턴 정상회의 결과, 금융시스템 개혁논의를 위해 4개의 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이중 WG1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진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전성 규제 및 투명성 제고(Enhancing Sound Regulation and Strengthening Transparency)” 보고서를 런던 정상회의에 제출(2009년 4월)

- WG1: 금융감독규제 개선 및 투명성 강화
- WG2: 국제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 WG3: 국제금융기구 개혁(IMF)
- WG4: 국제금융기구 개혁(세계은행 등)

이 많았다. 이러한 금융상품들이 전세계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 CDS)이나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 CDO) 등 신용위험을 전가시킬 목적으로 설계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지만 금융회사들은 적절한 모니터링과 위험 관리에 실패하였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금융혁신을 가속화시키면서 부외거래와 구조화 투자회사(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 : SIV) 등을 이용하여 규제를 회피하였다. 이렇게 규제받지 않는 부외거래와 금융회사 등을 통해 기존 규제 및 회계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자본이나 유동성 확보 없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회사 내부의 리스크 관리와 금융감독은 이러한 금융회사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의 수익만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산가격의 상승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었다.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의 가격도 하락하여 이들 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금융시장의 혼란이 구조화 상품과 증권화 상품으로 확산됨에 따라 위험 회피 성향은 증대되고 유동성은 축소되었으며, 주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융회사 상호간에 자금회수가 촉발되었다. 대다수 금융회사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실물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금융규제와 감독의 취약성 노정

일부 선진국의 규제당국과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위험 선호 현상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금융시장과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금융시장간의 상호 연관성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였다.

이는 통합되지 않은 감독구조와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하나의 원인이며 구조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익스포져 규모 파악 및 금융상품의 가치평가가 어려웠던 점도 금융위기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확산시킨 원인으로 작용한 금융규제 측면에서의 취약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

① 시스템 위험에 대한 감독 미비

시스템 위험은 과소평가되었으며, 시스템 위험을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안이 미흡하였다. 또한, 규제 받는 금융시장과 규제 받지 않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다.

② 헤지펀드 등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와 감독

금융위기 이전에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 PEF) 등과 같이 규제되지 않거나 규제가 취약한 금융상품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규제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위험추구에 대한 감독이 미흡했고, 거래상대방이나 시장규율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만이 강조되었다.

③ 신용평가기관의 문제점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불완전한 신용등급 측정모델 및 신용평가과정에서의 이해상충이 만연하였다.

④ 자본규제 및 회계시스템에 의해 증폭된 경기순응성

자본규제 및 회계시스템은 경기순환주기를 증폭시켜 경기 호황기와 경기 불황기의 진폭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⑤ 취약한 위험관리와 잘못된 보상체계

일부 금융회사에서 사용되는 위험관리 방안은 단기간의 과거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였고, 구조화 상품에 대한 잠재 손실 발생가능성 및 발생손실 규모 측정이 미흡하였다. 또한, 성과보상 체계도 장기적인 위험 관리를 중시하지 않고 단기간에 높은 위험을 감수하게 하였다.

⑥ 불충분한 공시

금융회사는 대차대조표 등에 각종 위험의 종류 및 정확한 규모에 대해 명확히 공시하지 않았다.

⑦ 정리 절차의 취약성

기존의 금융회사 정리 절차는 부실 금융회사의 시스템 위험이 높을 경우 적절하지 않았다. 또한 각국의 금융회사 정리 절차는 국경간 정리에 있어 효과적이지 않았다.

⑧ 다양한 장외상품 거래시장에서의 투명성 결여

투자자 등 시장 참가자들은 장외상품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가격, 거래규모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얻을 수 있었다.

다. G20의 위기대응

유례없는 금융위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대응체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G11 또는 G14²⁾ 정도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G20 체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G20 국가들은 전세계 인구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점하고 있어 금융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이다. G20은 각국 정상들이 직접 전면에서 나서고, G20에서의 논의 결과가 각국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향후 국제 금융질서를 규율할 수 있도록 결속력과 구속력이 강화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G20은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함께 명실상부한 세계경제의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로 발전하였다.

2. G20 정상회의

G20은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와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통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고, 2011년부터는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참고자료 1).

가. 워싱턴 정상회의

(1) 워싱턴 정상회의의 개최

2008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위기가 시시각각 확산되는 와중에 열린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급속도로 번지는 위기의 불길을 잡는 것이 급선무였다. 정상들은 우선 당면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였다. 이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거시경제정책의 공조와 금융시장의 개혁, IMF의 역할 및 기능 강

2) G7: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 주요 7개국

G11: G7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G14: G11 + 각 지역대표(예: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프랑스가 G14안 제시)

화, 신흥국의 지위 강화, 보호무역주의 경계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하였다.

(2) 워싱턴 정상회의의 성과

(가) 거시경제정책 공조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공조해 나간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이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 금융시장 개혁 : 47개 과제 제안

또한, G20 정상들은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기존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ii) 금융감독규제 개선 (iii)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iv) 국제적인 협력 강화 (v)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 원칙에 합의하고, 47개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 FSF)의 회원국을 확대하고,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금융개혁 추진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다) IMF의 역할 및 기능 강화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IMF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금융위기가 발생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IMF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위기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IMF를 중심으로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를 갖추기로 하였다.

(라) 신흥국의 지위 강화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국의 발언권과 지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FSF 등 국제기구의 회원범위를 신흥국으로 확대하고, 신흥국에 대한 국제기구 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마) 보호무역주의 경계

G20 정상들은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국가가 자국 산업과 고용을 보호

하려는 보호무역주의에 빠질 위험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G20 정상들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원칙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구체적으로 향후 12개월간 새로운 무역규제의 신설을 자제한다는 규제동결(Standstill) 원칙을 결의하였다.

나. 런던 정상회의

(1) 런던 정상회의의 개최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 마련이었다. 이 무렵 금융시장의 불안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물경기가 장기 침체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정상들은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금융개혁 방안의 기본 틀(Framework)을 마련하였다.

(2) 런던 정상회의의 성과

(가) 거시경제정책 공조

G20 정상들은 2010년까지 G20 회원국이 모두 5조 달러 규모의 재정을 추가 지출하고, 지속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IMF로 하여금 각국이 취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추가조치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G20 공동으로 부실자산 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나) 보호무역주의 저지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G20 정상들은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규제동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무역 관련 규제동결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로 하여금 회원국들의 무역 관련 규제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하도록 하였다. G20 정상들은 특히 런던 정상회의에서 무역과 관련된 보호주의뿐만 아니라 투자와 금융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세계경제가 개방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다) 신흥국에 대한 지원 확대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흥국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IMF의 재원을 2,5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늘리고, 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 SDR) 2,500억 달러의 신규 배분을 통해 국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며, 무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2,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라) 금융감독규제 강화 : 8개 분야 개혁과제 제안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시장 개혁은 8개 분야의 금융개혁과제를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8개 분야의 개혁과제는 (i) FSF의 회원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하여 FSB로 확대 개편하고 (ii) 금융회사들에 대한 자본규제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며 (iii) 헤지펀드 등 규제의 사각지대로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iv)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 NCJ)을 제재하며 (v)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vi) 신용평가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며 (vii) 국제 회계기준을 개선하고 (viii)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감시단을 설립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마) 국제금융기구 개혁

G20 정상들은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혁조치의 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IMF에 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 FCL)를 신설하고, 조기경보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IMF의 국가별 출자지분과 세계은행의 투표권을 신흥국에 더 배정하는 내용의 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그 시기를 각각 2011년 1월과 2010년 봄으로 앞당기기로 하였다. 이밖에 선진국 출신 인사에 편중된 국제금융기구의 장과 고위직을 능력 위주로 선출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다. 피츠버그 정상회의

(1)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개최

2009년 9월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는 런던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

리였다. 이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거시 정책 공조를 통해 실물경제도 최악의 침체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인식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긴급한 위기 상황을 수습한 G20 정상들은 G20 체제를 통해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2)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성과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i)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G20 체제의 정착 (ii) 단기적 정책 공조 (iii) 장기적 정책 공조 (iv) 국제 금융규제체계 강화 (v)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vi) 위기 이후의 과제 등 크게 6개 분야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가)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 및 G20 체제의 정착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G20 정상회의를 2011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G20은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제4차 정상회의를 열고, 같은 해 11월 한국에서 제5차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어 2011년 프랑스가 개최하는 정상회의부터 매년 1회의 정례회의를 갖기로 한 것이다.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는 G20이 세계 경제협력의 최상위 협의체로 정착되었음을 선언하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2010년 제5차 G20 정상회의의 유치를 확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G20의 주도적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단기적 정책 공조

단기적인 정책공조에 관한 논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의 초기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남에 따라 그동안 G20이 추진했던 적극적 재정확대와 확장적 통화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G20 정상들은 당시 세계 경제상황에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고 경제회복이 불완전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단계적이고 신중한 출구전략을 시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즉, 출구전략은 (i) IMF와 FSB의 지원을 받아 2009년 11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하여 (ii) 경제회복이 확고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iii) 국제 공조의 원칙 아래 실시한다는 3가지 원칙에 입각하기로 하였다.

(다) 장기적 정책 공조

장기적 정책공조는 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튼튼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의 틀을 마련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G20 정상들은 “정상수지 적자국은 민간저축의 증대 및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상수지 흑자국은 국내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같은 정책공조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국간에 정책에 대한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IMF는 각국의 거시정책에 대한 정책감시(Surveillance)를 강화하고, 회원국간의 상호평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G20 정상들은 2009년 11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상호평가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후 2010년 6월 제4차 정상회의에서 첫 번째 상호평가 결과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라) 국제 금융규제체계 강화

G20 정상들은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8개 분야 금융규제개혁과제를 중요성 및 시급성에 따라 6개 우선과제로 재분류하고, 금융권 분담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G20 정상들은 (i)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새로운 자본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2012년까지 이행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다만, 강화된 자본규제 기준은 경제회복이 확실해진 이후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G20 정상들은 (ii)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 방안 및 감독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iii)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큰 기존의 보상제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하고, 상여금 지급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FSB 보상기준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G20 정상들은 이 같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FSB의 보상기준을 어기는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iv) 장외파생상품을 통제하기 위해 2012년까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 CCP)를 통해 청산하도록 하고, 중앙청산소를 통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적립부과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v) 아울러,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IASB, FASB)는 독립적인 기준제정절차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단일 국제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2011년 6월까지 각 기구들의 회계기준 불일치 해소작업을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다. (vi) 또한, 비협조적 지역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였는데, 조세피난처, 자금세탁, 부패 수익금, 테러 자금조달 및 건전성 기준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2010년 3월부터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G20 정상들은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금융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IMF와 세계은행 개혁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IMF와 세계은행은 향후 G20 합의에 따라 역할을 증대하되, 신흥국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MF는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과 세계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은행은 개발 및 빈곤 감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 국제금융기구가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IMF 출자지분의 5%와 세계은행의 투표권 3%를 선진국으로부터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위기 이후의 과제

G20 정상들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11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논의하여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관련하여 2010년중 도하개발협정(Doha Development Agenda : DDA) 협상이 타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저소득,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농업식량안보기금을 조성하고, 빈곤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밖에 각국이 직면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2010년에 고용확대를 위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 3 장

FSB의 설립과 금융규제 개혁 논의

1. FSB의 설립 및 조직구성
2. 금융규제 개혁의 논의 구조
3. FSB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
4. 한국의 역할

1. FSB의 설립 및 조직구성

가. FSB의 설립 경위

FSB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FSF는 1999년 4월 G7 재무장관회의의 결과 금융 감독 및 검사 분야의 정보교환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금융안정을 추진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여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FSF의 회원은 G7 국가의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당국,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BIS, OECD) 및 국제기준 제정기구(BCBS, IOSCO, IAIS, IASB), 주요 중앙은행그룹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호주, 홍콩,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등이 회원으로 추가되었다. 본회의는 통상 연2회 개최되었으며,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개별 초청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남미, 중앙·동유럽 비회원국과 지역별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2001년부터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Asia-Pacific Regional Meeting)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함께 초청받기도 하였다.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FSF는 회원국을 주요 신흥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합의한 이후 G20에서는 단순히 FSF의 회원국 수를 늘리는 정도를 넘어서 FSF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FSF를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 개편한 FSB로 재정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FSB의 목적 및 임무

(1) FSB의 목적

FSB는 국제수준에서 각국 금융당국,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업무를 조정하고 선도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점에 대처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견고한 규제감독정책 등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참고자료 2).

(2) FSB의 임무

FSB의 임무는 런던 정상회의 ‘금융시스템 강화 선언문’에서 제시된 임무를 토대로 FSB 정관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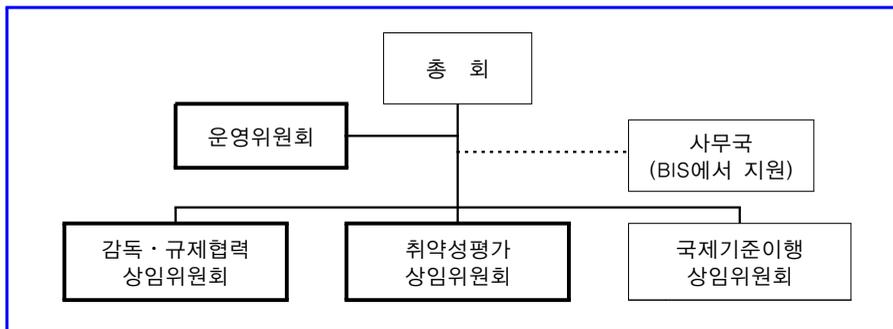
- 국제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 평가 및 그 대응을 위해 필요한 규제·감독 조치의 확인 및 검토
- 금융당국간 정책조율 및 정보교환
- 금융시장의 발전 및 이에 따른 규제정책의 시사점 모니터링 및 조언
- 규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모범사례(Best Practice) 모니터링 및 조언
-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정책 개발이 시의성 있게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회원국 공동의 전략적 검토(Joint Strategic Reviews) 수행
- 공동감시단의 설립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원
-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관련 국경간 위기관리에 대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ning) 수립 지원
-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s) 수행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조
- 동 정관의 범위내에서 회원간 합의된 기타 업무를 수행

FSB에 가입한 회원국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우선 회원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금융부문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각종 국제 금융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FSB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IMF와 세계은행이 실시하는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FSAP)의 결과를 공개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다. FSB의 조직구성

FSB는 2009년 6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금융질서를 수립하고 향후 국제 금융시장을 규율하며 금융감독규제기준의 제정을 총괄하는 핵심주체로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FSB의 조직은 총회(Plenary),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및 3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FSB에 의해 개발된 보고서, 원칙, 기준, 권고안 및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FSB 회원자격 결정, 의장 임명, 정관

개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FSB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4개국³⁾ 64개 기관(국제기구 포함)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FSB의 활동 전반에 걸쳐 의제 설정과 논점을 조율하는 핵심적 조직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회원국과 10개 국제기구⁴⁾로 구성된다. 우리나라가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FSB의 핵심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운영위원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FSB에서 진행되는 주요 논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었으며, 의제 설정과 결정 과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었다.



3개 상임위원회는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for Supervisory and Regulatory Cooperation : SRC)와 취약성평가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Assessment of Vulnerabilities : SCAV), 국제기준이행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for Standards Implementation : SCSI)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이행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금융위원회)와 취약성평가상임위원회(한국은행) 등 2개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는 규제당국의 과제발굴 및 공론화, 정책개발, 공동감시단의 설립과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시스템 차원의 추이와 취약성 분석, 모범규준, 기타 주요한 감독 규제 사항(시스템적 중요금융회사,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SA) J.A. Turner가 의장으로 활동중이며(2010년 4월 현재),

3)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4) 16개국: G7(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 한국(금융위원회),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10개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지급결제시스템위원회(CPSS), 유럽중앙은행(ECB), EU집행위원회(EC)

20개국⁵⁾과 5개 국제기구(EC, ECB, BCBS, IAIS, IOSCO)가 참여를 하고 있다.

취약성평가 상임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Jaime Caruana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BIS) 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2010년 4월 현재), 19개국⁶⁾ 중앙은행 또는 정부당국과 8개 국제기구(IMF, BIS, 세계은행, OECD, BCBS, CGFS, CPSS, ECB)가 참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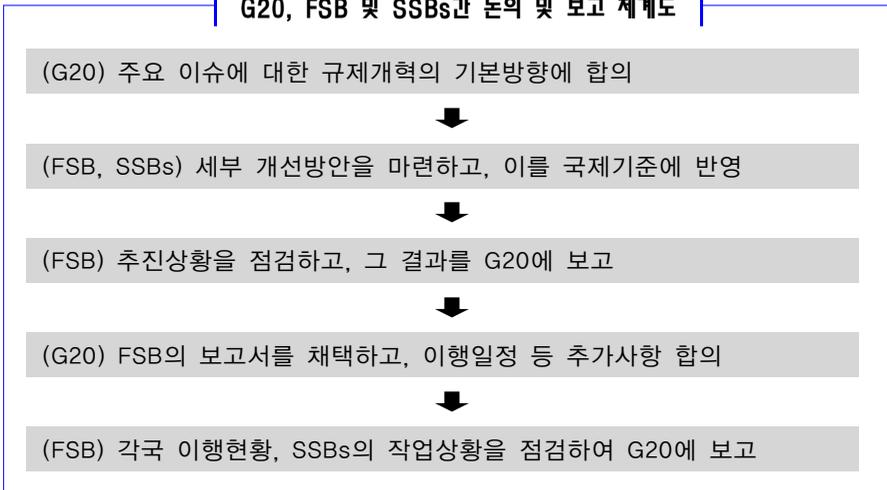
국제기준이행상임위원회는 FSB 회원국 등의 건전성 규제·감독기준의 평가절차 방법 수립 및 이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동 평가 자료에 대한 전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승인 후 공표하는 역할을 한다. Tiff Macklem 캐나다 재무차관이 의장이며(2010년 4월 현재), 17개국⁷⁾ 중앙은행 또는 정부당국과 7개 국제기구(IMF, 세계은행, OECD, BCBS, IAIS, IOSCO, EC)가 참여를 하고 있다.

2. 금융규제 개혁의 논의 구조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국제 공조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라면, FSB는 G20으로부터 금융임무를 부여(mandate) 받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규제 개혁에 관한 논의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합의한 기본방향에 따라 FSB를 중심으로 각국의 금융당국과 국제기준 제정기구(Standard Setting Bodies : SSBs) (☞참고자료 4)들이 실천가능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FSB가 이들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과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G20 정상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5)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국가별 참여기관 : 한국(금융위원회),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연방준비은행), 영국(중앙은행, 금융감독청), 프랑스(재무부), 독일(금융감독청), 이탈리아(중앙은행), 일본(금융감독청), 캐나다(금융감독청), 중국(은행감독위원회), 브라질(증권거래위원회), 러시아(금융시장위원회), 스페인(중앙은행), 스위스(재무부), 터키(중앙은행), 홍콩(통화감독청), 인도네시아(중앙은행), 멕시코(재무부), 네덜란드(재무부), 싱가포르(통화감독청), 사우디아라비아(통화감독청)
- 6) 취약성평가 상임위원회 국가별 참여기관 : 한국(한국은행), 미국(연방준비은행), 영국(중앙은행), 프랑스(중앙은행), 독일(중앙은행), 일본(중앙은행), 캐나다(중앙은행), 중국(재무부), 브라질(재무부), 아르헨티나(중앙은행), 호주(중앙은행), 러시아(중앙은행), 스페인(재무부), 홍콩(통화감독청), 인도(중앙은행), 멕시코(재무부), 싱가포르(통화감독청), 사우디아라비아(통화감독청), 남아프리카공화국(재무부)
- 7) 기준이행평가 상임위원회 국가별 참여기관 : 미국(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 영국(재무부, 금융감독청), 프랑스(금융감독청), 독일(재무부), 일본(금융감독청), 캐나다(재무부), 중국(중앙은행), 브라질(중앙은행), 이탈리아(재무부), 스위스(재무부), 호주(재무부), 러시아(재무부), 홍콩(통화감독청), 인도(재무부), 싱가포르(통화감독청), 사우디아라비아(통화감독청), 남아프리카공화국(재무부)

G20, FSB 및 SSBs간 논의 및 보고 체계도



3. FSB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

가. FSB 창립총회 (2009년 6월 26~27일)

FSB는 2009년 6월 창립총회를 가진데 이어 8월 각국 감독규제당국이 G20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각 국제기준 제정기구와 함께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립총회에서는 IASB와 BCBS, IOSCO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이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들 기구는 국제 회계기준의 강화와 거시건전성 강화, 헤지 펀드와 신용평가사 규제, 국경간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보상체계 개선, 국제기준의 이행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FSB는 금융규제개혁 노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회원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 하고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립총회에서는 향후 운영방향 및 출구전략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FSB는 상황이 개선될 것을 전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전시키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금융시스템 강화와 관련하여 FSB는 회계기준의 일치 및 경기순응성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IASB로 하여금 금융당국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를 통해 금융회사의 재무보고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FSB는 규제 및 감독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접근방식 채택과 관련한 진전사항을 점검하였다. 이 밖에 FSB는 국제적 감독 및 규제기준 이행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개발과 공동감시단 관련 진전사항 및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FSB는 FSF 건전한 보상원칙(FSF 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정착 감독 및 공시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BCBS 및 IOSCO의 작업을 환영하며, 국경간 일관성 있는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FSB는 G20 런던 정상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2009년 11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그 진전사항을 보고하기로 하였다.

나. FSB 제2차 총회 (2009년 9월 15일)

2009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총회에서 FSB는 금융시스템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검토하였다. 금융회사들은 공적 지원 조치의 중단에 대비하여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유보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보다 강화된 자본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위해 과도한 배당금 지급제한, 자사주매입 및 보상에 대한 제한 등 자본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FSB는 급증하는 정부 부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출구전략의 시점과 관련된 리스크, 금융규제 개혁의 속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FSB는 2009년 7월부터 금융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였다. 특히, 2009년 9월 열린 제2차 총회에서는 같은 달 개최되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보고서(Improving Financial Regulations)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FSB는 보고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금융규제 개혁과제로 (i) 자본규제 강화 (ii)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축소 (iii) 보상원칙 이행 강화 (iv) 회계기준 개선 (v)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등 5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추가 개혁과제로 (i)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 (ii) 증권화 시장의 재활성화 등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한편, FSB는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회계기준 개선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건전성 감독 및 규제감독기관·금융회사간의 논의 활성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보상 체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FSB는 보상관리 체계, 보상구조 및 공시에 대한 구체적 이행 가이드라인을 피츠버그 정

상회의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FSB는 또한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 및 상품에 의해 제기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IOSCO에 요청하였다.

FSB는 국제 규제 및 감독 기준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을 촉진하며, FSB 회원국들은 국제기준의 이행 수준을 공개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기로 합의하였다.

다. FSB 제3차 총회(2010년 1월 9일)

2010년 1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제3차 총회에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금융 규제 개혁 권고안의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2010년중 FSB가 추진할 금융개혁 과제의 작업 방향과 일정을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또한 전세계적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보상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FSB는 이미 발표한 「건전한 보상원칙」(2009년 4월)과 「보상원칙 이행기준」(2009년 9월)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Peer Review)를 2009년말 시작했는데, 그 결과를 2010년 3월까지 마무리하여 보고서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3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양질의 은행자본과 원충자본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BCBS가 제안한 일정과 추진방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FSB는 이와 관련하여 BCBS가 제안한 규제를 시행할 경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BCBS는 그 평가결과를 감안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FSB는 현재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가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2010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현재 (i)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 축소방안 (ii)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정리능력 확충방안 (iii) 금융시장 인프라 강화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 개선과 관련, IASB와 FASB간 회계기준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회계기준 개선작업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시 기대손실모형을 도입하는 방안과 금융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단순화하는 등 회계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FSB 제3차 총회에서는 특히 2010년 11월 서울 정상회의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2010년 10월 또는 11월 FSB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⁸⁾.

8) 이후 FSB 사무국은 2010년 10월 20일 한국 총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

4. 한국의 역할

현재 금융규제 개혁 논의를 위한 대응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의 공조를 거쳐 금융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 수립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논의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 등 국익과 직결된 분야로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국내 감독규제 권한에 대한 대표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내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우리나라가 FSB 운영 위원회에 참여함에 따라 2009년 7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하고 관련 기관을 포함하는 상설 대책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2010년 2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G20 정상회의 지원 및 FSB 총회 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09년 6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FSB 창립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담보대출 한도 규제(LTV, DTI)와 예금보험제도 등 우리나라의 위기대응 정책 및 감독 경험을 회원국에 설명하여 회원국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회원국들은 특히 한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 DTI) 규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위기의 충격을 줄이고 시장의 불안요인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가 1997년 외환 위기 이전에 마련되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음은 물론,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춰 계속 보완됨으로써 위기 대응수단의 모범사례가 되었다는데 공감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위기대응 정책과 감독 경험을 FSB 회원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금융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FSB의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공동감시단에 신흥국의 참여를 늘리는 한편, 구체적인 참여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감독당국간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IASB가 신흥국이나 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흥국의 의견수렴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SB 제2차 총회에 참석하여 자본규제 강화와 회계기준 개선, 장외파생상품 개편 방향, 공동감시단 등 주요 이슈에 관한 우리측

입장과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특히, 향후 추가로 추진할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 등 우리에게 중요하고 관심이 큰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소규모 개방경제인 신흥국이 취약점을 보이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역설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FSB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 강화(Making global liquidity more robust)를 위한 향후 검토과제를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동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금융변동성과 갑작스러운 자본흐름 변동에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1월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신흥국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1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제3차 총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신흥국의 외화유동성 안정 방안과 관련, 각국의 감독강화에 더하여, G20 정상회의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통하여 가시화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회원국들에게 논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FSB는 제2차 총회에서 합의한 대로 BIS내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 CGFS)가 각국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차 총회에서는 2010년 10월 또는 11월 FSB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FSB 총회는 FSB의 전신인 FSF를 포함하여 신흥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FSB 총회에서 새로운 세계 금융질서를 수립하고 국제기준을 정립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 금융 무대에서 역량이 커지고 위상이 높아졌음을 반영한 것이다.



제 4 장

금융규제 개혁 분야별 논의 현황

1.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 가. 대형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위험 축소
 - 나. 다국적 금융회사 정리
 - 다. 공동감시단
3. 보상체계 개선
4.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
5. 회계제도 개선
6.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
7. 기 타
 - 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 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
 - 다. 국제기준이행 및 비협조적 지역(국가)에 대한 대응
 - (1) 국제기준이행
 - (2)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비협조 국가 대응

1.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가. 논의 배경

이번 금융위기시 다수의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자본규모와 질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다수의 금융회사가 적절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과거의 금융위기에서도 나타난 특징이지만,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증가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고, 금융위기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본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출을 급격히 줄여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경기순응적 디레버리징(procyclical deleveraging)’ 과정과 대규모의 복잡한 거래로 연결된 금융회사간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해 증폭되었다. 그 결과,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인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되어 실물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튼튼하고 회복력(resilience)이 강한 금융시스템의 구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본적 요건이라는 인식하에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G20 합의내용

(1) 워싱턴 정상회의

G20은 (i)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ii) 금융규제 개선 (iii)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iv) 국제적 협력 강화 (v)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금융개혁을 위한 일반원칙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 IMF, FSF 등은 자산가치평가, 레버리지, 은행자본 등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권고 사항을 마련
- 자본적정성을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자본의 정의를 수정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구조화 상품 및 증권화 등에 대한 자본기준을 강화
- 금융당국 및 중앙은행은 국경간 은행의 유동성 감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도출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위험집중도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
- 금융회사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금융당국에 보고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BCBS)는 새로운 위험측정 모델 개발을 검토하고 지원
- 은행은 구조화 상품 및 증권화 상품에 대해 효과적 위험관리와 실사 노력을 진행

(2) 런던 정상회의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8개 분야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건전성 규제와 관련한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 경기회복이 확실해진 후에 최소자본요구량 이상의 완충자본을 적립⁹⁾하고 불황기에는 축소될 수 있도록 허용
- 경기회복이 확실시되기 전까지 최소자본요구량¹⁰⁾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경기회복 이후 현재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
- 자본의 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2009년말까지 자본 정의의 일관성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가중자산 규제를 단순지표¹¹⁾를 통해 보완
- 2010년까지 증권화 관련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수행
- 모든 G20 국가는 바젤Ⅱ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BCBS와 각국 금융당국은 2010년까지 유동성 완충장치(buffer)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

(3) 피츠버그 정상회의

G20은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8개 분야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6개 우선과제로 재분류하였으며, 건전성 규제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0년말까지 은행 자본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발전시키는 한편, 2012년까지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유동성 및 미래지향적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및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요구, 경기대응적 완충자본부과, 부외거래활동 등에 대한 자본부과를 각국이 시행
- 레버리지 비율 도입을 지지하며,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의

9) FSB, BCBS, CGFS는 2009년말까지 회계기준조정기관과 공동으로 완충자본 적립 등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제안

10) BCBS는 2010년까지 현재 최소자본요구량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권고안 제시

11) 단순지표의 요건으로 ①투명성, ②위험에 대한 중립성, ③국제적 비교가능성, ④부외거래 익스포저에 대한 고려, ⑤ 레버리지 억제 등 제시

세부사항은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회계상차이를 조정

다. FSB/BCBS 논의 동향

2009년 12월 BCBS는 그동안 논의해온 금융규제방안에 대한 공개 초안(Consultation Documents)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i) 자본의 질, 일관성 및 투명성 강화 (ii) 레버리지 비율 도입 (iii) 유동성 비율 도입 (iv) 경기순응성 완화방안 (v) 트레이딩 계정 위험관리 강화 (vi) 위험 포괄범위 강화 등이다. BCBS는 2010년 4월까지 공개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0년 상반기중 영향평가과정을 거쳐 2010년말까지 규제수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 자본의 질, 일관성 및 투명성 강화

(가) 도입 배경

BCBS의 공개 초안은 손실흡수능력이 높은 양질의 자본 위주로 규제자본을 개선하고, 국가간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자본은 은행이 부담하고 있는 중요한 위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질의 자본이 적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자본 정의는 BCBS 회원국별로 실제 적용되는 조정항목이 달라 규제자본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은행의 규제자본 공시가 불충분하여 자본의 구성항목의 상세내역을 알 수 없고, 자본의 질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여타 은행과의 의미 있는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위기가 심화되면서 은행들은 손실과 상각규모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보통주 자본 구성항목인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은행의 지급능력을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종전의 Tier1 대신 보통주 자본과 같은 단순 자기자본비율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나)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보통주 자본은 가장 양질의 자본항목이다. 보통주 자본은 손실흡수력을 갖추고 있으며, 은행의 재량적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고 만기가 없어 은행이 지급능력(solvency)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Tier1 및 Tier2 자본은 각각 계속기업(going concern) 및 청산기업(gone concern)의 손

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으로 정의되고, 최소한의 규제자본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은 국제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자본의 구성항목은 회계 계정과목과도 일치되어 명확하게 공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각국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BCBS의 공개 초안은 현행 6단계 자본분류체계¹²⁾를 (i) 보통주 자본 (ii) 기타 Tier1 자본 (이상 기본자본) (iii) Tier2 자본(보완자본) 등 3단계로 단순화하고, 자본 항목별로 자본인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Tier1 자본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던 Tier2 자본 인정한도는 폐지하고, Tier3 자본은 자본항목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기자본 구성내역

구 분		구성요소	비 고
기본자본(Tier1)	보통주 자본	보통주 자본금1), 잉여금2)	계속기업 가정
	기타 Tier1	우선주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Tier2)		장기 후순위채권 등	청산기업 가정

1) 의결권 없는 보통주 포함. 단, 의결권 없는 보통주(Non-Voting Common Stock)의 경우 의결권을 제외한 모든 요소가 의결권 있는 보통주와 동일해야 함

2)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및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포함

보통주 자본금은 전액 Tier1에 포함되지만, 보통주가 아닌 기타 Tier1과 Tier2는 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요 자본인정 요건

- 보통주가 아닌 기본자본 인정요건
 - ① 높은 후순위성 ② 영구성 ③ Step-up 조항 등 상환유인이 없을 것 ④ 은행의 배당 및 이자 지급 재량권이 있고 비누적적 ⑤ 부채인 경우 원금의 삭감 또는 보통주 전환조건이 있을 것
- 보완자본(Tier2) 인정요건
 - ① 발행당시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로 구성되어야 하며 ② 잔존만기 5년 이내인 경우 정액 법으로 상각하여 보완자본에서 제외

특히, 기타 Tier1 자본에 Step-up 조항¹³⁾ 등 자본의 속성을 약화시키는 혁신적 금융상품

12) Tier1: 보통주 자본, 상위 신종자본증권*, 하위 신종자본증권*

Tier2: 상위 후순위채**, 하위 후순위채**

Tier3: 단기 후순위 채무

* 신종자본증권: 상위 step-up조건 없음, 하위 step-up조건 있음

** 후순위채: 상위 10년 이상, 하위 5년 이상

13) 자본증권 보유자에게 일정기간 경과시 금리를 높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

은 Tier1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채권형 신종자본증권과 같이 부채로 분류되는 기본자본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보통주로 전환 또는 감액되는 조건을 포함할 것을 자본인정기준으로 요구하였다.

Tier2를 포함한 모든 자본항목에 이러한 조건부 보통주(Contingent Capital) 전환요건을 요구할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건부 보통주는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권을 구제하기에 앞서, 은행의 자본 소유자들의 손실흡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전환요건, 전환비율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i) 보통주 자본비율 (ii) Tier1 자본비율 (iii) 총자본비율 등 자본항목별로 규제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규제자본비율 수준은 계량영향평가(Quantitative Impact Study : QIS)를 거친 후 2010년말 이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자기자본 한도설정 내역

구 분	산출방법	비 고
자본 비율	총자본(Tier1+Tier2) > 위험가중자산의 [X%]	바젤 I · II 기준과 동일
Tier1 비율	Tier1 자본 > 위험가중자산의 [Y%]	
보통주 비율	기 본	보통주 자본 > 위험가중자산의 [Z%]
	읍 선	Tier1의 핵심적 형태(predominant form)는 보통주 자본 이어야 함

또한, 그동안 Tier1 자본 총액에서 차감·조정해왔던 영업권, 이연법인세 등은 앞으로는 보통주 자본에서 직접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자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자본항목들은 발행조건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공시¹⁴⁾하도록 권고하였다. 새로운 공시요건 도입으로 자본항목 및 차감·공제항목에 대해 완전 공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 및 시장규율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공개 초안 발표 이전에 발행된 자본항목들은 새로운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각국 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규제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Grandfathering)을 인정하였다.

14) ①규제자본의 주요 내용을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 ②홈페이지에 자본구성 요소의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공시

(2) 레버리지 비율 도입

(가) 도입 배경

금번 금융위기에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높게 나타나면서도 부외 계정¹⁵⁾을 통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높인 것도 부실의 한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위험에 기반한 자본규제인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보완조치로써 레버리지 비율규제 도입방안이 제시되었다.

자산(익스포저)/자본으로 계산되는 레버리지 비율은 대출 등 자산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호황국면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증대를 억제함으로써 위험가중 자기자본규제가 유발할 수 있는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나)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레버리지 비율은 자본 대비 총익스포저(자산) 비율로 계산한다. 자본은 원칙적으로 보통주 자본 또는 Tier1 자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계량영향평가(QIS)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총익스포저는 최소자기자본 산정시와 달리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 금액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신용파생계약, 지급보증, 신용공여약정 등 장부의 항목도 100%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총익스포저에 포함하는 한편, 상계를 불인정하여 자산총액을 익스포저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실물담보나 금융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익스포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였다.

BCBS 레버리지 지표 초안

레버리지	다수의견	기타 의견
익스포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장부상 자산 · 현금성 자산 포함 · 신용경감 효과 고려안함 · 부외항목(100%) 포함 · 자본차감항목 제외 · 장부상 증권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규제 시스템상 자산 · 현금성 자산 제외 · 신용경감분 제외 · 부외항목 일부 제외 등 · 자본차감항목 포함 · 증권화된 전체 금액 포함 등
자본	= Tier1(또는 Core Tier1)	현재 BCBS에서 개발 중인 신규 핵심자본 지표

레버리지 비율 산출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이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비교가능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표준공시 양식을 제정할 예정이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수준은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2010년말까지 확정하고, BIS 비율과의 연관 효과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에 따른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15) 장부의 계정(off-balance account): 재무제표상 정식 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성자산의 레버리지 익스포저 포함과 관련하여 유동성 비율 규제와의 상호 연관 효과에 대해서도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회계기준 및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규제의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3) 유동성 비율 도입

(가) 도입 배경

은행은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용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미흡하였다. 또한, 금융채, CD, RP 등 시장성 수신(Wholesale funding)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동성 위험과 시장 위험 사이에 상관관계도 증가하였다.

글로벌 위기에서 많은 은행들이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위험 관리가 소홀하였음이 드러남에 따라 BCBS는 2008년 9월 ‘건전한 유동성위험 관리 및 감독 원칙’을 제정하였으며, 동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장·단기 유동성 기준(Liquidity version of Basel II’로도 표현)을 마련하였다.

BCBS의 건전한 유동성 위험 관리 및 감독원칙 주요내용

- (관리체계) 이사회는 1년에 1회 이상 유동성 위험 관리 방식 유효성 평가 등
- (위험관리) 자회사별, 부서별, 통화종류별 유동성 위험 관리 실시 등
- (공시) 유동성 위험 관리 방식과 위험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
- (감독) 개별은행의 유동성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금융당국간 협조 강화 등

(나)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1)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 LCR) : 단기 지표

$$LCR = \frac{\text{고유동성자산(Stock of high quality liquid assets)}}{\text{순현금유출(Net cash outflows over 30-days)}} > 100\%$$

- * 고유동성자산 : 현금, 현금성 자산, 국채 등
- * 30일간 순현금 유출 : 현금유입 - 현금유출
- 현금유출 계산시 소매예금 중 일부(7.5%~15%)를 포함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은행과 금융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인 30일간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로서 은행은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 이상으로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고유동성자산(Stock of High Quality Liquid Assets)은 위기상황 하에서도 별다른 제약

없이 현금화할 수 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에 준하는 자산(Cash Equivalent), 국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우량회사채 및 커버드본드(Covered Bond)¹⁶⁾ 등은 일정 차감율(Haircut)을 적용한 후의 금액을 고유동성자산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순현금유출액(Net Cash Outflows over 30-Days)은 위기상황 하에서 30일간 예상되는 누적 현금유출액과 누적 현금유입액의 차이로서 예금 및 차입금 등 부채조달 항목별로 위기 상황에서 유출(run-off) 금액과 30일 이내에 만기도래하는 대출의 만기회수 금액의 차이로 계산한다. 안정성 여부에 따라 소매예금 및 중소기업예금의 경우 유출율을 7.5~15% 수준으로 낮게 설정하고, 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한 도매자금조달의 경우 유출율을 75~100%로 높게 설정하였다.

2)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 NSFR) : 중장기 지표

$$NSFR = \frac{\text{이용가능한 안정적 자금} \quad \text{[Available Amount of Stable Funding(source of funding)]}}{\text{요구되는 안정적 자금} \quad \text{[Required Amount of Stable Funding(use of funding)]}} > 100\%$$

- * 이용가능한 안정적 자금 : 자본, 우선주(1년이상), 채무(1년이상), 만기없는 예금 등
- * 요구되는 안정적 자금 : 자산 유동성 수준에 따라 자산 가중치 차등화

장기적·고정적인 대출·투자(자산운용)는 안정적인 자금조달(부채·자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1년간의 일반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비율이다.

이용가능한 자금규모(Available Amount of Stable Funding)는 부채 및 자본을 통한 자금조달항목중 1년 이상 현금유동성이 유지되는 규모를 말하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계산시와 마찬가지로 위기상황에서의 유출율 만큼 차감한 후 산출함으로써 소매예금 및 중소기업예금은 이용가능자금이 높게 계상되고 여타 자금조달의 경우 이용가능자금액은 낮게 계상되도록 설정하였다.

요구되는 안정적 자금규모(Required Amount of Stable Funding)는 현재 보유중인 자산 포트폴리오중에 위기상황에서도 1년 이상 현금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자금규모를 말한다. 유가증권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자산의 경우 차주의 성격에 따라 현금화되지 않는 비율을 각각 배정하였다. 또한, 유동성 커버리지비율과 마찬가지로 소매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은

16) 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일반 채권이지만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민간부문 대출과 모기지 등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 ABS)과 유사하지만, 안전성이 높아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음

만기 차환이 높아 현금화율을 낮게 설정하고, 일반기업 및 금융회사 대출은 만기회수율을 높게 설정하였다.

상기 유동성규제 이외에 BCBS는 감독당국이 은행의 유동성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i) 계약만기 불일치 현황 (ii) 자금조달의 집중도 현황 (iii) 담보차입 가능 자산규모 (iv) CDS 스프레드 등 시장 관련 지표 정보를 제안하였다.

유동성 비율 산출시 원칙적으로 연결기준이 적용되나, 개별 법인 단위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들은 유동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최소 매월 비율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는 감독당국 재량으로 매주 또는 매일 유동성 비율 산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동성 비율에 대해서는 구성 항목 및 금액 등을 모두 공시하도록 공시요건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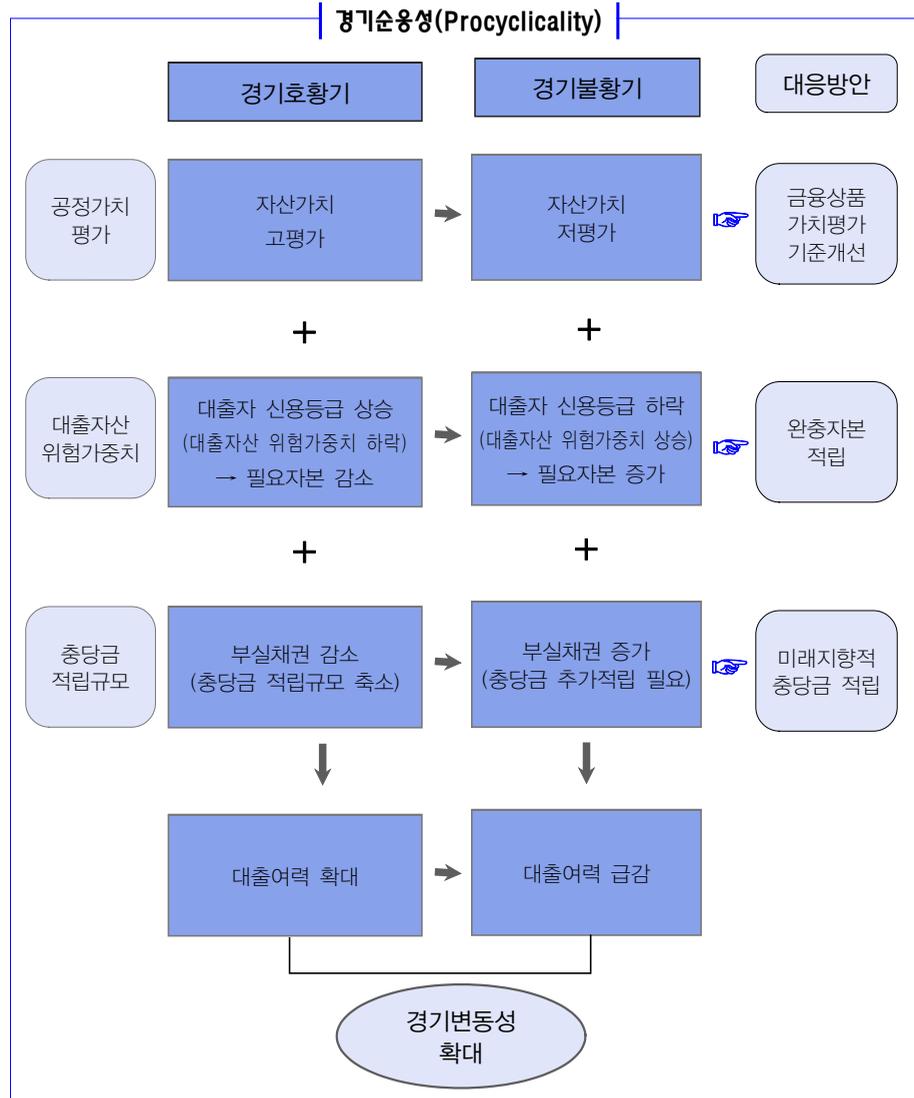
BCBS는 2010년중 규제영향평가를 거쳐 2010년말까지 새로운 국제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4) 경기순응성 완화 방안

(가) 도입 배경

현행 자본규제는 호황시 과도한 신용이 창출되도록 하고, 불황시 이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등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경기순응성을 증폭시키는 경로는 크게 다음과 같다.

- 시장성자산에 대한 시가평가(mark to market) 등으로 호황기에는 자산가치가 고평가되어 자본이 증가함으로써 추가 대출여력이 확보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자산가치가 저평가되어 자본이 감소함으로써 대출 회수 또는 대출여력이 감소하는 경로
- 호황기에는 부실채권이 감소하고 총당금 적립규모가 축소됨으로써 대출여력이 확보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총당금 적립규모가 증가함으로써 대출여력이 감소하는 경로
- 호황기에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대출자산 위험가중치가 하락함으로써 대출여력이 확보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자산 위험가중치가 증가함으로써 대출여력이 감소하는 경로



(나)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BCBS의 공개초안(2009년 12월)은 최소자기자본비율에 더하여 일정 수준의 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고정목표(fixed buffer)와 변동목표(time varying buffer)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정목표의 목표 완충자본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2010년말까지 마련될 예정으로, 미달시 배당이나 상여금 등 자본분배를 제한할 계획이다. 고정목표의 경우 최소자기자본 이하시 경영개선 명령, 자본확충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반면, 고정목표 미달시는 자본분배 제한으로 한정된다.

목표 완충자본 미달시 자본분배 제한 방안(예시)

Buffer(100%) 수준	25% 미달	25~50%	50~75%	75~100%	Target 초과
최소 유보율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0%

변동목표의 경우 거시변수나 총신용대출 비중 등의 지표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완충자본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검토중으로 2010년 7월까지 구체화될 예정이다.

완충자본 외에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바젤II 개선주진 내용

- (i) 현행 최소자본규제의 경기순응성 완화 방안
 현행 바젤II에서도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부도위험평가시 장기 데이터 사용, 경기 침체기 부도손실(Loss Given Default : LGD) 사용,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 가장 높은 부도확률(Probability of Default : PD)값을 사용하는 방안과 평균 부도확률값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ii) 미래지향적 총당금 적립 촉진 방안
 총당금 관련 회계기준을 현행 발생손실 기준에서 예상손실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¹⁷⁾중이며, 예상손실 기준 총당금 적립방식에 맞춰 감독지침(건전한 신용위험 측정 및 대출평가 지침)을 보완하였다. 또한, 예상손실 대비 총당금 과소 적립액을 현행 Tier1과 Tier2에서 각각 50%씩 차감하는 것을 보통주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도록 하며, 총당금 적립 초과액의 Tier2 자본 인정한도 폐지도 검토(현행 표준법은 위험가중자산의 1.25%, 내부등급법은 예상손실액의 0.6%)하는 등 현행 바젤II 체계에서 총당금 적립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였다.

(5) 트레이딩 계정 위험 관리 강화

(가) 도입 배경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 MBS), CDO와 같은 유동화 및 재유동화 증권을 트레이딩 계정에서 보유할 경우 시장위험이 낮게 평가되며, 외부 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은행이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자본부과 규제 및 위험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진행중이다.

(나)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내부모형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할 때 트레이딩 계정(내부모형법)에 현행 기준 VaR(Value at Risk)에 Stressed VaR¹⁸⁾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최근 금융위

17) (호황기) 실제 손실률<장기 예상손실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대출 축소→ 경기순응성 완화
 (불황기) 실제 손실률>장기 예상손실률→ 대손충당금 적게 적립→ 대출 확대→ 경기순응성 완화
 18) Stressed VaR는 중대한 손실(예, 2007/2008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이 포함된 관측기간(1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로 은행이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입은 손실이 현행 시장위험에 따른 필요자기자본을 상회함에 따라 Stressed VaR 도입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경기순응성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입은 대형손실이 트레이딩 자산의 신용스프레드 확대 및 시장의 유동성 부재에 기인함에 따라 개별 위험에 부도위험¹⁹⁾ 뿐만 아니라 신용전이위험²⁰⁾까지 추가로 반영하였다.

(6) 위험 포괄범위 강화

(가) 도입 배경

금번 위기를 통해 장부의 주요 위험 및 파생상품 관련 익스포져 위험에 대해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BCBS는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트레이딩 계정의 Stressed VaR 도입 등과 관련하여 2009년 7월 바젤Ⅱ 체계의 개정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BCBS는 추가적으로 파생상품 및 환매조건부(Repo) 거래 등에 있어 거래상대방 신용위험(Counterparty Credit Risk)에 대한 자본요건 강화 및 외부 신용등급 활용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나)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i)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 강화

익스포져 금액 산출시 위기상황을 반영하도록 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담보는 청산기간을 2배 연장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반영하였다. 특히, 유동화 및 재유동화 증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담보차감율을 2배 상향 조정하였으며, 자산규모 250억 달러 이상의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상관계수(현행 12~24%)를 1.25배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중 0% 부도시 익스포져(Exposure at Default : EAD)가 부과되고 있는 중앙청산소의 적

하여 현재 포트폴리오에 대해 10일, 99% 신뢰구간(one-tailed) 기준으로 산출한 VaR값

현행	개정시안
$\max\{VaR_{t-1}; mb \cdot VaR_{avg}\}$	$\max\{VaR_{t-1}; mb \cdot VaR_{avg}\} + \max\{sVaR_{t-1}; m \cdot sVaR_{avg}\}$

VaR_{t-1} : 직전 영업일의 최대손실예상액 측정치

mb · VaR_{avg} : 직전 6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 측정치의 평균값 × mb

sVaR_{t-1} : 직전 영업일의 위기상황시의 최대손실예상액 측정치

m · sVaR_{avg} : 직전 60영업일간의 위기상황시의 최대손실예상액 측정치의 평균값 × m

m : 승수

19) 부도위험(Default Risk): 차주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잠재손실 및 부도사건으로 인한 간접적인 잠재손실

20) 신용전이위험(Credit Migration Risk): 내/외부 등급의 변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잠재손실 및 신용전이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잠재손실

격 요건을 강화하였다.

(ii) 외부 신용등급 활용 관련 사항

양호한 신용등급만 선택하려는 경향 및 금융위기시 외부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신용등급 급락효과(Cliff Effect)에 대한 대응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무등급 익스포저에 대한 실질적 위험을 분석하여 Pillar 2에서 추가 자본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BCBS의 금융규제방안이 향후 시행될 경우 국내 은행산업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최종적인 규제방안과 수준이 결정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동 방안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국내 은행은 기본자본비율(2009년 12월말 10.93%) 및 BIS 자기자본비율(2009년 12월말 14.36%) 등 자본의 질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본규제강화의 주된 대상이 되는 유동화 익스포저 등이 많지 않아 규제 개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BCBS의 금융규제방안에 대한 회원국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를 조율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나, 건전성 규제는 금융개혁과제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가. 대형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위험 축소

(1) 논의 배경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모가 크고 여타 금융회사와의 상호연계성이 높으며, 여러 국가에 걸쳐 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들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특히, 이번 위기사 대다수 국가에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이와 같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SIFI)를 정리하지 못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함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고 원활한 정리방안을 강구하는 과제가 대두되었다.

(2) G20 합의내용

(가) 워싱턴 정상회의

G20 정상들은 각국 재무장관들에게 금융규제개혁원칙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작업계획 외에 추가로 6가지 사항²¹⁾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 권고안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범위를 정의하고 적절한 감독규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나) 런던 정상회의

G20 정상들은 2009년 4월 런던 정상선언문(Declaration on Strengthening the Financial System) 부속서에서 IMF와 FSB가 각국 당국이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의 시스템적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당국은 그림자 은행(shadow bank), 사모펀드 등이 금융시스템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식별하고, 시스템 위험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개선한다.

둘째, 크고 복잡한 금융회사는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특별한 감독이 필요

21) ①규제정책의 경기순응성 완화, ②국제 회계기준의 재검토, ③신용파생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시스템 위험 완화, ④ 과도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보수체계를 재검토, ⑤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지배구조 개선, ⑥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범위를 정의하고 적절한 감독규제 수단을 마련

하다.

셋째, 각국 금융당국이 모든 중요한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파산 또는 심각한 시장충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간 일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규제 차익 방지를 위해 IMF와 FSB는 각국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의 시스템적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다음 재무장관회의까지 마련하여 제출한다. 동 지침은 금융회사의 법적 형태보다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 피츠버그 정상회의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FSB가 2010년 10월까지 국경간 정리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는 국제적으로 일관된 금융회사별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책 당국은 주요 다국적 금융회사에 대한 위기관리그룹 및 위기관리를 위한 법적 개입장치를 마련하고 위기시의 정보 공유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향후 금융회사 파산에 따른 시장혼란을 축소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수단 및 체계를 수립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기준은 이들의 부실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 FSB는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보다 강화된 감독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요구, 유동성규제, 기타 건전성 규제 등의 가능한 대안을 검토한다.

(3) FSB 논의 동향

(가) FSB 총회

2009년 6월 FSB 창립 총회에서는 런던 정상회의에서 FSB에 요청한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IMF와 BIS, FSB는 시스템 위험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며, 시스템적 중요성을 식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한편 시스템적 중요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009년 9월 FSB 제2차 총회에서는 차기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안고 있는 대형 금융회사가 초래하

는 시스템 위험을 완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FSB는 2010년 10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i) 자본, 유동성 및 기타 건전성 규제의 추가적인 강화 (ii) 금융그룹 형태 구조의 복잡성 완화 (iii) 독립된 자회사의 설립 유도 등 검토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0년 1월 FSB 제3차 총회에서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와 관련된 TBTF 대응방안을 2010년 10월말까지 개발하기로 했으며, 동 대응방안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파산 충격 완화, 파산한 금융회사의 순차적 정리 역량 강화 및 시장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나) 시스템적 중요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2009년 10월 IMF · BIS ·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판단기준(Guidance to Assess the Systemic Import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Markets and Instruments : Initial Considerations)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첫째, 동 가이드라인은 시스템적 중요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요인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많은 요소(factor)들이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인 만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요인과 중요하지 않은 요인을 구별해야 한다.
- 금융시스템 구조 : 시스템적 중요성은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과 청산시스템 등에 따라 상당부분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 시스템적 중요성의 가변성(time varying) : 불황국면에서는 손실 상관관계가 깊어지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요인도 금융회사내 신뢰상실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신뢰상실은 자산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금융회사 단기부채 상환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음 3가지 주요 기준 이외에도 레버리지, 유동성 리스크, 만기불일치, 복잡성 및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다루는 금융회사 프레임워크 등도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기준이다.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시스템내 상호연관성과 취약성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금융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합산한 양보다 크다.

① 규모(Size)

금융회사 익스포져, 자산규모 및 거래규모 등이 클수록 당해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거래상대방 금융회사의 손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당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와 연관성(connection)이 클 때, 규모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②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가 infrastructure service 공급을 중단했을 때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대체하기 어려울 경우 대체가능성은 감소된다. 청산, 지급결제, 보관(custody)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이에 포함된다.

③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

상호연관성은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등 금융회사 대차대조표 전반(on both sides of balance sheet)에 걸쳐 파악되어야 한다. 고객수와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금융시스템에 대한 파급력이 커지며, 복잡성이 심화될수록 시스템위험이 증가한다.

(다) 작업방향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FSB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i)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 (ii) 금융회사의 부실화시 정리역량 강화를 통한 손실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iii)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화 위험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작업방향(work stream)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규제 및 감독 강화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이슈는 다음과 같다.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위험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적립을 부과(Capital Surcharge)하는 자본규제 강화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기준 강화, 레버리지 규제의 광범위한 활용, 감독 관행 및 기준 개선, 위험 관리 개선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규모 및 업무범위 제한 등

둘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사후적으로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리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이슈는 다음과 같다.

-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을 사전에 줄이고 위기상황에서도 핵심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위험감축계획(De-Risking Plan) 및 미리 가용가능한 자금조달 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 마련
- 질서정연한 금융회사 정리를 위해 관련 당국의 권한 확보 및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등 금융당국의 정리역량(resolution capacity) 향상

셋째,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화가 금융시스템내에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Clearing) 메커니즘 마련, 장외거래 계약의 표준화, 환매조건부 거래(Repo) 관행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

FSB는 2010년 10월까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 시스템적 중요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① 시스템적 사건(Systemic Event)

시스템적 사건(systemic event)은 금융시스템의 손상으로 인한 금융서비스 제공 장애가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

- 시스템적 사건은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에 의한 영향과 관련된다. 금융회사들이 위험추구행위를 할 경우 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외부효과는 감안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일부 금융회사의 파산이 여타 금융회사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 전반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
- 또한 시스템적 사건은 금융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금융서비스 제공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포함하며, 이는 금융시스템내에서 발생하는 충격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밖에서 발생하는 충격 때문에도 발생한다. 다만 시스템적 사건은 거시경제 전반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시스템 손상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자산효과(wealth effect)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②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정량적 판단 요소

- 규모(Size) : 지급결제 · 청산규모, 예금수신액, 대출액 및 증권투자 규모 등 금융중개 규모, GDP 대비 금융회사 자산비율,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 등 위험의 통제 · 관리
-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 : 개별 금융회사가 특정 금융인프라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Hirshman -Herfindahl 시장집중도 지수 등이 지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표가 대체가능성의 모든 측면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금융회사가 동등한 금융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보다 질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 : 국내 수준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금융회사 또는 금융시장 상호연관성(linkage)을 포착해야 한다. CDS 스프레드 변화나 주가 움직임 등이 상관성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③ 기타 보다 정교한 시스템적 중요성 측정방법

- 네트워크분석(network analysis): 동 분석방법은 금융회사의 국내외에 걸친 전반적인 익스포저 매트릭스를 수립하여 시스템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익스포저간 연결상태, 연결수준 및 복잡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동안 은행의 자금조달시장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보다 포괄적인 금융회사간 네트워크 분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위험기준 포트폴리오 모델(portfolio models of risk based on market data) : 현행 증권포트폴리오 리스크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특정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적하는 등 공통의 리스크 요소를 측정한다. 이 모델의 특징은 증권 및 파생상품의 시장가격 등 시장에서 얻기 쉬운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측정방법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취약성을 합산하여 측정하는 'bottom-up approach'와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top-down approach'가 있다. 'top-down approach'가 상호연관성을 측정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전체 위험을 각 금융회사별로 배분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다만 이 모델은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와 금융위기시 금융시장데이터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나리오 분석(stress testing and scenario analysis) : 또 다른 위험측정방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나리오 분석방법이 있다. 시장상황이 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로 금융회사가 시장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시장상황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는데 효과적이다.

나. 다국적 금융회사 정리

(1) 논의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국적 금융회사의 감독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 논의와 함께 국가간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국적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현행 국가별 금융회사 정리체계는 국내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 등 자국내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제적인 문제해결 및 위기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국 채권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개별 국가의 금융회사 정리절차는 국가간 협조를 어렵게 하여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로 확대·전이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급불능 상태의 다국적 금융회사 본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가 지점 자산의 동결 조치 등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금융 보호주의를 취할 경우, 해당 금융그룹 내 자산 이전을 통한 금융그룹 전체의 위기관리가 제약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를 저해하고 금융위기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금융의 글로벌화로 인해 한 국가에서의 금융회사 도산이 다른 국가에 연쇄적으로 전이될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다국적 금융회사 정리절차에 관한 국제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G20 합의내용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실제로 몇 개 금융그룹의 정리 과정에서 이러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G20은 FSB와 BCBS에 ‘다국적 금융회사 정리절차에 대한 공통의 기준 및 원칙’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 해결과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간 규제 조정과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나누어 활동계획을 제시하였다.

우선 2009년 3월말까지 이행할 단기과제로는 금융당국의 다국적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중기과제로는 금융당국의 회계기준, 예금보호 등 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회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본국 금융당국은 관련 금융당국들과 최소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다국적 금융회사 정리절차에 대한 국제기준 개발 노력을 지원하는 등

위기관리에 관한 국경간 협력 원칙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다국적 은행 정리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방안을 2010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인 위기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각국 당국들은 위험 관리 그룹을 구성하고, 위기시 개입을 위한 법적 체계와 위기시 정보 공유를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금융그룹 부실로 인한 왜곡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정리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감독과 건전성 기준의 추가적인 적용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3) 논의 동향

(가) FSB 논의 동향

FSB는 산하에 위기관리 작업반(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한편, (i) 위기관리를 위한 관련 당국간 협력 (ii) 위기상황시 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 검토 (iii) 적절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마련 등 ‘위기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 관련 원칙을 발표하였다. 위기관리 작업반은 개별 금융회사의 비상계획²²⁾ 검토를 위한 회의를 2010년 상반기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FSB는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 맞춰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위기관리에 관한 국경간 협력 원칙(Principle for Cross-border Cooperation on Crisis Management)’을 발표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i) 국경간 금융위기 관리 수단 개발 (ii) 본국 및 진출국 당국간 정기적인 회의 개최 (iii) 정보 공유 (iv) 위기대응계획 및 단계적 축소절차 마련 등이 있다.

한편, FSB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금융규제 개선(Improving Financial Regulation)’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에서 FSB는 모든 주요 다국적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한 정리 또는 축소전략 등에 관한 위기대응계획의 개발을 요구할 계획이며, BCBS를 통해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의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축소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경간 은행의 정리에 관한 제안서’를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FSB는 조직구조가 다른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대응방안과 국가간 자본흐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의 영향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며, 이러한 향후 주요 작업에 대해 G20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2) 개별기관의 정리계획은 ‘정상’과 ‘존속’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고, ‘de-risking’ 방안(정부의 개입 없이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활동영역을 축소하는 방안) 및 신속하고 저렴한 정리·축소(Resolution or Wind-down) 촉진 방안을 포함

(나) BCBS의 권고안

BCBS내 국경간 은행정리그룹(Cross-border Bank Resolution Group : CBRG)은 2009년 9월 예측가능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정리수단의 통합, 그룹구조의 복잡성 및 상호연관성 축소, 위기시의 사업연속성 계획과 사전 비상계획 마련 등 국가간 위기관리 및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다) IMF-세계은행의 논의 동향

IMF와 세계은행은 2010년에 효과적인 다국적 금융회사 정리의 장애요인, 다국적 금융회사 정리를 위한 포괄적 원칙과 대안적 정리절차, CBRG 등에서 제시한 다른 조치들과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 등을 망라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제보험감독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IAIS)도 보험 분야의 위기관리 및 국가간 정리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다. 공동감시단

(1)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여러 국가에 영업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각국의 감독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가 간 특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감독기준의 조화,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에 있어 감독기관 간 상호협력,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원활한 청산을 위해 청산절차의 확대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FSB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및 검사를 위해 해당 금융회사의 본국 감독당국과 해외 영업점을 감독하는 주재국 감독당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공동감시단 구축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2) G20 합의내용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감독당국간 정보 교환과 금융시장에 대한 공조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공동감시단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2009년 6월까지 공동감시단을 설립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공동감시단에 대한 명확한 이행계획 수립을 제시하였다.

(3) 논의 동향

(가) 공동감시단의 개념 및 역할

공동감시단(Supervisory Colleges)은 다국적 금융회사의 본점·지점·자회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실체로 관리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감독 및 규제방향을 제시하도록 구성된 각국 관련 감독당국의 협의체를 말한다. 즉,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실화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의 본점·지점·자회사가 있는 지역의 감독당국들이 정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공동감시단의 역할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 평가, 경영 및 위험 관련 정보 교환, 노출된 위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감독당국의 위험 대응력을 증진하는데 있다. FSB는 공동감시단 구성이 필요한 금융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는데, (i) 해당 금융회사의 부실이 시스템 위험을 유발하거나 중대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여 본국 및 국제적 금융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ii) 해외 자회사·지점이 2개 이상 존재하고 이중 하나의 부실이 당해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이다.

(나) FSB 논의 동향

공동감시단에 대한 논의는 FSF에서부터 시작되었다. FSF는 2008년 4월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의 회복력 증진에 관한 보고서’에서 2009년말까지 공동감시단 설립 및 공동감시단 운영의 모범사례 도출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 2009년 2월에는 공동감시단 운영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동 원칙에 따르면 회의 소집 및 주재는 본국 감독당국의 권한이며, 공동감시단에 새로운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FSF가 2009년 6월 FSB로 확대 개편된 이후에도 공동감시단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으며, 현재 BCBS, IAIS, IOSCO 등은 각 업권(은행, 보험, 증권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감시단의 운영과 정보 공유에 관한 원칙 및 모범사례 개발에 대해 논의중이다. 또한, FSB는 공동감시단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본국의 적정 재량권 범위, 본국(Home Country) 감독당국과 진출국(Host Country) 감독당국간의 정보 공유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다) BCBS 논의 동향

BCBS 산하 기준이행소위원회(Standard Implementation Group : SIG)는 2008년 이후 BCBS에 3차례에 걸쳐 은행권의 공동감시단의 현황, 역할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였다.

동 보고를 통해 BCBS는 공동감시단을 은행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구성해야 하며 공동감시단내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논의 주제의 성격 및 참석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공동감시단 구성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금융시장에 한정된 경우 본국 감독기관과 진출국 감독기관간 양자회의가 바람직하고,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감독기관이 모두 참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규모가 큰 은행 그룹의 경우 다층적인 구성 방식(Multi-level Approach)을 채택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IAIS와 공동으로 2009년 6월 FSB 총회에서 공동감시단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출하여 실제 공동감시단의 조직 형태, 조직 구성, 정보 공유 형태, 접촉 방식 등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였다.

BCBS는 2009년 7월 기준이행소위원회(SIG) 산하에 공동감시단 TF를 설치하고 모범원칙 제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0년 3월 BCBS 정례회의를 거쳐 모범원칙을 발표하였다. 향후 동 TF에서 모범원칙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정하기 위해 2010년말까지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 IOSCO의 논의 동향

IOSCO 산하 감독협력TF(Supervisory Cooperation Task Force)에서 공동감시단 운영 원칙을 포함한 ‘감독기관간 협력에 관한 TF의 보고서’를 2010년 6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IOSCO 총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마) IAIS 논의 동향

2008년 4월 FSF가 공동감시단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IAIS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산하 보험그룹소위원회(Insurance Groups and Cross-sectoral Issues Sub-committee)는 보험그룹에 대한 공동감시단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동 소위원회는 2009년 6월 대만에서 개최된 IAIS 연차총회에서 ‘보험그룹 감독 관련 공동감시단 활용 지침서(Guidance Paper on the Use of Supervisory Colleges in Group-wide Supervision)’ 초안을 보고하였고, 2009년 10월 그룹전체 감독 관련 공동감시단에 대한 감독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동감시단의 설립 여부와 시기, 운영세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동감시단 구성 및 참여 형태 유형·고려사항, 공동감시단의 역할, 감독정보의 교환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IAIS 보험그룹소위원회는 IAIS 가이드라인 보고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중으로 후속 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4) 한국의 공동감시단 참여 활동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이 2010년 1월말 현재까지 스탠다드차터드뱅크(5회), 도이치뱅크(3회), 알리안츠보험(1회) 등의 공동감시단에 참여하였다.

한국이 참석한 공동감시단의 경우 주로 바젤Ⅱ 도입과 관련하여 자회사간 자본산출방법의 차이로 인한 자본격차를 해소하고 데이터 이전에 따른 국가간 법·제도 차이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글로벌 금융그룹 본사의 재무상황, 감독상 조치내용, 구조조정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감시단의 실질적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원 구성, 회의 개최 현황 등의 자료 공유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동감시단의 설립 현황 및 공동감시단 참가자와 회의 빈도, FSB가 지정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감시단의 설립 계획, 공동감시단과 감시 대상 금융회사간 상호 작용의 범위와 공동감시단 핵심 회원과 비핵심회원인 진출국 감독당국간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3. 보상체계 개선

가.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가 경영진 등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유발하여 위기의 원인중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 선진국에서는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금융회사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등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동안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경영 사항으로 인식되던 보상체계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나. G20 합의내용

이에 따라,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금융규제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각국 금융당국과 국제기준 제정기구가 보상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FSB가 제시한 ‘보상체계 원칙’을 채택하고, 각국 감독당국이 이를 2009년 임금협상 시점까지 도입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BCBS로 하여금 FSB의 보상체계 원칙을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 관리지침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G20 정상들은 각국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건전성 평가의 일부로 보상정책을 평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본 요구액의 증대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요구하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FSB가 마련한 보상원칙 집행기준을 승인하고, 각 금융회사가 이 기준을 즉각 완전히 이행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감독당국은 위험 관리 측면에서 보상정책과 보상구조를 점검하고, 보상체계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적립을 요구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다. FSB 논의 동향

FSB는 워싱턴 정상회의의 요청에 따라 2009년 4월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i) 보상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구조 구축 (ii)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구축 (iii) 효과적인 감독 및 주주의 참여체계 구축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의 「건전한 보상체계 원칙(Principle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을 런던 정상회의에 제출하였다.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 FSB의 보상원칙을 채택하고, 각국은 2009년 임금 협상시 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EU는 2009년 9월 EU 정상회의를 통해 보다 강하고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2009년 9월 보상원칙 집행기준(Implementation Standards)을 만들어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제출하였고, 정상들이 이를 채택함으로써 G20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적 지침으로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 내에 독립적인 보상위원회를 설립하고, 리스크 담당직원에 대한 보상은 다른 사업 분야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둘째, 보너스의 상당 부분(40~60%)은 지급을 3년 이상 이연(Deferral)하되, 이연지급하는 변동보상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커지는 것을 금지하며, 보너스의 상당부분(예 : 50%)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지급하되 적정기간 동안 보유를 의무화한다. 상여금 보장을 금지하고, 부정적 영향(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급된 상여금을 환수(Clawback)한다.

셋째, 회계연도중 보상액, 보너스 금액 및 형태, 지급이 이연된 보상액, 퇴직보상금액(1인 기준 최고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넷째, 보상기준 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바젤Ⅱ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다섯째, 보너스가 건전 자본 수준 유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감독당국은 보너스를 총수익의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FSB 보상원칙 주요내용

효과적인 지배구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 금융회사의 경우 독립적인 보상위원회 구성 리스크 및 준법감시(compliance) 담당직원의 보상을 여타 사업분야와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적정수준으로 지급
리스크를 감안한 보상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의 재무성과가 낮은 경우 총변동보상규모를 축소 고위급 경영진과 특정직원에 대한 성과급 이연지급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지급 비율 의무화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에 대한 연차보고서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정책 결정 절차, 보상시스템의 주요 설계특성, 보상 총계 및 고위급 경영진과 직원들의 세부 정보 등 포함
감독당국의 보상체계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 안정·구제 등을 위한 정부 특별조치가 있을 경우 감독당국은 동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에 대해 개입가능 보상정책이 건전한 자본유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은 변동보상을 총수익의 일정비율로 제한 보상원칙 미이행 금융회사에 대해 감독당국 즉시 시정조치

라. 주요국의 추진현황 및 쟁점

미국은 보상구조는 FSB의 보상원칙 수준에서 제시하고, 보상체계 개선을 주로 보상 관련 지배구조와 공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FSB 보상원칙 집행기준의 원칙과 금융회사에 대한 보상체계 검사규정을 담은 보상지침(Compensation Guidance)을 발표하였고, 2009년 12월 공정보상법(Corporate and Financial Institution Compensation Fairness Act)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공정보상법은 지배구조면에서 독립적인 보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경영진의 보수체계에 대한 주주의 비구속적 투표(Non-Binding Votes)로 이사회를 압박할 수 있는 ‘Say on Pay’제를 도입하며, 상위 임원 5인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은 구제금융(TARP) 자금을 예외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상구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상여금 환수와 고액퇴직급여 금지, 주식 형태의 상여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영국은 지배구조와 공시 등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되 주로 보상구조 제한에 중점을 두고 보상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2009년 8월 독립적인 이사로 보상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고, 상여금의 이연 지급과 환수 조항을 규정한 ‘보상규정(Code on Remuneration)’을 확정하였고, 재무부는 2009년 11월

보상규정을 제정하고 규정위반 계약을 금지하며 위반 계약을 원상회복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FSA에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서비스 법안(Financial Service Bill)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특히, 영국은 최근 금융권 분담 방안과 연계하여 25,000 파운드 이상의 보너스에 대해 50%의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영국과 유사하게 27,500 유로 이상의 보너스에 대해 50%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반면, 독일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연 지급과 환수 조항 등 보상 구조 제한 및 보상상한 설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9년 초부터 금융 공기업과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받은 은행권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해왔다. 정부 산하 금융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은행권은 「성과보상 자율기준(2009년 1월)」을 만들었다. 여기에 FSB의 논의를 반영하여 2010년 1월 감독당국·업계 공동 작업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금융지주회사 등 4개 업권별로 「보상원칙 모범기준」을 마련하였다. 업권별 모범기준은 FSB 보상원칙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보상원칙의 주요 내용을 원안대로 충실히 반영하였다.

적용 대상은 FSB가 제시한 중요한 금융회사(Significant Financial Institutions)를 업권별로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은행은 은행법상 금융회사로 18개 은행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국책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및 성과보수 등이 엄격히 통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성과보상 이연 지급 및 스톡옵션 도입 등에 대해서는 모범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금융투자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10개 증권사가 모범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보험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10개 보험사가 포함되었다. 보험사는 업무의 위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 기준을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완화했으며, 앞으로 주요국의 추진 상황과 국내의 시행 성과 등을 보아가며 대상 기준의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는 개별업권 모범기준 적용 금융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로서 7개사가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모범기준의 적용 대상 임직원은 ‘경영진 및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으로 규정한 FSB의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업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예컨대 은행과 보험사는 투자금융,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의 설계·판매·딜링 등을 담당하는 직원에 적용하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은행업무(IB), 트레이딩(주식·채권·파생상품 거래 등)을 담당하는 직원

을 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업권별 성과보상 모범규준이 제정됨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보상위원회 설치, 보상체계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금융회사가 등 모범규준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업권별 모범규준 및 금융회사의 이행실적은 FSB의 이행실적 점검 때 제출된다.

FSB는 금융당국의 실적점검 등을 기초로 각국의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추가조치 사항 등을 확정할 예정이며 금년 3월 운영위원회 및 총회를 거쳐 실적점검(review)이 완료되었다. 점검 결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FSB의 원칙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여 감독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요국의 시행 추이 및 국내 시행 성과 등을 감안하여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1. FSB 건전한 보상체계원칙 주요내용 (2009년 4월)

① 보상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구조 구축

- 금융회사 이사회는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을 실질적으로 감독
 - 보상체계는 금융회사의 CEO나 관리조직에 의해 관리되어서는 안 됨(비상임 이사, 감사위원회가 책임)
 - 관련 이사 및 직원은 위험 관리와 보상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필요
- 금융회사 이사회는 보상체계가 당초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
 - 보상체계의 실제 운영(보상결과, 위험 측정 및 위험 결과)이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
- 재무 및 위험 관리 조직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적절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들이 감독하고 있는 사업분야와는 독립적인 별도의 보상체계를 구축

② 위험부담에 상응한 효과적인 보상체계 구축

- 보상수준은 위험 규모에 따라 조정될 필요
 - 동일규모의 단기 수익을 창출하지만 위험 규모가 다른 경우 보상체계는 달리 적용(위험에 대한 양적 측정과 관리자의 판단이 위험의 조정에 중요)
 - 유동성위험, 평판위험, 자본비용 등과 같은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위험도 포함
- 보상수준은 위험의 결과와 대칭적일 필요
 - 보상체계는 금융회사의 전체 성과에 상응하여 성과급 규모가 정해질 필요
 - 금융회사 전체, 조직단위별, 사업별로 성과가 미약한 경우에는 성과급은 감소되거나 지급되지 않아야 함

③ 위험부담에 상응한 효과적인 보상체계 구축

- 보수 지급기간은 위험 보유기간을 고려할 필요
 - 금융회사의 수익과 손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인식되는 변동가능성이 있는 보수의 지급은 연기(유예)될 필요
 - 보수지급은 위험이 장기에 걸쳐 인식되는 경우 단기에 종료되어서는 안됨

- 보수지급 시점에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거나 그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성과급의 지급을 재검토해야 함
- 보수 지급방법은 위험에 상응하여 현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를 조합
 - 보수지급방법의 조합은 피고용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그 조합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④ 효과적인 감독 및 주주의 참여 체계 구축

- 감독당국은 보상체계에 대해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미흡한 경우 즉각적인 감독상의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
 - 감독당국은 위험 평가체계에 금융회사의 보상업무를 포함
 - 모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점검과 개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각국 당국은 FSF를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
- 금융회사는 주주들의 체계적인 참여를 위해 보상체계에 대해 명확하고,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공표할 필요
 - 주주들은 금융회사의 전략과 위험과 관련한 특성을 평가할 필요
 - 위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공표는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금융회사와 관련된 그들의 업무에 대한 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음
 - 감독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이행실태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2. 국내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주요내용 (2010년 1월)

① 보상위원회의 설치

- 보상체계 설계 및 운영 등을 위해 이사회내 보상위원회 설치
 - 보상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높이고
 - 보상체계 설계시 위험 관리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인 이상 참여 의무화

② 리스크 관리·준법감시 부서의 독립성 강화

- 리스크 관리·준법감시 담당 부서장 등에 대해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인 보수체계 및 성과평가 방안 마련

③ 보상과 리스크 연계

- 경영진 및 특정 직원에 대한 보상중 상당부분을 변동보상(성과연동보상)으로 지급
- 변동보상중 상당부분(예 : 40~60%)은 리스크 존속기간을 감안하여 이연지급(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3년 이상 원칙)
 - * 근무연수와 책임정도 등에 따라 변동보상 비율 증가
- 변동보상중 상당부분(예 : 50% 이상)은 주식·주식연계상품 등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동되는 형태로 지급
 - * 비상장금융회사 등 비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비현금 지급 의무의 예외를 인정
 - *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은 적절한 유보정책(retention policy, 예 : 스톱옵션의 경우 대기기간 2년 이상, 행사기간은 대기기간이 지난후 3년 이내로 제한하며, 이직이나 파산시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의 적용을 받음
- 변동보상의 이연지급 기간중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행한 경우 미래 지급할 변동보상을 축소하여 지급(Malus or Clawback Arrangement)

④ 보상 관련 정보의 공개

- 각 금융회사의 보상위원회는 보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 후 3개월 이내 공시
 - ※ 주요 공시내용
 - 보상위원회 구성, 권한, 책임 등 보상체계 의사결정 절차
 -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이연지급방법,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 배분 결정기준)
 - (i) 회계연도중 보상액(고정·변동보상액, 수급자 수)
 - (ii) 변동보상 금액·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 (iii) 이연지급 보상액(지급확정·지급 불확정) 및 당해 회계연도 지급액
 - (iv) 퇴직보상액, 수혜자 수, 1인 기준 최고액 등

4.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

가. 논의 배경

장외파생상품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시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련 위험이 다른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실패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면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중앙청산소, 거래정보저장소, 전자거래플랫폼 등 새로운 인프라를 도입하여 과도한 위험 집중을 막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나. G20 합의내용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대 원칙중 ‘금융감독규제 개선의 원칙’의 이행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기하였다. 주요 내용은 2009년 3월까지 감독 및 규제당국이 CDS 및 장외파생상품의 시스템 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효과적인 감독규제를 받는 신용파생상품 중앙청산소²³⁾ 설립을 통해 신용파생상품의 표준화와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관련 업계에 2009년 가을까지 표준화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을 요구하였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매매체결·청산·보고에 대한 요건과 제재수단 및 이행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늦어도 2012년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적절한 경우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²⁴⁾)에서 거래되고, 중앙청산소를 통해서 청산되어야만 하며, 둘째,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²⁵⁾)에 보고되어야만 하고, 셋째,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계약은 보다 높은 자본금이 요구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G20은 FSB와 관련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집행 상황과 이러한

23) 중앙청산소는 금융시장에서 계약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모든 매수자에게는 매도자, 모든 매도자에게는 매수자가 되는 주체를 의미

24)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플랫폼은 정규거래소가 아닌 자동화된 사설 매매체결 시스템으로 딜러와 딜러 또는 딜러와 고객이 참여하여 스크린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됨

25)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정보를 수집하여 감독정보와 시장공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구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대사업무(Reconciliation) 등 후선업무(Back Office)의 효율을 증진하여 운영 위험을 경감

조치가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시스템 위험을 완화하며,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G20 정상회의가 3차까지 진행되면서 규제 대상과 요구되는 인프라의 범위 등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규제안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워싱턴 회의와 런던 회의에서는 CDS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나,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규제대상이 확대되었고, FSB로 하여금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 논의 동향

이러한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방안의 골자는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 의무화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청산소는 자본금 비율(또는 규모),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등 참가요건을 통한 청산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며, 증거금 제도를 통해 결제불이행 위험을 통제한다. 중앙청산소는 집중결제상대방이 되어 모든 거래참여자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맡아 결제이행을 보증함으로써 거래상대방 위험을 제거하고 결제불이행 위험의 전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보를 집중하고 공시함으로써 감독 당국 및 시장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불투명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제기구 논의 동향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IOSCO)는 2009년 9월 ‘증권화 시장 및 CDS 시장’에 적용될 규제에 대한 권고안(Final Regulatory Recommendations on Securitisation and CDS Market)을 제시하였다. 동 권고안은 2008년 11월 G20에서 ‘규제받지 않는 금융시장 및 상품(unregulated financial market segments and products)’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IOSCO가 대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마련한 것이다. CDS 시장에 대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i) 표준화된 CDS 청산을 수행하는 중앙청산소 설립시 적절한 자원과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규제체계를 갖출 것 (ii) 금융회사와 시장참여자는 CDS 계약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것 (iii) 중앙청산소에 대한 CPSS-IOSCO의 권고안(The CPSS-IOSCO Recommendations for Central

Counterparties)²⁶⁾을 업데이트할 것 (iv) IOSCO 회원국과 타 규제당국은 정보 공유 및 규제 공조를 원활히 할 것 등이다.

한편, CPSS와 IOSCO는 2004년 발표한 ‘중앙청산소에 대한 권고안’을 장외파생상품의 청산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권고안의 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BCBS는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을 반영한 자본금 규제 방안을 2010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각국 규제당국, 중앙은행 및 IOSCO 등 국제기구로 구성된 장외파생상품 규제자 포럼(Over-the-Counter Derivatives Regulator Forum)에서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와 거래정보저장소 설립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고 설립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동 포럼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향후 IOSCO 등 국제기구에서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안 작성시 반영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²⁷⁾

이 밖에 민간단체인 국제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 ISDA)는 CDS를 포함한 다양한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 각국 논의 동향

각국은 자국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i) 표준화된 스왑거래에 대해 청산기관을 통한 청산 의무화 (ii) 감독기관에 대한 청산기관 관련 정보 보고 및 공시 의무화 등 장외파생상품거래를 규제하는 입법안(OTC Derivatives Markets Act of 2009)이 하원을 통과(2009년 12월)하였다.

EU집행위원회(EC)는 장외파생상품의 규제에 관한 향후 정책과제를 설정한 보고서(Ensuring Efficient, Safe and Sound Derivatives)를 발표(2009년 10월)하였다. 동 보고서는 (i) 금융당국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와 포지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 (ii) 장외파생상품시장과 시장참여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 (iii)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운영프로세스의 효율성 강화 (iv) 거래상대방 위험의 감소와 중앙 집중화된 인프라 사용의 장려 등 4가지 규제목표를 설정하고, 이 규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표준화, 중앙청산소·거래정보저장소 활용, 거래자동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FSA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Reforming OTC Derivative Markets’를 발표하면서 EC의 규제방안을 지지하였으나, 중앙청산소를 통한 강제청산 등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

26) 중앙청산소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법적기반, 참가기준, 담보요건, 파산절차, 투명성·효율성 확보, 대금결제, 거버넌스, 감독 및 규제 등에 관한 15개의 권고로 구성

27) 장외파생상품 규제자 포럼은 2009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하였고, 2010년 1월 뉴욕에서 제2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3차 포럼은 2010년 6월 로마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견도 제시하였다.

일본은 자국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2010년 1월)한 이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청산기구 이용 의무화 등 청산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2010년 3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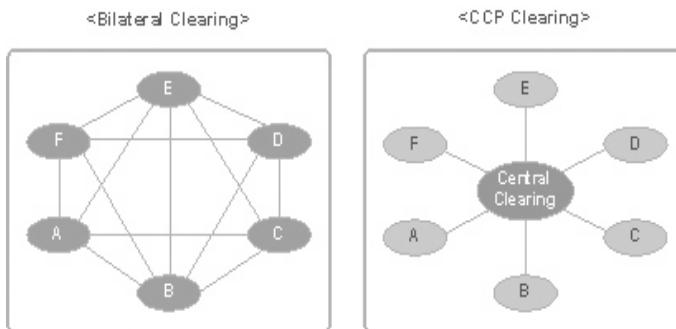
한편, 최근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CDS 거래를 활용한 투기적 거래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독일, 프랑스, 그리스 등은 투기적 CDS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은 CDS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투기적 CDS 거래의 전면적 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개선 협의회'가 2009년 중 9차례 회의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관련 13개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2010년 2월 동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위는 2010년 2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해외논의 동향과 선진국의 추진사례를 감안하여 2010년중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 CCP)

- CCP는 일반적으로 그 자신이 금융시장에서 계약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모든 매수자에게는 매도자, 모든 매도자에게는 매수자가 되는 주체로 정의된다.
- CCP가 집중결제상대방이 됨으로써 장외거래에서 개별거래자가 부담하는 신용위험이 모두 CCP로 집중되어 양방향거래로 인한 거래상대방 위험이 줄어들고 다자간 차감(netting)에 의해 결제리스크도 감소된다.

<CCP의 다자간 차감효과>



2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계약조건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수집하고 유지하는 주체이다.
-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 정보의 원천으로서 감독당국, 시장참여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각 기관이 업무에 맞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서 시장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3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

- 전자거래플랫폼은 채권시장의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과 유사한 개념으로 전산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표준적인 상품에 대한 매매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5. 회계제도 개선

가. 논의 배경

현행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방식이 경기순응성을 증대시키고 복잡한 회계기준과 특수목적회사(SPV)를 통한 유동화 등의 부외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재무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 증진과 금융규제의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회계기준상의 차이를 제거하는 과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나. G20 합의내용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i) 금융상품의 가치평가 기준 개선 (ii) 부외실체(off-balance vehicle)에 대한 회계 및 공시기준의 취약점 개선 (iii)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개선 (iv) IASB 지배구조 개선 등의 과제를 이행하고, 중기적으로는 (i) 단일화된 양질의 국제회계기준 마련 (ii) 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각국 관련 기구간 협력 (iii) 금융기관의 국제관행에 부합한 위험·손실의 공시 및 완전하고 정확한 재무제표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공정가치회계(fair value accounting) 체계는 유지하되 금융상품의 유동성 및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의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회계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FSF가 발표한 권고안²⁸⁾을 수용하고, 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이 2009년말까지 (i) 금융상품 회계기

28) FSF 권고사항

① IASB 및 FASB

- 현행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대손발생 결정시 판단이 결부되어 있어 유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감독기구 및 금융기관과 그 감사인에 주지시켜야 한다.(2.1)
- 현행 발생손실모형을 재고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이용가능한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대손을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는 대체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2.2)

② 회계기준 제정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

- 가치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모형이 취약한 경우 손익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가치 평가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적립금 또는 조정계정의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3.4)
- 공정가치 회계처리에 의한 부정적인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련 회계기준의 변경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에는 신용중개기관이 금융상품에 대해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관련한 회계기준의 개선, 금융자산 분류범주의 변경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단순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5)

준의 단순화 (ii) 대손충당금 설정시 보다 광범위한 신용정보 활용 (iii) 충당금, 부외거래 익스포져 및 불명확한 가치평가 관련 기준 개선 (iv) 공정가치 평가기준의 명확성 및 일관성 확보 (v) 단일화된 양질의 회계기준 마련 (vi) 독립적인 회계기준 결정과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감독기구 및 신흥국 등의 이해관계자 참여 증대 등을 이행토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2009년 11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FSB가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실천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2011년 6월까지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양질의 회계기준을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IASB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도 합의하였다.

다. 논의 동향

(1) IASB 논의 동향

IASB는 워싱턴 및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회계제도 개선의 이행과 관련, 회계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i)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ii) 대손충당금 (iii) 위험회피회계 (iv) 부외실체관련 연결 및 양도 회계 (v) 공정가치 측정 등의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FASB와 공동으로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양질의 회계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유도를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가)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등 관련기준의 복잡성 완화

IASB는 2009년에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와 금융위기에서 제기된 이슈를 공동으로 다루기로 하고 현행 금융상품 회계기준을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ASB는 기존 금융상품 회계기준의 개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에는 1단계 산출물로서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확정기준을 발표하였다. 한편, 2단계 ‘대손회계’와 3단계 ‘위험회피회계’는 각각 2010년 4사분기 및 2011년 1사분기까지 기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에 대한 확정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금융자산을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 금융자산 및 대여금 등 4가지로 분류하고, 공정가치평가와 상각후원가로 측정을 이원화하며 공정가치 평가결과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던 것을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등

2가지로 분류²⁹⁾ 및 측정을 단순화하였다. 당초 사업모형(이자수취목적 혹은 매각차익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금융자산의 재분류(예: 상각후원가에서 공정가치평가로 변경)를 허용하였다. 또한 신용파생결합상품(CDO, CLN 등), 추가연계증권(ELS) 등 복합금융상품(hybrid financial instruments)도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 동일한 분류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나) 대손충당금(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적 인식 강화

IASB는 2009년중 대손충당금회계와 관련하여 금융위기자문그룹(Financial Crisis Advisory Group : FCAG)의 자문을 통해 현행 발생손실모형³⁰⁾ 대신에 기대손실모형³¹⁾ 등 미래지향적 정보를 보다 많이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기대손실모형에 기초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10년 4사분기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발생손실모형에 대해서는 (i) 부도 등 대손사건 발생 이전 기간동안 이자수익의 과대계상 (ii) 대손사건 발생시 일시에 대손비용을 인식함에 따른 손익변동성 확대 (iii) 대손사건 발생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 (iv) 신용위험 변동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손실인식 지연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금번 금융위기로 인하여 이러한 단점이 부각되었다.

발생손실모형하에서는 미래기대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므로 대손사건이 발생되기 전에는 수익이 과대계상된다. 또한, 대손사건이 발생되면 대손비용을 일시에 인식하여 대출채권 관련 손익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손익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기대현금흐름접근법은 미래기대손실을 차감한 예상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산정된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므로, 미래기대손실이 대출기간 전체에 걸쳐 안분되어 이자수익에서 차감되는 효과가 있어 이자수익의 과대계상 및 손익변동성 확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위험회피회계의 단순화

IASB는 현행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및 회계처리가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이의 적용 및

29)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과 관련된 금융상품만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나머지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

30)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 개별자산이나 자산집합이 완전하게 회수되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사건(Trigger Event)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

31) 기대손실모형/기대현금흐름접근법(Expected Cash Flow Approach): 최초 인식시점에 미래기대손실에 대한 추정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기초하여 개별자산이나 자산집합에 대한 유효이자율을 결정하고 이후 매기마다 미래기대신용손실을 재추정하여 장부금액의 변동을 손상차손으로 인식

이해가 어려우며 이로 인한 불투명성이 야기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2011년 1사분기까지 수정하기로 하였다.

위험회피회계의 단순화를 위해 IASB는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결과를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삭제하고, 위험회피수단의 평가결과만 자본에 반영하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방식으로 일원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라) 부외실체 관련 연결 및 양도기준의 개선

금융회사의 부외항목(특수목적회사, 부외자산 및 부채) 관련 회계 및 공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관련 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워 금융위기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IASB는 2008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개초안³²⁾을 발표하였고 2009년에 금융상품의 '제거(derecognition)' 요건을 개선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공개초안³³⁾을 발표하였다. IASB는 이러한 '연결', '제거' 기준을 2011년 1사분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마) 금융상품의 가치평가 기준 개선

IASB는 2008년에 금융위기 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금융상품의 재분류를 허용하여 부적절한 공정가치 평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9년에는 '공정가치측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회계기준(US GAAP)간의 합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급락한 금융상품의 시가를 공정가치로 반영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손실부담이 증대되고 자본변동성이 확대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IASB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가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측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IASB가 2009년 5월 발표한 '공정가치측정' 공개초안에서는 US GAAP과 동일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사용하여 정보수준에 따라 3단계로 정비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였으며, 비활성시장(inactive market)에서 형성된 시가는 공정가치에서 제외하고 합리적인 모델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IASB는 공정가치 회계에서 주요 이슈중 하나로 부각된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32) ①연결판단기준(특수목적기업 포함) ②보고기업이 연결하지 않는 특수목적기업에 관여하는 내용 및 관련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 등 규정

33) 위험과 보상, 통제, 지속적 관여 등 3가지 개념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현행 금융자산 제거모형을 개선하여, 현금흐름 및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 유무만을 판단하도록 함

평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최종 기준을 2010년 하반기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바)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양질의 회계기준 제정 노력

IASB와 미국 FASB는 2009년 10월 합동회의에서 2011년까지 IFRS와 US GAAP을 합치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요 과제별 프로젝트를 완료하기로 하는 공동성명(2009년 11월)을 발표하였으며, 양 기구는 합치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진행사항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한편, IASB는 2011년 6월까지 주요 프로젝트를 완결하여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2011년 경 IFRS를 채택하려는 국가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사) IASCF 정관 검토를 통한 신흥국 등 이해관계자 참여 증대

2007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 IASCF)은 IASB의 공적 책임성 강화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제고, 기준 제정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정관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2009년 2월 1단계 정관 개정을 통해 IASCF 감시위원회(Monitoring Board)를 설립함으로써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동 재단과 감독당국들과의 연결루트를 신설하였으며, IASB 위원수 확대(14→16명) 및 지역별 위원 배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신흥국 등의 참여를 증대하고자 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2월 2단계 정관 개정을 통해 IASB에 부의장을 신설하고, 긴급상황에 대한 기준 제정절차(Due process)를 신설하였다.

(2) FSB의 이행점검 결과

FSB는 워싱턴 및 런던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IASB 등이 G20 정상회의 및 FSB의 회계 관련 제안사항들을 감독규제기관들과 적절히 협력하면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FSB는 이 과정에서 IASB와 FASB간 회계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치된 개선 기준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IASB와 FASB 사이에 견해가 일치되지 않은 주요 분야로는 (i)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ii)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iii) 환매조건부거래(Repo) 등 부의항목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라. 향후 전망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FSB 논의 과정에서 IASB 및 FASB간 기준 개정 작업 추진 일정을 앞당기거나 시행시기를 늦출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결과, IASB는 개정 기준의 의무적용 시기를 당초 2012년에서 2013년으로 1년 가량 늦추었다.

한편, 금융위기 관련 IASB의 회계기준 제·개정 등의 개선 작업은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FASB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위험회피회계 등에 대해서는 단일화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향후 회계기준의 단일화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단일화된 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각국 관련기구간 협력 제고 방안 및 IASB의 지배구조 개선과 운영 재원(funding) 등에 있어서 독립성 제고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과정에서 국제결제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신흥국은 외화유동성 공급이 악화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흥국 개별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국제적 외환자금흐름의 중단(disruption) 등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FSB에서 금융위기사 신흥국이 취약점을 보이는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외화유동성의 안정적 공급과 외환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새로운 검토의제로 제기하였다.

2009년 9월 FSB는 외화유동성 위기 발생시, 다음과 같이 국가간 공조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사후조치(ex-post) 뿐만 아니라 시스템 불안정 요인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ex-ante)도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로벌 유동성 공급 강화 방안(Making global liquidity more robust)을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 신흥국 금융당국은 외환자금조달시장에서 은행의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
-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는 시스템 전반의 국경간 유동성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는 외환스왑시장의 인프라 강화, 외화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
- 각국의 금융당국과 국제금융기구는 동 검토 결과를 유동성 위기사 유동성 공급을 위한 국가간 협조체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이는 동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금융변동성과 갑작스러운 자본흐름 변동에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11월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신흥국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 이슈가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FSB 총회에서도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와는 전혀 다른 경제 상황하에서 전개되었으며, 경제 여건이 근본적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결제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개방경제의 특성과 글로벌 신용경색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외화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점을 설명하고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이 스스로 미시적인 외화유동성 관리³⁴⁾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국제 공

34) 한국 정부는 2009년 11월 개별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i) 금융회사의 외화

조를 통해 신흥국에 안정적으로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향후 이 문제는 전문가 그룹(Expert Group)이 CGFS 정책제안 등을 포함, 대안을 심층 검토하기로 하였는 바, 현재 전문가 그룹의 구성(각국 재무부/중앙은행 각 1인)을 완료한 상태이다. 2010년 4월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는 한편, 6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10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종보고를 할 예정이다.

유동성 위험 관리 강화 (ii) 장기차입 확대 등 차입구조 개선 (iii) 과도한 선물환 거래 제한을 통한 거래상대방 위험 관리 및 외화차입 축소 등에 중점을 두었다.

7. 기 타

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1)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헤지펀드의 투자 손실 등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야기하고 신뢰 저하 및 금융시스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사각지대(regulatory gap)를 제거하는 것이 감독상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헤지펀드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시장·상품으로 규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G20 합의내용

G20에서는 시스템 위험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은행,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고려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나 그 운영자에 대한 등록과 시스템 위험 평가를 위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였다.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헤지펀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헤지펀드 또는 헤지펀드 운영자를 등록, 헤지펀드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버리지 등의 정보를 규제당국에 공개³⁵⁾해야 하며 헤지펀드의 적절한 위험 관리를 위해 헤지펀드를 감독대상에 포함
- FSB는 헤지펀드의 법적 관할지역과 운용인력 소재지역이 다를 경우 헤지펀드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감독을 위해 규제당국간 협력 및 정보 공유 체계 개발
- 규제당국은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이 헤지펀드인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요구

(3) 논의 동향

(가) FSB 논의 동향

35) 필요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등록요구 가능

FSB는 G20 정상들이 합의한 금융규제개혁 권고안에 따라 IOSCO가 추진하고 있는 헤지펀드 감독방안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나) IOSCO 논의 동향

IOSCO는 2009년 6월 헤지펀드 감독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헤지펀드 감독을 위한 6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IOSCO의 헤지펀드 감독을 위한 6개 원칙

- 헤지펀드 및 헤지펀드 운영자/자문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
- 헤지펀드 및 헤지펀드 운영자/자문업자는 조직 및 운영기준, 이해상충, 공시, 건전성 규제 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
- 헤지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프라임브로커 및 은행은 의무적인 등록/규제 및 감독 대상
- 헤지펀드 운영자/자문업자, 프라임브로커는 시스템 위험 목적상(시스템 위험 파악, 분석, 경감) 관련된 정보를 감독당국에 제공
- 감독당국은 업계의 모범규준의 개발, 이행, 통합을 촉진
- 감독당국은 IOSCO MMoU에 기초하여 정보 협조 및 공유³⁶⁾

IOSCO는 헤지펀드 감독과 관련하여 (i) 민간 협회가 발표한 모범규준에 대한 평가 (ii) 헤지펀드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종류 식별 (iii)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헤지펀드를 판단하기 위한 방안 및 이러한 헤지펀드에 대한 요구사항 개발 (iv)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헤지펀드 감독을 위한 협력원칙 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중이며 2010년 상반기중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 미국의 논의 동향

금융위기에 영향을 미친 헤지펀드, 사모펀드, 벤처캐피탈펀드 등 사적영역펀드들이 감독당국에 등록을 요구받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모펀드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런 내용 등이 반영된 법안이 2009년 12월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다.

헤지펀드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헤지펀드 운영자 및 자문업자는 SEC에 등록해야 하며 헤지펀드의 운영자산, 레버리지 규모,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저, 거래 포지션 등 공공의 이익, 투자자 보호, 시스템 위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SEC 보고를 의무화 하였다.

36) Hedge Funds Oversight: Final Report

(라) 영국의 논의 동향

2009년 3월 영국 FSA는 금융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개혁 및 규제 강화를 요구하였다. FSA는 규제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은행·보험회사·구조화투자기구(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 등 법적 지위보다 금융회사의 형태, 자산 및 부채의 구조 등 경제적 실체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잡한 금융수단을 이용하거나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그림자 금융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에 대한 일관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다수의 헤지펀드가 집단적 행태를 보일 경우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은 거시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헤지펀드의 운용이나 새로운 형태의 투자중개기관 영업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당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거나 은행업무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헤지펀드 또는 기타 투자 중개기관에 대한 적절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계획이다.

(마) EC의 논의 동향

EC는 2009년 4월 대안투자 펀드운영자(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 AIFMs)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안투자 펀드관리자 지침

- EU 회원국의 허가를 받은 펀드운영자(AIFM)만이 EU지역에서 펀드 서비스 제공 가능(펀드 운영자는 반드시 본점을 EU에 두어야 함)
- 연차보고서를 투자자 및 당국에 보고, 위험 관련 자료 당국에 보고
- 펀드운영자는 이해상충방지, 위험 관리, 유동성 관리 체계 구축
- 펀드운영자에 대한 자본규제(최소 125,000 유로) 및 레버리지 규제
- 제3국에서 설립된 펀드의 경우 EU 지역내 판매 금지(단, EU의 규제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갖고 EU 또한 해당지역에 경쟁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설립된 펀드의 판매는 허용)

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

(1) 논의 배경

신용평가사의 부적절한 위험평가와 신용등급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도한 의존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신용평가사의 평가절차의 불투명성과 평가 대상 회사와의 이해상충문제에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G20 합의내용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신용평가와 관련된 규제체계 수립방안을 주요 의제로 포함하여, 신용평가 규제를 위한 장단기 이행과제를 마련하였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단기이행과제로는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공시 강화 및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기준을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IOSCO는 신용평가사의 준법 감시를 위한 기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장기이행과제로는 공공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사의 등록 등을 제시하였다.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신용평가사의 이행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모범규준(code of good practice)이 충족되도록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합의사항으로는 (i) 신용평가사에 대한 등록 및 감독 시행 (ii)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문제 해결과 신용평가과정의 품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절차 변경 및 의무 이행을 강제할 권한 보유 (iii)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용등급을 사용하고, 신용평가의 과거자료 및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와 가정을 모두 공개 (iv)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체계는 국가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IOSCO 및 각국 감독당국간 적절한 정보공유 실시 (v) BCBS는 건전성 규제 부과시 외부 신용평가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것이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신용평가에 대한 추가 이슈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난 정상회의의 합의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실행상황을 점검하는데 주력하였다.

(3) FSB 논의 동향

FSB 총회에서는 각국 규제당국은 신용평가사 규제체계가 IOSCO 원칙과 행동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 각국 규제 차이가 신용평가사 규제 의무이행시 충돌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규제당국은 2010년 초까지 적절한 글로벌 해법을 모색하

기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즉, 신용평가사 감독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역적 이니셔티브가 다양하게 진행 중이나 각국에서 발효될 신용평가사 규제는 신용평가 시장을 분리하거나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2009년 초 EU, 미국, 일본은 공동으로 각국의 새로운 신용평가사 규제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불일치성 또는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였다. 또한, IOSCO는 각국의 규제가 IOSCO 신용평가사 원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신용평가사의 영업활동상 마찰 또는 모순된 이행의무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제상 차이를 파악 중임을 발표하였다.

신용평가사와 규제당국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를 감독하기 위한 규제당국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IOSCO는 공동감시단 및 양자간 협력협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며 이는 거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감독에 유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규제당국은 신용평가사의 영업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 각국의 입법동향

신용평가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 논의에 따라 각국은 신용평가 관련 국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가) 미국의 논의 동향

미국은 2006년 「신용평가사 개혁법(CRA Reform Act of 2006)」을 제정(2007년 7월 시행)하여 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 : NRSRO)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SEC의 감독을 수행하여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4월 SEC는 「Code of Federal Regulations」를 개정하여 정보공개 강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³⁷⁾을 마련하였으며, 6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안은 SEC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시사하고 있다.

2009년 6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안은 이해상충 해소를 위하여 신용평가 고객에 대한 권

37)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금지사항

- ① 기업, 법적 구조, 자산, 부채, 행위, 증권발행 등에 대해 채무자에게 추천
- ② NRSRO내의 직원이 대가가 지불된(fee paid) 등급의 협상, 토론, 조정 등에 참여
- ③ 채무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행위에 대해 받은 보상(25 달러 이하) 이외의 보상을 받은 신용에널리스트가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참여

설정을 금지하고 평가보고서에 평가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등급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 등급 공시 및 구조화 상품에 대한 별도 등급 기호 사용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여 신용평가의 투명성 및 공시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SEC는 등급 결정과 관련한 정책과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평가사가 정책과 공시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통제, 실사(due diligence), 평가 방법론에 대해 검사할 수 있도록 SEC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였다.

(나) EU의 논의 동향

EU는 2009년 4월 EU 의회 및 각료 이사회에서 이해상충 방지, 등급의 질 개선, 공시의무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EU 역내 평가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목적으로 한 신용평가 관련 규제 개편안을 채택하여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³⁸⁾

규제 개편안에서 신설된 주요 과제는 (i) 신용평가사들은 자문서비스 제공 금지 (ii) 양질의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한 금융상품의 등급 산정 금지 (iii) 평가기준 모형, 방법론 및 주요 가정 공개 (iv) 복잡한 상품들의 평가는 구체적 표식으로 구분 (v) 매년 투명성 보고서 발간 의무 (vi) 신용평가 질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내부 담당부서를 설치 (vii) 이사진 구성에 적어도 독립 2인을 포함 (viii) 이사진의 보수는 신용평가사의 사업성과와 무관해야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 일본의 논의 동향

일본은 2009년 6월 신용평가사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0년 4월 시행 예정)하여 시장참가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평가과정의 공정성 제고, 투명성과 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규제는 다음과 같다. (i)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할 경우 핵심 분석가는 2년 주기로 5년간 순환근무하거나,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결정하도록 함 (ii) 신용평가에 대한 내부통제 등을 담당할 내부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1/3(또는 2인) 이상을 독립적 인사로 구성 (iii) 신용평가 결정일로부터 1년 이상 소요된 신용평가의 경우 평가 관련 정보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iv) 신용평가 담당직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이사 취임 제한 (v) 평가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이해관계

38) 기존 EU 역내 신용평가사들에 관한 규제는 IOSCO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근거로 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EU증권감독위원회(CESR)에 의해 매년 IOSCO 행동강령과의 일치성을 평가받아 왔음

가 있는 회사에 평가에 사용된 핵심 정보의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이다.

(라) 우리나라의 논의 동향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용평가 허가제 및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i) 금융회사 및 대기업 집단 등이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ii) 5% 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자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금지하며 (iii) 출자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서에 출자관계 기재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신용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왔다.

한편, 2009년 4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용평가사와 관련한 국제적 규제강화 내용을 반영하였다. (2009년 10월 시행)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평가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신용평가사의 내부통제기준에 (i)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ii)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방지 (iii) 평가자료의 기록 및 보관 (iv) 신용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한국은 신용평가 관련 IOSCO 행동강령을 구체화한 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i) 신용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신용등급평가위원회 구성 (ii)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조직 분리, 순환보직체계,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내부직원의 신용평가 금지, 이해상충 소지 있는 사항의 기재 (iii)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방법론과 주요 평가가정, 기초자산 정보에 대한 검증 여부, 신용등급 결정에 주요 역할을 하는 기초자산 정보 공시 등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강화하였다.

다. 국제기준이행 및 비협조적 지역(국가)에 대한 대응

(1) 국제기준이행

(가) G20 합의내용

G20은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중기과제로 ‘각국은 자국의 규제시스템의 원칙 및 구조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모든 G20 회원국은 IMF의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³⁹⁾에 참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IMF와 FSB가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행동계획에 대해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2009년 11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FSB 회원국은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IMF와 세계은행의 FSAP를 통해 정기적인 상호평가를 실시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진전사항 점검을 위한 FSB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나) FSB 논의 동향

FSB는 G20 정상회의로부터 부여받은 임무(mandate)를 수행하기 위해 2009년 6월 창립총회에서 기준이행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기준 이행상황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기준이행 상임위원회는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2009년 11월 FSB 총회에 (i) 감독규제 분야의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에 대한 현황 파악 (ii) 비협조적 지역의 선별 기준 (iii) FSB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방안 (iv) FSB 회원국들의 국제기준 이행현황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FSB는 2009년 11월 총회에서 2009년말까지 국제 금융기준 정착을 강화할 기본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i) 회원국들의 모범적 이행 (ii) 회원국간 기준이행의 정기적인 상호평가 (iii) 모든 국가에 국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FSB는 회원국들의 모범적인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주제별 상호평가(thematic peer review)⁴⁰⁾와 국가별 상호평가(country peer review)⁴¹⁾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제적 기준이행 촉진을 위해서 FSB는 비협조적 지역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39) 1999년 5월에 도입한 IMF/세계은행 공동주관의 회원국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성 평가 프로그램으로서, 회원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조기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0) FSB에서 합의된 특정 정책 또는 감독규제기준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에 초점을 두어 실시

41) 특정 회원국의 금융정책 및 국제기준 이행에 초점을 두어 실시

국제기준 준수를 장려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이행 촉진 수단들이 효과가 없을 경우 2010년말 비협조적 지역의 리스트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FSB는 기준이행 상임위원회에 보다 심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가그룹(Expert Group)을 설치하였다. 이 그룹은 (i) 취약성 및 시스템적 중요도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국가를 식별하는 기준 개발 (ii) 비협조적 국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 (iii) 기준이행 상임위원회의 기준에 따른 비협조적 국가 파악 (iv) FSAP/ROSC⁴²⁾를 보완하기 위한 평가절차 개발 (v) FSAP/ROSC의 정보와 상호평가를 활용하여 각국의 이행상황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G20과 FSB의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9년 10월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G20 권고안 이행상황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구성되었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G20 정상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 FSB 상호평가의 목적 및 절차

① 목적 및 원칙

FSB 상호평가는 (i) 회원국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ii) 금융안정성 현황, 금융부문 개방 및 투명성 유지, 국제기준 적용 등 정책이행의 일관성을 평가하며 (iii) 감독, 규제 및 정책의 최적화를 위한 이행노력과 (iv) 국제기준 및 정책의 기대효과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FSB 상호평가는 국제기구에서 정해진 국제기준과 FSB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르며, 국제기구의 평가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평가절차는 투명하게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대상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주기적이고 포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주요 개혁 조치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금융안정 기여와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따라 개선 방안을 권고한다.

② 평가 단계

상호평가의 첫 번째 단계로서 평가 대상국 및 주제는 상기 목적 및 원칙에 따라 기준이행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주제별 평가를 위한 주제 선정의 우선순위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최근 합의된 새로운 국제기준의 시행 여부에

42)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따라 결정한다. 한편, 국가별 상호평가 대상 FSB 회원국은 FSAP 또는 ROSC 평가 종료후 2년이 경과한 경우와 국가별 상호평가를 통해 최근 시행되는 금융개혁 프로그램이 유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를 요청하는 회원국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상호평가의 두 번째 단계는 평가준비단계로서 (i) 주제 선정(국가별 평가는 제외) (ii) 평가팀 선정 (iii) 자료 취합을 포함한다. 국가별 평가를 통해 평가 대상국의 규제, 감독체제와 금융회사 및 시장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FSAP와 ROSC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체계적·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상호평가의 준비와 실행을 담당하는 평가팀은 평가대상 국가 및 평가 주제에 따라 FSB 회원국 또는 회원기구에 소속된 전문가와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한다. FSB의 다양한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국가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가간 상호평가를 금지한다. FSB 사무국에서 평가팀과 협의하여 질의서를 작성하고, 국제기준이행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상호평가의 세 번째 단계로서 취합된 자료의 검토 및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예비보고서를 기준이행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협의단계가 진행된다. 평가팀은 취합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국의 확인과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보고서는 평가팀의 협조를 받아 사무국이 작성한다. 보고서는 최근 성과 및 이행 지연 여부를 평가하고, 취약한 분야에 대한 권고사항 및 권고사유를 명시하며, 이행시기 및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네 번째 평가 단계는 실제 평가, 보고서 확정 및 승인, 공표를 포함한다. 평가는 실질적으로 기준이행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관련 국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보고서는 총회 회원의 회람을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는 합의에 의해 최종 보고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총회에서 승인하는 즉시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마지막으로 합의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이 지연될 경우 기준이행 상임위원회는 (i) FSB 의장의 서신 (ii) 평가 대상국이 참여하는 총회 토의 (iii) 총회 우려사항의 웹사이트 공표 등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총회에 제안한다. 기준이행 상임위원회는 상호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점과 절차상 개선사항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라) 2010년도 상호평가 계획

국가별 평가는 2010년에 이탈리아, 스페인 및 멕시코 3개국이 국가별 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FSB는 FSAP 평가 또는 업데이트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제별 평가는 2010년에 3개의 주제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첫 번째 평가 주제는 보상 체제에 대한 평가로서 우리나라는 FSB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지난 1월 모두 이행하고

평가에 필요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각 회원국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FSB는 3월 총회 승인을 거쳐 이행상황 보고서를 4월 1일 발표하였다. FSB는 향후 보상체계가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금융회사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 평가의 주제는 위험공시(Risk Disclosure) 원칙과 기준의 이행상황 점검으로서, FSB는 2008년 FSF가 발표한 시장과 금융회사의 회복력 강화(Enhancing Market and Institutional Resilience) 보고서의 위험공시 관련 권고안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 세 번째 평가 주제는 2010년 중반 회원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2)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비협조 국가 대응

(가) 추진배경

국제화의 진전 및 국경간 자본이동의 증가와 더불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도 역시 ‘국제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금의 출처 및 성격을 위장하기 위하여 복잡한 국경간 거래를 반복하는 수법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각국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를 강화하면 불법자금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취약한 국가·지역을 찾아 이동한다. 따라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 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제사회의 긴밀한 정책공조와 전세계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의 국제기준 제정자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국제기준 이행수준이 취약하고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노력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을 선별하여 그 명단을 발표하는 한편, 제도 미이행국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절차를 운용·발전시켜 왔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G20이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비협조적인(Non-cooperative)’ 국가들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의 비협조국 지정과 관련한 FATF의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FATF가 비협조국 지정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G20 합의내용

G20은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금융시장 개혁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채택했으며, 이를 위해 ‘고위험 국가(High Risk Jurisdictions)’에 의한 불법 금융행위의 위험으로부터 국제 금융체제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정상회의 선언문과 함께 발표된 개혁원칙 이행을 위한 활동계획에서는 중기과제로서 ‘비협조적, 불투명한 제도로부터 국제 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 FATF)⁴³⁾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 합의문은 ‘조세피난처를 포함,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금융시스템 강화에 관한 선언문’에서 FATF에게 ‘각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검토하는 절차를 개정하여 보다 강화’할 것과 ‘차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에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그간의 FATF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2010년 2월까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고위험 지역의 리스트를 발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FATF 논의 동향

FATF는 2000년 최초로 15개국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비협조적인 국가로 지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비협조국을 선별하고 발표하는 절차를 운용·발전시켜 왔다. 2006년 이후에는 동 프로세스를 FATF 내 실무그룹중 하나이며 미국이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는 국제협력점검그룹(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 ICRG)에서 주도하고 있다.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문에서 FATF가 비협조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자, 같은 해 6월 FATF 총회에서는 비협조국 대응절차 개정에 합의하였다. 개정된 절차는 기본적으로 (i)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 혹은 고위험 국가를 일차적으로 선별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사전점검 (Prima Facie Review)을 실시하고 (ii) 사전점검 결과 실제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세부점검 (Comprehensive Review)을 실시하며 (iii) 그 결과에 따라 고위험국을 공식지정하는 절차이다.

동 절차에 따르면 (i) FATF 및 산하 지역기구에서 실시한 평가결과 16개 주요 FATF 권고 사항⁴⁴⁾ 중 10개 이상 항목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등급으로 판정받은 국가 (ii) FATF 혹은 산하 지역기구 미참여 국가 및 (iii) FATF 회원국 또는 지역기구 회원국에 의해 제도이행에

43) 1989년 G7 정상회의의 합의에 의거 OECD 산하 기구로 설립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분야의 중추적인 국제기구.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33개국과 EC, 걸프협력기구의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활동 중

44)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범죄화 (R1, SR11),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 (R5, R10), 혐의거래보고 (R13, SR14), 국제협력 (R35, R36, R40, SRI, SRV), 자산동결 및 몰수 (R3, SR11), 금융거래 비밀의 지나친 보호 금지 (R4), 금융감독 (R23), FIU (R26)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된 국가는 자동적으로 지정 후보국이 되어 점검을 받게 된다.

FATF는 상기의 절차·기준에 따라 2009년 6월 전세계 39개국을 사전점검 대상국으로 선정하였으며, 2009년 9월에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고위험국에 대한 대응절차 개정 및 사전점검 대상국 선정결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09년 10월 FATF 총회에서는 1차 선별된 39개국 중 25개국을 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세부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0년 2월 18일 전세계 총 28개국을 고위험국으로 지정하고 동 지정결과를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FATF는 향후 고위험국의 제도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점검절차를 종결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반면 1년여 기간 동안 제도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회원국 및 산하 지역기구 회원국이 제재조치의 성격이 있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s)’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응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FATF는 금번 제1차 고위험국가 명단 발표에 이어 향후에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을 지속하여 고위험(비협조) 국가 지정절차를 상시적인 절차(rolling process)로 운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라) 우리나라의 대응

FATF 권고사항 제21조는 금융회사 등이 FATF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고위험국의 법인 및 개인과 거래시 특별한 주의(special attention)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자국의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FATF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를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 의하면 각 금융기관 등은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동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 운용토록 하고 있다. 2008년 9월 금융정보분석원이 작성하여 금융회사 등에 배포한 ‘업무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의 개인 및 법인과 거래를 주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 거래로 분류하고, 이들과의 거래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취할 조치에 대한 업무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법규적 효력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2010년 3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즉 동 시행령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조치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규정’(FIU 고시)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 근거규정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동 고시에는

FATF가 지정한 비협조국의 개인 및 법인과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조치 이행, 거래 모니터링 강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체계 강화 등 금융회사 등이 취해야 할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동 고시의 제정으로 FATF 고위험 국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FATF가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성명서를 통해 지정한 고위험 국가에 대해 특별한 주의조치를 이행한 바 있다. 즉 2008년 2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세 차례에 걸쳐 금융회사 등에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 FATF의 성명 발표 사실을 알리고 금융회사 등이 고위험국의 금융회사 및 개인과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조치를 적용하고, 환거래관계가 동 조치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통보하였다. 2009년 10월 FATF 총회에서 국제협력점검그룹(ICRG)은 FATF의 성명 발표 이후 각국의 조치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이 동 성명서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FATF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을 고위험국으로 지정하는 것과 더불어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역량이 부족한 국가(Low Capacity Countries)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기준을 실행할 의지는 있으나 물질, 인적 자원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원칙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를 배려하자는 차원이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이런 범주로 분류되는 국가가 상당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선도국가로서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고 있다. 우리의 역내 위치나 국가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0년 3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APG⁴⁵⁾ 공동의장 등과 함께 몽골을 방문하여 몽골 중앙은행 제1부총재, 대통령 법률자문관 등 고위급을 면담하고 기술지원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활동은 우리의 선진 시스템을 수출하고 확산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5)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관할하는 세계 8개 FATF 유형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의 하나, 2010년 3월 현재 40개 회원국을 가진 최대의 지역기구로 호주 시드니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호주 경찰청장(영구 의장)과 싱가포르 대표(2년간)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음



참고자료

1.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가. 워싱턴 정상회의
 - 나. 런던 정상회의
 - 다. 피츠버그 정상회의
2. FSB 정관 (FSB Charter)
3. FSB 총회 주요내용
 - 가. 창립 총회 주요내용
 - 나. 제2차 총회 주요내용
 - 다. 제3차 총회 주요내용
4. 국제기준 제정기구
5. G20 및 FSB 일지

가. 워싱턴 정상회의

(1) 서 문

-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협력과 공동작업을 결의
-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례없는 긴급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의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우리의 노력은 시장경제 원칙, 무역·투자 자유화, 효과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시장 등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라는 공통 인식에 기반

(2) 현재 위기의 원인

- 지난 10여년간 세계경제의 고성장 및 자본이동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투자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고수의 달성을 추구
 -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상품, 그에 따른 과도한 차입(레버리지)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야기
 - 일부 선진국의 정책 및 감독당국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금융혁신의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 일관성이 부족하고,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 부진도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3)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 및 향후의 대응 조치

- 각국은 경기부양, 유동성 공급, 금융회사 자본 확충, 예금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국제금융기구도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
- 그러나, 주요국가의 성장 둔화를 겪고 있고, 세계경기 둔화가 신흥시장국가에 미

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 우리는 세계적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긴밀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기반한 광범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다음의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
 - 내수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에 있어 통화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IMF의 각종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유지해 나갈 필요
 -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

(4)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일반원칙

-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및 규제체제 강화를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
 - 국내 차원 규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금융세계화 추세를 감안하여 국가간 협력 강화 및 국제적 기준 강화
 - 규제당국은 시장원칙을 존중하고 경쟁 및 혁신노력을 지지
 - 금융회사들도 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정보공개 강화,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
- 다음의 개혁을 위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필요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 및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강화,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제 개편 등
 - 금융감독규제 개선 :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제, 건전성 감독,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다만, 규제 개선의 방향은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금융상품의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이해상충 회피, 불법시장 조작 방지 및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신뢰성 회복
 - 국제협력의 강화: 위기에방 및 해결을 위한 감독당국간 규정의 조화 및 모든

금융시장에 대한 공조와 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 브레튼우즈 체제 하의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신흥국과 개도국들의 경제력을 반영하여 이들 국가들의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FSF도 신흥국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

(5) 재무장관과 전문가의 작업

- 2009년 G20 지도국(브라질, 영국, 한국)의 조정에 의거하여 각국 재무장관들은 액션플랜에 명시된 구체 조치를 이행
- 재무장관은 다음 6개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 권고를 마련할 필요
 - 규제정책의 경기순응성 완화
 - 국제회계기준의 재검토(특히,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기준)
 - 신용파생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시스템 위험 완화
 - 과도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보수체계를 재검토
 - 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지배구조 개선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상품의 범위 규정 및 감독체제 수립
-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G20의 역할과 관련, 합의된 원칙과 결정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2009년 4월 30일 이전 정상회의 개최

(6)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공약

- 개혁은 법치주의, 재산권 보호, 무역과 투자의 개방, 시장경쟁, 효과적 규제에 기반할 필요
 - 경제성장과 자본이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 회피
-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보호주의와 내국지향 배제가 중요
 -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및 수출제한, WTO에 위배되는 수출 촉진 등을 자제하고, 연내 DDA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ies)에 합의
- 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악영향을 유념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식량 안보, 법치주의, 테러방지 등 주요한 도전에도 대처
- 공동의 협력과 다자주의를 기초로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회복할 것을 확신

개혁 원칙 이행을 위한 액션 플랜

본 액션플랜은 금융시장 개혁을 위해 합의된 일반원칙(①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②감독규제의 개선 ③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④국제협력 강화, ⑤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의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며, 재무장관은 액션플랜에 명시된 작업을 이행한다.

1.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가.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 주요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은 복잡한 금융상품, 특히 위기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
-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부외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및 공시기준의 취약점 개선
- 규제당국과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개선 추진
-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나. 중기 과제

- 주요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는 양질의 국제 단일회계기준 수립 작업 추진
- 규제당국과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양질의 회계기준 채택과 이행을 위해 민간분야와 지속적으로 작업
- 금융상품은 국제관행에 부합하게 위험에 대한 공시와 손실에 대해 공개

2. 금융 감독·규제의 개선

가. 규제체제

(1)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 IMF, FSF, 여타 규제감독 기관들은 자산평가, 레버리지, 은행자본 등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

(2) 중기 과제

- 각국은 자국의 규제시스템의 원칙 및 구조 검토
 - 모든 G20 회원국은 IMF의 금융평가프로그램(FSAP) 참가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간 규제 차이 및 현재 규제가 미흡한 제도, 기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 마련
- 각국 규제당국은 위기시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의 단계적 축소(wind down)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파산법을 검토
- 자본과 자본 적정성을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자본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

나. 건전성 감독

(1)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공시강화 및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을 도입
- IOSCO는 신용평가사들의 준법 감독을 위해 채택한 기준과 체제를 검토
- 규제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금융회사의 구조화된 신용 및 증권화 활동에 대한 자본기준 강화
- 감독 및 규제당국은 CDS 및 장외시장 상품의 시스템 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 마련

(2) 중기 과제

- 공공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기관의 등록
- 감독기관 및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감독과 관련,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도출할 필요

다. 위험 관리

(1)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 은행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가이드라인 개발
- 금융회사는 유동성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이행조치 마련
- 금융회사는 위험집중도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시의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
- 금융회사는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 BCBS는 새로운 위험측정 모델개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활동 지원
- 금융회사는 자발적 노력이나 규제조치를 통해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 또는 위험 부담 행위를 회피하고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내부 인센티브 마련
- 은행은 구조화 상품 및 증권화 상품에 대해 효과적 위험관리와 실사 노력 추진

(2) 중기 과제

-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은 다양한 종류의 경제·금융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규제 입안자들이 금융시장·상품의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규제당국은 자산가격의 심각한 변동 및 거시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함의를 모니터링

3. 금융시장 신뢰성(integrity) 제고

가.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정책당국간 규제 협력 강화
- 시장안정 위험요소에 대한 당국간 정보공유 및 위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
- 각국은 기업행동규범 검토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나. 중기 과제

- 불법 금융행위 위험이 있는 비협조적, 불투명한 제도로부터 국제금융체제 보호를 위한 국가적·국제적 조치 시행
-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을 근절하는 업무를 지속. 세계은행과 UN의 자산회수 이니셔티브(Stolen Assets Recovery Initiative : StAR Initiative)를 지지

4. 국제협력 강화

가.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 감독당국들은 주요 다국적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며 이들과의 정기적 교류를 추진할 필요
- 규제당국들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 등 모든 조치들을 취할 필요

나. 중기 과제

- 규제당국들은 회계기준, 감사, 예금보호 등 조화가 필요한 분야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노력을 강화할 필요
- 규제당국들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해 취한 일시적 조치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5.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가.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 FSF는 회원국을 주요 신흥국으로 확대
-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대응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조기경보기능 제고를 위해 IMF와 FSF간 협력 강화

- 특히 IMF는 광범위한 회원국과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FSF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 금융위기의 교훈 도출
- IMF, 세계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 확대를 준비할 필요
- 신흥국과 개도국들의 신용시장 및 민간자본 흐름에 대한 접근성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지원
- 시장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양호한 과거자료(track record)와 건전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제공될 필요

나. 중기 과제

- 세계경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다가오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포괄적으로 개혁.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국과 개도국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
- IMF는 모든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 선진경제국, IMF 및 기타 국제기구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의 형성과 이행을 위해 신흥국과 개도국에 능력배양 프로그램 제공

나. 런던 정상회의

☒ 정상선언

- (1) 우리 G20 정상들은 4월 2일 런던에서 정상회의를 가졌음
- (2) 우리는 현대에 들어 세계경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음. 우리가 지난 번 만남 이후로 더욱 심화된 현재의 위기는 모든 국가의 모든 남성, 여성,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해야 함. 전 세계적인 위기는 전세계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음
- (3) 따라서,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은 5가지 약속을 할 것임
 - 신뢰, 성장 및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금융체제가 대출기능을 회복하고 미래를 위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복구
 - 국제금융기구들에게 이번 위기를 해결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권한을 부여
 -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번영을 위해 국제무역을 증진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도모
 이러한 약속을 공동으로 이행함으로써 우리는 세계경제를 경기침체로부터 회복시키고, 이러한 위기가 미래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것임
- (4) 우리는 번영은 공동으로 향유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함. 성장은 지속되고 공유되어야 하며,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글로벌 계획에는 그 중심에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과 최빈국의 근면한 가정들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함. 또한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을 반영해야 함. 지속가능한 세계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단하나의 확실한 토대는 시장원리, 효과적인 규제와 강력한 국제기구에 바탕한 개방된 세계경제임
- (5) 우리는 IMF 재원으로 7,500억 달러, 새로운 SDR 2,500억 달러 배분, MDB를 통한 추가적인 대출 1,000억 달러, 무역금융을 통한 2,500억 달러 지원, IMF의 합의된 금 매각을 통해 최빈국 지원을 위한 양허성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이는 1.1조 달러의 신용회복, 성장과 고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함. 각 국가가 국가별로 취한 조치들과 함께 이 조치들은 유례없는 경기회복을 위한 계획을 구성할 것임

☒ 성장과 고용 회복

- (6) 우리는 지금까지 유례없이 조율된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지출이 없었다면 사라졌을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하였음. 그리고, 재정확대 규모는 내년도까지 5조 달러에 달할 것이고 GDP를 4%p 상승시킬 것이며, 녹색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할 것임. 우리는 성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함
- (7) 우리의 중앙은행들도 예외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왔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자율을 공격적으로 낮추었으며, 향후에도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확장정책을 유지하고, 비전형적인 정책수단들을 포함한 최대한의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였음
- (8) 국내 대출과 국제적인 자금흐름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성장회복을 위한 우리의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 우리는 유동성 공급, 자본확충, 부실자산의 처리 등을 위해 우리의 은행시스템에 중요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공급하였음. 우리는 금융시스템을 통한 신용 흐름이 회복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출을 회복하며 금융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G20 공동원칙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정책들을 집행하기로 약속하였음.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재정·통화정책들의 효과를 보강하고 강화할 것임
- (9) 이러한 조치들은 현대 들어 최대의 재정·통화 부양책과 금융부문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될 것임. 오늘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와 무역금융을 통해 세계경제를 위한 1조 달러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데 합의함
- (10) 지난달 IMF는 세계경제가 2010년까지 2%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함. 오늘 우리가 합의한 조치들을 통해 우리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세계경제가 더욱 빠르게 성장 추세로 회복할 것을 확신함.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고 IMF가 그간의 이행 조치와 향후 필요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청함
- (11) 우리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물가 안정을 보장하기로 결의하고 금융부문 지원과 세계수요 회복을 위해 현재 필요한 조치들의 신뢰 가능한 원상회복 전략을 마련할 것임. 이러한 합의된 정책들을 집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장기적인 피해를 제한할 것이며 장기적인 통합 재정 규모를 줄일 것임
- (12) 우리는 모든 경제 정책을 타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협조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자국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삼가할 것임. 우리는 또한 우리 경제와 금융부문, 타국에 미치는 우리 정책의 효과,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에 대해 IMF의 공평하고 독립적인 감시 도입을 약속함

☒ 금융감독 및 규제의 강화

- (13) 금융분야 및 금융규제 감독에서의 주요한 실패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음. 경제주체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음. 우리는 앞으로의 금융체계를 보다 강하고 보다 국제적인 일관성을 갖춘 감독·규제체계를 구축해나감으로써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과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것임
- (14) 우리는 각각 자국의 규제체계를 강화하는데 합의함. 그러나 우리는 금융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국가간 협력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높은 수준의 기준을 구축하는데 합의함. 강화된 규제와 감독은 타당성, 신뢰성, 투명성(금융시스템상의 부적절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경기순환 증폭보다는 완화, 부적절하게 위험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의존성 축소, 과도한 위험 부담의 축소)을 촉진해야 함. 규제당국과 감독당국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규율을 지원하고, 다른 나라로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규제차이를 축소시키고, 경쟁과 활력(dynamism)을 지원하고, 시장에서의 혁신을 따라잡아야 함
- (15) 이에 따라 우리는 지난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액션 플랜을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 이 선언문의 부속서로 ‘금융시스템 강화’를 발표하였고 액션 플랜을 업데이트하였음

특별히, 우리는 다음 사항에 합의함

- 강화된 임무를 부여 받고, FSF를 대체하는 새로운 FSB를 설립하고, FSB는 모든 G20 국가들과 스페인, EC를 포함
- FSB는 IMF와 협력하여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s)을 실시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 위험과 이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인지하고 보고
- 우리의 당국들이 거시건전성 위험을 인지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재구축
- 모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상품 및 시장으로 규제 또는 감독을 확대. 이에는 사상최초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헤지펀드가 포함
- 중요한 금융회사의 보수에 대한 FSF의 새로운 원칙을 도입하고 집행하고 지속가능한 보상체계 및 기업의 모든 회사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함
- 경기가 회복되면 은행시스템상의 자본의 질, 양, 국제적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실시
- 우리의 재정과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 은행의 비밀보호(banking secrecy) 시대는 종료되었음. 우

리는 OECD가 오늘 Global Forum에 의해 조세협약의 국제표준에 위반된 국가별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것임

- 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은 신속히 감독당국 및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가치평가와 대손충당금에 관한 기준을 향상시키고, 회계기준을 높은 수준의 국제 회계기준으로 단일화
 - 신용평가사들이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모범규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감독과 등록을 확대
- (16) 우리는 액션 플랜에서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우리의 재무장관들에게 이러한 결정을 집행할 것을 지시함. 우리는 FSB와 IMF가 FATF 및 다른 관련된 기구와 협조하여 그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11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차기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토록 요청함

☒ 국제금융기구 강화

- (17) 최근 세계성장의 동력이었던 신흥국과 개도국들이 현재의 세계경제 침체와 함께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세계의 신뢰와 경제 회복을 위해 신흥시장과 개도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어야 함.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능력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8,500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충하기로 하였음. 이를 경기대응지출, 은행자본확충, 인프라 구축, 무역금융, 국제수지 지원, 채무 상환연장(debt rollover), 사회적 지원에 사용하는 데에 합의함
- 회원국으로부터 2,500억 달러의 즉각적인 재원을 조달한 이후, 동 재원의 확대보다 탄력적인 신차입협정(New Arrangements to Borrow : NAB)에 통합하여, NAB를 5,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시장으로부터의 차입을 고려하는 것에 합의함
 - 저소득국가에 대한 용자 등 MDB를 통한 용자를 최소한 1,000억 달러 증가시키고, 모든 MDB가 적절한 자본 규모를 확보해야 함
- (18) 이렇게 확충된 재원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이면서도 융통성있게 사용되어야 함. 우리는 IMF가 FCL를 도입한 것과 각국이 은행 및 기업 부문의 해외차입자금의 회수 등 국제수지상 자금조달수요의 중요한 원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용자 제도 및 용자조건을 개혁한 것을 환영함. 또한 FCL 이용을 추진키로 한 멕시코의 결정을 지지함
- (19) 우리는 2,5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유동성을 확대시킬 SDR 일반배분과 IMF 협정문 4차 개정안의 조속한 비준을 지원할 것을 합의함
- (20) 국제금융기구가 위기관리 및 위기예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이면서 근본

적인 문제, 효과성, 합법성을 강화해야 함. 우리가 오늘 합의한 실질적인 재원의 확충과 함께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근본적인 개혁과 현대화를 추구할 것임. 이를 통해 국제금융기구가 회원국 및 주주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원할 것임.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임무, 업무범위 및 지배구조를 세계경제의 변화 및 세계화의 새로운 도전을 반영하여 개혁하는데 합의함. 최빈국을 포함한 신흥국과 개도국 경제가 보다 많은 의결권과 대표성을 가져야 함. 이와 동시에 국제금융기구가 보다 전략적 감독과 의사결정을 통해 신뢰성과 책임성을 증가시켜야 함. 이를 위해,

- 우리는 2008년 4월에 합의된 IMF 출자지분·의결권 개혁안의 실행을 약속하고, IMF가 2011년 1월까지 차기 쿼터일반검토(GRQ)를 완료할 것을 촉구함
 - 이와 함께, 우리는 IMF의 총재가 IMF내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IMF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IMF내 관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함
 - 우리는 2008년 10월 합의된 세계은행 개혁안의 실행을 약속하고, 2010년 춘계회의까지 조기 추진키로 한 의결권·대표성 개혁안에 관하여 차기 회의시 추가적인 권고사항을 기대함
 -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기관장과 고위직을 공개되고, 투명하며, 능력위주의 선출방식을 통해 임명할 것에 합의함
 - IMF와 세계은행의 현재의 검토에 기반하여 우리는 의장이 G20 재무장관들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통한 협의를 거쳐 국제금융기구의 반응성과 적응성 제고를 위한 개혁 제안을 다음 회의시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21)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별개로 우리는 시장참여자와 정부의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주요 가치와 원칙에 컨센서스가 요구된다는 데에 합의하였음. 우리는 다음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현장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지하였음. 우리는 다른 논의의 장(forum)에서 시작된 논의를 유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함

☒ 보호주의 저지 및 세계 무역과 투자 촉진

- (22) 세계무역 성장은 반세기 동안 변영의 증진을 뒷받침해 옴. 그러나 지금 25년만에 처음으로 세계무역이 감소하고 있음. 수요 감소는 보호주의 압력 증가 및 무역 금융(trade credit) 축소로 더욱 악화되고 있음. 세계 무역과 투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세계성장 회복을 위해 필수적임. 우리는 전 시대의 보호주의의 역사적 과오와 지난 시대의 회복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 이를 위해,

- 우리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함. 우리는 투자 또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을 신설하거나, 수출 제한 조치를 새로이 적용하거나, 수출 촉진을 위해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자제할 것임. 우리는 그러한 조치를 즉시 원상회복할 것이며 규제동결 공약을 2010년말까지 연장할 것임
 - 우리는 재정정책과 금융부문 지원 조치를 포함한 국내 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할 것임. 우리는 금융보호주의, 특히 개도국으로의 세계적인 자금 흐름을 제약하는 조치들로 후퇴하지 않을 것임
 - 우리는 그러한 조치들을 WTO에 즉각적으로 고지하고 WTO가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분기별로 우리의 이행상황을 대외 공개할 것임
 - 우리는 수출신용과 투자 기관 및 MDB를 통한 무역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최소 2,500억 달러를 활용할 것임. 우리는 또한 규제당국이 무역금융을 위한 자본요구량을 신중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함
- (23) 우리는 DDA의 야심차고 균형잡힌 타결에 전념하며, 이는 시급히 요구됨. 이는 세계경제를 연간 최소 1,500억 달러 규모로 증대시킬 것임. 이를 성취하고자 우리는 세부원칙을 포함한 진전을 이루어 낼 것을 약속함
- (24) 우리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새로운 초점과 정치적 관심을 둘 것이며, 지속적인 회의와 La Maddalena 회의를 이용할 것임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조치

- (25) 우리는 성장 회복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기초를 다질 것을 다짐함. 우리는 금번 위기가 최빈국의 취약성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인식함. 또한 세계의 잠재력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우리의 공동 의무를 인식함
- 새천년개발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 달성과 무역을 위한 원조, 채무 경감,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한 Gleneagles commitments⁴⁶⁾ 등을 포함하여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역사적 약속들을 재확인함

46) 2005년 G8 정상회의시 합의한 아프리카 지역 원조계획

- 위기에 빠진 저소득국가, 개도국·신흥국을 위한 지원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의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채택하는 조치와 결정을 통해 저소득국가의 사회안전망 지원, 무역 진흥, 성장 보호를 위해 5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임
 - 장기적인 식량안전에 대한 투자, 인프라 위기 지원기금(Infrastructure Crisis Facility)⁴⁷⁾ 및 긴급사회지원기금(Rapid Social Response Fund)⁴⁸⁾을 포함한 세계은행의 취약국지원프레임워크(Vulnerability Framework)⁴⁹⁾에 대한 자발적 양자공여 등을 통해 우리는 최빈국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가용재원을 조성중임
 - 새로운 수익모델을 감안하면서, 우리는 IMF 금매각 수입(추가 잉여 수입을 포함)을 통해 조성한 추가적인 재원을 향후 2~3년간 최빈국에 대한 60억 달러의 추가적인 양허성 자금지원 및 탄력적 자금지원에 제공할 것을 합의함
 - 우리는 채무적정성평가체계(Debt Sustainability Framework)의 탄력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IMF와 세계은행이 춘계회의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및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에 보고하는 것에 합의함
 - 우리는 UN이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최빈국과 취약국에 대하여 위기의 충격을 점검하는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함
- (26) 우리는 위기에 대한 인간적 측면을 인식함. 우리는 고용기회 창출 및 소득지원조치를 통해 위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공정하고, 유연하며, 가족친화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할 것임. 그러므로 우리는 런던 고용컨퍼런스(London Jobs Conference)⁵⁰⁾와 로마사회정상회의(Rome Social Summit)에서 제시된 다음의 원칙을 환영함. 우리는 성장촉진, 교육·훈련 분야 투자, 취약계층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할 것임.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가 관련 기구와 협력하여 그간의 조치와 향후 필요한 조치를 평가할 것을 요청함
- (27) 우리는 회복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확대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함. 또한 깨끗하고, 혁신적이며, 자원절약적인 저탄소 기술과 인프라로 이행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MDB가 상기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권장함.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도출하고 함께 이행할 것임

47) IFC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국의 민간이나 민관 합동 인프라사업에 일시적으로 용자제공

48)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개도국·중소득국가의 취약계층을 보호(보건·의료, 고용 등)

49) 세계은행이 급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중인 프로그램으로 인프라·사회안전망 구축, 민간분야 지원 등이 주목적

50) 런던 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해 3월 24일 개최된 고용·노동 관련 전문가 및 국제기구 대표간 사전 회의

- (28)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고, 공동의 원칙에 기반하지만 차별화된 의무에 기초하며,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 컨퍼런스에 서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한 것을 재확인함

☒ 합의사항 이행

- (29) 우리는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긴급함과 결의를 갖고 공조할 것을 약속함. 또한 합의사항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 안에 다시 모일 것에 합의함

● 부속서 1 : 금융시스템 강화

우리, G20 정상들은 금융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한 워싱턴 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규제감독을 강화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임. 우리의 원칙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규제를 강화하며,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음. 동 선언문의 내용은 우리의 성명서상의 합의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우리는 오늘 워싱턴에서 마련한 47개 조치사항에 대한 전체 진행보고서를 발표하였음. 특히, 우리는 다음의 주요 개혁사항에 합의하였음

1. 금융안정위원회(FSB)

- 우리는 FSF가 확대되어야 하고, 금융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확대된 임무를 부여받아야 하며, 보다 강력한 제도적 기반과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FSB로 재정립되어야 함에 합의하였음
- FSB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임
 -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점 등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감독
 - 금융안정에 책임있는 당국간 감독 관련 업무조율 및 정보의 공유를 촉진
 - 금융시장발전 추이 및 그에 따른 규제정책상 합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언
 -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범기준에 대해 파악하고 조언
 - 다양한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정책개발과정에 대해 공동으로 전략적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작업이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미흡한 부분들을 해소
 - 공동감시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시스템적으로 가장 중요한 다국적 금융회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공동감시단의 설립 및 그 기능, 공동감시단에 대한 참여 등을 지원
 - 국경간 위기관리,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다국적 회사와 관련된 위기관리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을 지원
 - IMF와 협조하여 조기경보활동을 실시하고, 거시경제와 금융부문의 위험 축적

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파악하여 IMFC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

- FSB 회원국은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부문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12개 주요 국제기준 및 행동강령을 포함한) 국제 금융기준 등을 도입할 것임. 또한 FSB 회원국은 IMF·세계은행을 통한 FSAP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상호 점검·평가를 실시하는데 합의함. FSB는 이와 관련된 회원국들의 이행과 평가절차를 자세히 보고할 예정임
- 우리는 FSB와 IMF가 공조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역할과 임무를 보완하기로 한 것을 환영함

2. 국제협력

- 우리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함
 - 기존의 28개 공동감시단에 더하여 나머지 중요한 다국적 회사에 대한 공동감시단을 금년 6월까지 설립
 - 국경간 위기관리를 위한 FSF 원칙을 조속히 실시하고, 주요 다국적 금융회사를 담당하는 본국 감독당국은 해당 은행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는 각국 당국들과 최소 일 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
 - 다국적 금융회사의 정리절차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IMF, FSB, 세계은행, BCBS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
 - 원상회복전략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합의
 - IMF와 FSB는 2009년 봄 회의시 조기경보활동을 함께 시작

3. 건전성 규제

- 우리는 건전성 규제를 위한 국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함
 - 경기회복이 확실시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의 최소자본요구량에 대한 국제기준을 현재와 같이 유지
 - 적절한 경우 최소자본요구량을 상회하는 완충자본이 경기하강기에 축소될 수

있도록 허용

- 경기회복이 확실해진 후 건전성 규제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최소자본요구량을 상회하는 완충자본이 증가되어야 하며, 자본의 질이 강화되어야 함. 자본의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2009년말까지 제시되어야 함. BCBS는 최소자본수준을 검토하고 2010년에 권고안을 제시할 필요
- FSB, BCBS 및 CGFS는 회계기준 제정기관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2009년말까지 금융회사가 경기침체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호황기에 완충자본적립을 요구하는 등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오늘 공표된 제안을 이행할 필요
- 위험가중자본 규제는 단순하고, 투명하며, 위험에 기반하지 않은 수단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동 수단은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고 부외거래 익스포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편, 은행시스템에 레버리지의 축적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함
- BCBS와 당국들은 2010년까지 증권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할 유인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실사 및 증권화 관련 위험을 재무제표에 유보하는 방안을 포함
- 모든 G20 회원국은 바젤II 자본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함
- BCBS 및 각국 당국은 2010년까지 다국적 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완충장치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합의할 필요

4. 규제의 범위

-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이 적절한 수준의 규제·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의견 일치를 이루었으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함
 - 우리는 당국이 제도권 은행, 그림자 은행, 사모펀드 등에 걸쳐 금융시스템상의 거시건전성 위험을 식별하고 고려하여 시스템 위험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개선할 것임. 우리는 FSB가 BIS 등 다른 국제기준 제정기구들과 함께 거시건전성 수단을 개발하고, 2009년 가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크고 복잡한 금융회사는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감독이 필요함

- 우리는 각국 규제당국이 모든 중요한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파산 또는 심각한 시장충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조치는 국가간 일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질 것임
- 규제차익의 방지를 위하여, IMF와 FSB는 각국 당국이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의 시스템적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다음 재무장관회의때까지 제출할 것임. 동 지침은 금융회사의 법적 형태보다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헤지펀드 또는 헤지펀드 운영자는 감독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헤지펀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레버리지 등의 적절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감독당국과 규제당국에 공개해야 함. 필요한 경우,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할 수 있음. 헤지펀드의 적절한 위험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헤지펀드를 감독 대상에 포함. FSB는 헤지펀드의 법적관할지역이 운용인력 소재지역과 다를 경우 헤지펀드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감독을 위해 관련 당국간 협력 및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
- 우리는 FSB를 통해 협력하여 2009년말까지 동 원칙의 이행방안을 개발해야 하며, FSB는 차기 재무장관회의에서 동 방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함
-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이 헤지펀드인 경우 금융회사에게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요구해야 하며, 동 위험 관리에는 헤지펀드의 레버리지를 모니터링하고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여야 함
- 우리는 효과적으로 규제·감독이 이루어지는 중앙청산소의 설립을 통해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활력을 제고할 것임. 우리는 관련업계에 표준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2009년 가을까지 개발할 것을 요구함
- 우리는 향후 금융시스템의 변화에 발맞추어 규제체계의 범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시키는 한편, 국제적으로 일관된 접근과 모범사례의 도입을 촉진할 것임

5. 보상체계

- 우리는 금융회사의 장기 목적과 신중한 위험 부담에 부합하는 주요한 금융회사의 보수·보상체계와 관련하여 FSF가 마련한 원칙을 채택함. 우리는 각국 감독당국이 2009년 가을까지 이러한 원칙을 도입하는데 중요한 진전이 있도록 하는데 합의함. BCBS는 2009년 가을까지 이러한 원칙들을 BCBS가 마련하는 위험관리 지침에 반영하여야 함. 오늘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함
 - 금융회사들의 이사회는 보상체계의 수립, 운영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보너스를 포함한 보상체계는 위험을 적절히 반영해야 하고, 위험의 보유만기에 민감한 지급시기와 구성을 반영해야 함. 위험이 장기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 단기에 보수지급이 종료되어서는 안됨
 - 금융회사는 보상체계에 대한 분명하고 포괄적이며 시의적절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상정책에 관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함
- 감독당국들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종합적인 건전성 평가의 일부로서 보상정책을 평가해야 함. 감독당국은 필요시 자본요구 증대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처방안을 요구하는 등 개입하여야 함

6. 조세피난처 및 비협조적인 지역

- 비협조적인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여 국가재정 및 국제기준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는 모든 관할지역이 건전성, 조세 및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차단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실히 따를 것을 요청함.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적절한 기관이 FSAP 과정을 포함한 기존 과정들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상호점검·평가를 수행하고 강화할 것을 요청함
- 우리는 모든 국가가 2004년 G20 국가에 의해 승인되고 UN Model Tax Convention에 반영된 정보교류에 대한 국제기준을 채택할 것을 요청함. 우리는 오늘 OECD가 글로벌 포럼의 평가를 통해 발표한 정보교류에 관한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의 명단을 주목함. 우리는 새롭게 이행을 약속한 여러 국가들을 환영하고

이들의 신속한 이행을 장려함. 우리는 조세투명성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합의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 이를 위하여 우리는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개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음

- 납세자 및 금융회사의 비협조적인 지역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 다양한 지급방식에 대해 원천징수세 부과
 - 비협조지역에 거주하는 수취인을 대상으로 한 비용지급에 대한 공제거부
 - 조세조약 정책에 대한 재검토
 - 국제기구 및 지역 개발은행에 투자정책 재검토를 요청
 - 양자간 원조 프로그램 수립시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의 원칙을 특별히 강조
- 우리는 이와 같은 지역과의 금융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개도국이 새로운 협조적인 조세환경의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2009년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임
 - 우리는 또한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와 감독기준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음. IMF와 FSB는 국제기준 제정기구와의 협력 하에 기준에 FSAP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지역에 대한 이행평가를 제공할 것임. 우리는 FSB가 건전성 기준 충족 및 지역과의 공조를 촉진하는 정책수단들을 개발할 것을 요구함
 - 우리는 FATF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합의된 평가보고서를 사용하여 각 지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차단 기준 준수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검토절차를 수정·강화해야 한다는데 합의함
 - 우리는 FSB와 FATF가 각 국가별 동 기준의 채택과 이행여부를 차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함

7. 회계기준

- 우리는 공정가치 회계체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이 2009년 말까지 유동성과 투자자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준을 향상시키는데 합의함. 우리는 회계이슈 관련 경기순응성에 대한 FSF의 권고를 환영함. 우리는 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이 2009년말까지 다음과 같은 추가적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함

-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의 복잡성을 감소
- 보다 폭넓은 신용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적 인식을 강화
- 충당금, 부외거래 익스포져 및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회계기준을 개선
- 각국 감독당국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평가기준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확보
- 높은 수준의 단일 회계기준 정립을 위하여 상당한 진전을 달성
- ISAB의 정관 검토를 통해 독립적인 회계기준 결정과정에 있어 건전성 감독 당국 및 신흥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대

8. 신용평가사

- 우리는 주요한 시장참여자인 신용평가사들의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감독에 합의함.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 합의함
 - 신용평가등급을 규제목적으로 사용하는 신용평가사는 등록을 포함한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함. 규제감독체계가 2009년말까지 마련되어야 하고, IOSCO의 행동강령에 부합해야 함. IOSCO는 완전한 이행을 조율해야 함
 - 각국 당국들은 이해상충 관리 및 신용평가절차의 투명성 및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변화를 요구하고, 이행을 강행해야 함. 특히, 신용평가사는 구조화 상품의 경우 신용등급을 차별화해야 하며 신용평가관련 과거자료 (track record) 및 신용평가과정의 기반이 되는 정보와 가정을 완전히 공시해야 함. 전반적인 감독체계는 관할지역을 넘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각국 당국간 적절한 정보공유가 필요함
 - BCBS는 건전성 규제에 있어 외부신용평가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부정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9. 향후계획

- 우리는 G20 국가 재무장관들에게 상기 결정의 집행과 첨부된 행동계획의 완수를 지시함. 우리는 FSB 및 IMF가 FATF와 글로벌 포럼과의 공조하에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차기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 부속서 2 :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자금지원

G20 정상들은 신흥시장과 개도국 경제를 보호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흥시장 및 개도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지속시킬 것을 확인함. 이를 위해 G20 정상들은 IFI의 가용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각 기구들이 위기대응을 위해 공조하여 포괄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용자제도를 마련하도록 합의함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MF와 MDB를 통해 경기대응지출, 은행자본 확충, 인프라, 무역금융, 국제수지 지원, 채무 상환연장, 사회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8,500억 달러를 확보하는데 합의함

IMF와 관련, 우리는 다음을 지지하기로 합의함.

- 즉각적 조치로서 2,500억 달러의 재원을 회원국으로부터 양자간 조달함
- 단기적으로, 회원국들로부터 즉각적으로 조달된 자금을, 참여국의 범위가 여타 G20 국가를 포함하고, 규모도 5,000억 달러까지 증대된, 확대되고 보다 탄력적인 NAB에 통합하며, 춘계회의시까지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 IMF가 수요충족을 위해 필요한 수준까지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시 다른 용자재원과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부터의 차입을 검토
- IMF의 저소득국가에 대한 양허성(concessional) 용자재원을 2배로 확충하고, 채무적정성평가체계 범위에서 용자한도를 2배로 확대함. IMF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감안하면서 금판매 수입을 향후 2~3년간 60억 달러의 추가적인 양허성 용자재원 및 탄력적인 자금조달에 활용할 것임. IMF가 구체적인 방안을 춘계회의시까지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이러한 조치에 더하여 국제 유동성 공급을 위해 2,500억 달러 상당의 SDR 일반배분을 지지하는 것에 동의함. 그 중 1,100억 달러는 신흥시장과 개도국에 직접 배분될 것임. IMF 협정문 4차 개정안도 조속히 비준할 것에 동의함

국제금융체계의 수요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수준의 IMF 자원 마련을 위해 차기 출자지분(Quota) 검토를 2011년 1월까지 조기완료할 것에 동의함

MDB와 관련, 우리는 다음 사항을 지지하기로 합의함

- 저소득국가에 대한 용자를 포함하여 용자규모를 1,000억 달러 증액시켜 향후 3년간 약 3,000억 달러 증액
- 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가 용자능력을 창출하기 위해 MDB의 대차대조표를

최대한 그리고 예외적으로 활용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 ADB)의 200% 일반증자 및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IaDB)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 AfDB)⁵¹⁾,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of Recovery Development : EBRD)의 증자 필요성 검토
- 민간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guarantee), 보증보험(bond-insurance), 가교금융(bridge finance) 등 MDB들의 조치
- 민간부문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와 더불어 향후 3년간 무역유동성 지원에 최대 500억 달러를 제공하는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IFC)의 새로운 세계무역유동성풀(GTLP)⁵²⁾(향후 2년간 최소 2,500억 달러의 무역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IFC Pool에 30~40억 달러를 자발적으로 양자 기부하는데 합의. 여타 MDB들의 무역금융에 대한 지원 증대 조치 및 수출 신용·투자기관을 통한 중장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환영

우리는 IFI가 당면 위기에 대응하고, 신흥시장 및 개도국 수요충족에 필요한 용자제도 마련에 동의함. 이를 위해,

- IMF의 개선되고 보다 탄력적인 용자 및 용자조건 체계의 일부인, 적격 국가들을 위한 IMF의 새로운 FCL를 환영함. 동 제도는 IMF 용자재원의 고갈을 예방하면서 낙인효과(stigma concerns)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임. FCL의 조속한 활용을 기대하며, FCL 이용을 신청한 멕시코의 결정을 지지함
- IMF는 은행 및 기업부문에 대한 해외차입자금의 회수와 같은 각국의 국제수지상 자금조달수요의 근본원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시활동 및 용자제도를 마련해야 함
- 자발적인 양자 기부를 통해 인프라 위기 지원기금 및 긴급사회지원기금 등을 포함하는 세계은행의 취약국지원 프레임워크를 지지
- 세계은행의 국가별 대출한도는 대국(large countries)이 자신의 경제회복과 안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소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함
- 안정적인 부채상환능력과 건전한 정책을 가진 저소득 IDA 국가⁵³⁾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에의 접근성을 상실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BRD)의 비양허성 자금이 제공되어야

51)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개발펀드(African Development Fund : ADF) 및 나이저리아 트러스트펀드(Nigeria Trust Fund : NTF)의 복합체

52) 최대 270일 무역거래에 대한 유동성 지원

53) 1인당 GNI(2007년)가 1,095 달러 이하이고 신용도가 낮아 IBRD 차입능력이 되지 않는 국가

함. 채무적정성평가체계내 기존 유연성을 활용하면서,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IDA) 재원은 선지급되어야 함

우리는 이러한 자원과 용자제도들이 IFI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IFI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IFI간 협력과 조정이 강화되어야 함. 저소득국가를 포함하여 신흥국과 개도국 경제는 보다 많은 의결권 및 대표성을 가져야 함

다. 피츠버그 정상회의

☒ 서 문

- (1) 우리는 무책임의 시대(an era of irresponsibility)를 마감하고 21세기 세계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규제, 개혁을 채택하여 위기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려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음
- (2) 우리는 지난 4월에 만났을 때 우리 세대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였음
- (3) 세계 생산량은 193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었고 무역은 급감했으며 일자리도 급격히 감소했음. 각국 국민들은 세계가 공황에 접어들었다고 우려하였음
- (4) 그 당시 각국은 경제를 회복하고 금융시스템의 부실을 해소하며 국제 자본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데 합의하였음
- (5) 이런 노력들은 효과가 있었음
- (6) 이러한 강력한 대응책을 통해 세계 경제활동이 위험한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고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켰음. 산업 생산량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고 국제 무역은 회복되기 시작했음. 금융회사들은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와 융자 제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신뢰가 개선되었음
- (7) 오늘 우리는 지난 4월 런던 정상회의 이후 이룬 진전사항을 검토했음. 성장을 회복하겠다는 국가적인 의지를 통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을 마련했음. 우리는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재원을 대폭 증가시켰음. 붕괴된 규제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금융부문의 과잉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다시 불안정해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하였음
- (8)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안이해져서는 안 됨
- (9) 회복 및 재건 프로세스가 아직 완전하지 않음. 많은 나라에서 실업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민간 수요 회복을 위한 여건도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 세계경제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근면한 세계 시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쉽 없이 노력해야 함
- (10) 우리는 오늘 회복이 견고하고 확실해질 때까지 강력한 정책대응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약속함. 우리는 성장회복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임. 성급하게 부양책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시점이 오면 협력과 공조를 통해

- 예외적인 정책지원을 철회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
- (11) 현재 회복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 있는 21세기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약속함. 최근의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인들이 위기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 우리는 과도한 경기변동이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무분별함이 아닌 책임성을 증진하기를 원함
 - (12) 오늘 우리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음
 - (13)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 및 공동협력방안에 대한 체계를 마련 :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회복이 필요함
 - (14) 우리는 수요의 공급처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패턴을 구축해야 하며, 개발 불균형을 줄여야 함. 우리는 자산과 신용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과도한 경기변동을 피할 것이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세계 수요를 안정적이고 적절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채택을 약속함. 우리는 또한 민간수요를 촉진하고 장기 성장잠재력을 강화시키는 구조 개혁에 있어 확실한 진전을 이룰 것임
 - (15)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체계는 우리의 정책들이 서로 조화가 되는지, 또는 이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수요와 공급, 준비금, 부채, 신용, 국제수지라는 목표에 일치되는지 평가하고,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협약임
 - (16) 은행 및 금융회사의 규제체계를 통해 위기를 촉발했던 과도한 위험부담을 통제 : 무분별한 행동과 책임감 결여 등 은행들이 위기를 가져왔던 이전의 영업 행태로(banking as usual)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임
 - (17) 우리는 협력을 통해 자본 기준(capital standards)을 높이고, 과도한 위험부담을 발생시켰던 행위를 방지하는 강력한 국제 보상기준을 이행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선하며, 거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자신들이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도구를 마련해야 함. 거대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기준은 실패 비용에 상응해야 함. 이러한 모든 개혁에 대하여 우리는 자체적으로 엄격하고 명확한 계획을 설정했음
 - (18) 21세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글로벌 체제(global architecture)를 개혁 : 금번 위기가 끝나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 핵심주체들이 국제기구 등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우리는 G20을 가장 중요한 국제경제협력체로 지정했음. 우리는 주요 신흥국을 회원국으로 포함하는 FSB를 설립하였으며, 금융규제 강화에 있어서의 진전사항을 조정하고 감독하려는 FSB의 노력을 환영함
- (20) 우리는 현재의 출자지분 공식을 이용하여 과대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신흥국 및 개도국)으로 5% 이상의 출자지분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우리는 세계은행에서 과소대표국 및 체제전환국가들의 투표권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동의하였음. 우리는 오늘 새로워지고 확장된 IMF의 NAB에 5,000억 달러를 공헌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였음
- (21) 우리는 각국의 경제적 비중과 세계은행의 개발 임무를 반영하고, 적어도 3%의 투표권을 개도국에 제공하여 과소대표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공식이 세계은행에 적용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우리는 세계은행이 기후변화나 식량안보와 같이 전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함. 세계은행과 지역적 개발은행들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
- (22) 세계의 빈곤인구가 식량, 연료 및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를 실시 :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은 강력한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음
- (23) 전세계의 40억이 넘는 인구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며, 세계경제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우리는 개도국 및 신흥국의 삶의 질이나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먼저, 우리는 세계은행이 저소득국가의 새로운 식량안보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여름에 발표했던 새로운 신탁기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우리는 확대재생에너지프로그램(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과 같이 빈곤층에게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발적인 차원에서 자금지원을 늘릴 것임
- (24)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주기적으로 폐지하거나 효율화시키면서 빈곤층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지원 :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은 불필요한 낭비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해결 노력을 약화시킴
- (25) 우리는 에너지장관 및 재무장관들이 다음 회의에서 이러한 중요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이행전략과 이행시기를 보고할 것을 촉구함
- (26) 우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임

- (27) 개방성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
- (28) 우리는 보호주의를 타파할 것이며 2010년에 성공적으로 DDA 협상을 마무리할 것임
- (29) 우리는 UN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 협상을 통해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30) 우리는 지난 런던 정상회의에서 작성을 위임 받아 동 정상회의 의장(브라운 총리)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환영함
- (31) 마지막으로, 우리는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그리고 2010년 11월 한국에서 만나는 것에 동의하였음. 그 이후에는 매년 만날 것을 기대하며,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만날 것임

☒ 본 문

- (1) 우리는 글로벌 위기 대응 과정에서 그간 이뤄온 진전을 평가하고,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경제활동 지원 조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음. 더 나아가, 우리는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 달성, 국제 금융시스템 강화, 개발 불균형 감소, 국제경제 협력체제 현대화(선진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결의했음

☒ 지속가능한 성장체제

- (2)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금번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성공적인 공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 단기적으로, 우리는 경기회복이 확실치 자리 잡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시행을 반드시 지속해야 함. 또한, 우리의 비일상적 재정·통화·금융부문 지원 철회를 위한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프로세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행은 경제회복이 완전히 공고화되었을 때 이뤄져야 함. 우리는 재무장관들이 IMF, FSB와 함께 11월 재무장관회의에서 협력 및 공조하에 시행될 출구전략 개발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며, 그 과정에서 출구전략 시행 규모, 시기, 순서는 국가, 지역, 정책 조치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을 인식해야 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시장에 잘 전달해야 함
- (3) IMF는 세계경제의 성장이 올해 재개되어 2010년말까지 약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우리의 목표는 재정 책임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세계경제의 고성장을 회복하는 것임. 이에 성장잠재력 및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개혁을 시행하고, 자산 버블 및 지속불가능한 글로벌 금융 흐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임.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조치를 시행할 것을 결의함

- (4) 우리는 보다 균형잡힌 글로벌 성장 패턴으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 금번 위기와 초기 대응책으로 인해 이미 각국의 성장 패턴 및 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음. 여러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활동 촉진 및 불균형 감소를 위한 내수 부양책을 이미 실시중임. 일부 국가들에서는 공공 저축 증대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민간 저축 증가를 강화해야 할 것임. 견조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의 각 부문에 걸친 조정이 필요할 것임. 민간 내수 촉진, 세계 개발격차 감소, 장기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에 있어서 과감한 진전이 필요하며, 적절하고 균형잡힌 세계 수요를 증진하는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함. IMF는 이러한 조정 및 재조율이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세계성장 패턴 달성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각국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인식 공유 및 대화 심화가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패턴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생활수준 제고는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성장 달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함
- (5) 우리는 오늘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 체제를 출범시키고 있음. 이 체제의 실행을 위해서, 우리는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제시, 진전 상황 평가를 포함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기로 결의함. 우리는 국가별 또는 지역별 정책 체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IMF의 분석 작업을 요청할 것임. 우리는 세계 성장 재균형 달성의 일환으로 개발 증진 및 빈곤 감축 부문의 진전 상황에 대한 세계은행의 자문을 요청함. 우리는 각국의 재정·통화·무역 및 구조적 정책이 전체적으로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 추이와 일치하도록 협력할 것임. 우리는 신용 및 자산 가격 주기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시건전성 및 규제 정책을 시행할 것임. 우리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이행을 결의하며, 경제정책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기 위한 측정 방법 개발작업을 독려해야 함
- (6) 우리는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총재들이 11월까지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각국 정책 체제 및 이들 체제가 세계 성장 패턴 및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 평가하는 협력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함. 우리는 정기적 협의, 거시경제정책 협력 강화, 구조적 정책 경험 교류 및 지속적인 평가가 건전한 정책의 채택을 증진하고 세계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함.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 G20 회원국들은 공동 정책 목표에 합의할 것이며, 상황 변화에 따라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정
 - G20 회원국들은 중기 정책 체제를 설정하고, 각국의 정책 체제가 세계 성장의 수준 및 패턴에 미치는 집합적 영향을 평가하고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
 - G20 회원국들은 상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 및 합의
- (7) 이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공평하며 균형잡힌 정책 분석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임. 우리는 상호 평가 프로세스에 있어서 IMF가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총재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함. IMF는 G20 각 회원국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세계경제의 추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분석을 개발하고, IMF의 기존 양자·다자 감시 분석과 더불어 세계경제 동향, 성장 패턴, 정책 조정 제안을 G20과 IMFC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함.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1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프로세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우리는 차기 정상회의에서 1차 상호평가 결과를 검토할 것임
- (8) 이들 정책을 통해 우리는 보다 회복력 있는 국제 금융시스템 구축 및 개발 불균형 감소에 대한 각국의 공동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임
- (9) 독일 메르켈 총리가 제안한 현장을 기반으로 우리는 추가적인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적정성, 통합성 및 투명성의 가치 등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s for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를 오늘 채택하였으며, 이는 오늘 출범한 프레임워크를 강화시켜 나갈 것임

☒ 국제 금융규제체계 강화

- (10) 금융 규제감독의 실패와 더불어 은행 및 기타 금융회사들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위험 부담행위가 위험한 금융 취약성을 초래했으며,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금융위기 발생 전 일부 국가에서 만연했던 과도한 위험 감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됨
- (11)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위기의 근본적 원인 극복 및 글로벌 금융규제 시스템 변화를 위한 신속한 개혁에 대한 집행을 시작하였음. 건전성 감독 강화, 위험 관리 개선, 투명성 강화, 시장신평성 제고, 공동감시단 설립, 국제협력 강화 등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증권화 시장, 신용평가사,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규제 및 감독의 범위를 향상시키고 확대하였음. 우리는 런던 정상 회의시 FSB를 설립하기로 한 이후 정관 마련을 통한 FSB의 제도적인 강화를 승인하며, FSB의 정상들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함. 우리는 FSB의 보고서 및 이러한 작업을 감독하는데 있어서의 FSB의 주된 역할을 환영함. 또한 진전사항 점검을 위한 FSB의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한 개혁 조치에 대한 충실하고 일관된 집행에 필요한 사항임. 우리는 FSB가 진전사항을 다음 정상회의에 앞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에게 보고하기를 요청함

- (12) 우리의 작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 잘못된 시장관행으로부터 소비자, 예금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높은 수준의 기준을 촉진하고, 현재 위기 규모의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우리는 각국 당국이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마련하고 시장의 분리, 보호주의,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기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기준 향상을 위한 조치에 합의하였음. 우리는 필요시 부실자산의 처리와 추가적인 자본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 우리는 건전하고 투명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합의함. 우리는 은행이 필요시 자본 확충을 위해 현재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보하고 대출을 지원할 것을 요청함. 증권화시 보증인 또는 발행자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 위험의 일부를 보유토록 하여, 그들이 신중하게 활동하도록 촉진해야 함. 추가하여, 우리는 상품 가격이 과도하게 변동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의 규제, 기능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합의함
- (13) 우리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의 회복을 촉진하고자 할 때 위기를 초래한 관행으로의 복귀를 촉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을 완전히 집행한다면 위기이전 보다 근본적으로 강한 금융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임. 우리가 함께 조치를 취한다면 금융회사들은 위험부담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장기성 과에 상응하는 지배구조를 갖게 될 것이며,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게 될 것임. 실패가 금융안정성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금융회사들은 높은 수준의 기준하에서 일관되고, 통합적인 감독·규제를 받아야 함. 우리의 개혁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핵심은 자본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함. 자본기준은 과도한 위험 부담 관행을 완화하는 분명한 인센티브에 의해 보완됨. 자본을 통해 은행은 피할 수 없는 손실에 대처할 수 있음. 정부의 실패한 금융회사 축소를 위한 각국의 강력한 수단과 더불어 자본기준 강화는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은행들이 책임을 갖게 함. 국제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Further Steps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에 추가하여 우리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이 다음의 중요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체계에 합의를 이루기를 요청함

- 높은 질의 자본 확충 및 경기순응성 완화 : 우리는 2010년말까지 은행 자본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향상시키는데 합의하며, 이러한 기준들은 2012년까지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금융 상황이 향상되고 경제회복이 확실시 되었을 때 실행될 것임. 유동성 위험 규제 및 미래 지향적 대손충당금제와 함께 바젤Ⅱ의 요소로서 보다 높은 수준 및 높은 질의 자본요구량,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위험한 금융상품과 부외거래활동에 대한 높은 자본부과를 각국이 집행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위험 부담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충격에 보다 잘 견딜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우리는 은행 부문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를 위해 BCBS의 감독기구가 최근 동의한 주요 조치를 환영함. 우리는 적절한 점검과 측정(calibration)에 기반하여 Pillar 1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바젤Ⅱ 위험 기반 체계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지함.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의 세부사항은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회계상의 차이를 완전히 조정하여야 함. 모든 주요한 G20의 금융센터들은 2011년까지 바젤Ⅱ의 자본규제체계를 채택하는데 합의함
- 금융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선 : 금융 부문에서의 과도한 보상정책이 과도한 위험 부담행위를 반영하고 촉진함. 보상정책과 관행의 개선은 금융안정을 증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중요한 부분임. 우리는 보상체계를 장기 가치 창출과 연계되도록 하고 과도한 위험 부담행위를 억제하는데 목적을 둔 다음과 같은 FSB의 권고안을 완전히 채택함. (i) 다년간 보장된 상여금 회피, (ii) 장기 가치 창출과 위험 보유기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도록 변동보상(variable compensation)의 상당부분을 지급연기하고, 성과에 상응토록 하며, 적정하게 환수되도록 하는 한편, 적정한 기간동안 보유되어야 하는 주식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 (iii) 고위임원과 위험을 창출하는 직원들의 보상은 성과 및 위험과 합치, (iv) 금융회사의 보상정책과 보상구조의 공시, (v) 건전한 자본기준 유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변동보상을 총순수입의 일정비율로 제한, (vi) 보상위원회가 보상정책을 독립적으로 감독. 감독당국은 시스템위험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보상정책과 보상구조를 점검할 책임을 가져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위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전한 보상정책과 보상관행의 집행에 실패한 금융회사에 대해 높은 자본부과 등 교정조치(corrective measures)를 적용할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함. 감독당국은 실패하거나 예외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정책과 구조를 변경할 수 능력을 가져야 함. 우리는 금융회사들에게 이러한 건전한 보상관행을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함. 우리는 FSB에 이러한 기준의 집행을 점검하고, 2010년 3월까지 필요한 추가조치를 제안하는 임무를 부여함

-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선 :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적절한 경우 거래소나 전자 거래망을 통해서 거래되어야 하고 적어도 2012년말까지는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어야 함.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되어야 함. 중앙 청산되지 않을 경우 높은 수준의 자본요구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우리는 FSB와 관련 회원기구들에게 정기적으로 집행상황과 이러한 조치가 파생시장에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스템위험을 완화하며, 시장에서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을 요청함
 - 2010년말까지 국경간 정리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 관련 문제 해결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는 국제적으로 일관된 회사별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함. 우리 정책 당국은 주요 다국적 금융회사에 대한 위기관리그룹 및 위기관리를 위한 법적 책임 체계를 마련하고 위기 시 정보공유를 개선해야 함. 우리는 향후 금융회사 파산에 따른 시장교란을 축소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수단 및 체계를 수립해야 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우리의 건전성 기준은 이들의 실패 비용에 상응하도록 할 것임. FSB는 2010년 10월까지 추가적으로 보다 강한 감독과 특별한 추가적인 자본, 유동성, 기타 건전성 규제 등의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함
- (14) 우리는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이 독립적인 기준제정 절차를 통해 수준 높은 단일 국제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2011년 6월까지 단일 회계기준 수립작업을 완료할 것을 요청함.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제도적 체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다 증대시켜야 함
- (15) 비협조지역에 대한 우리의 협의로 인해 괄목한 만한 성과가 나왔음. 우리는 조세피난처, 자금세탁, 부패 수익금, 테러자금조달 및 건전성 기준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투명성 및 정보교환 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이 개발도상국가의 참여확대 등 회원국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상호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함. 글로벌포럼의 작업은 각국이 과세기반을 보호하는 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임. 우리는 2010년 3월부터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에 대한 대응

과 관련한 그간의 FATF의 진전을 환영하며, FATF에 2010년 2월까지 위험이 높은 지역의 리스트를 발표할 것을 요청함. 우리는 FSB에 2009년 11월까지 국제협력 및 정보 교환관련 비협조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진전사항을 보고하고, 2010년 2월까지 상호평가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함

- (16) 우리는 IMF가 다음 회의를 위해 금융부문이 더 공정하고, 회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지시함

☒ IMF 개혁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반영한 국제기구 개편

- (17) 국제금융기구 및 세계 개발구조의 개편은 글로벌 금융안정성, 지속가능 개발, 최빈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 필수적임.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대응성과 적응성에 대한 영국 브라운 총리의 검토 보고서를 환영하며, 재무장관들이 그의 제안을 고려해보길 요청함

☒ IMF의 임무, 역할, 지배구조 개혁

- (18) IMF의 가용자금 증대에 대한 협약은 위기가 신흥 개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음. 이러한 협약과 증가된 자금을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지원수단 마련 등 IMF의 혁신적인 조치는 글로벌 위험을 감소시킴. 자본은 다시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음
- (19) 우리는 IMF 재원을 3배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음. 회원국들은 새로운 NAB에 5,000억 달러 참여를 공약함. IMF는 총 2,830억 달러의 SDR 배분을 완료했으며, 이중 1,000억 달러 이상이 신흥개도국의 준비자산을 보충할 것임. 새로운 수입모델에 따른 IMF의 합의된 금판매수입 등은 IMF의 중기 양허성 용자제공능력을 두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임
- (20) 위기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대응은 국제적 협력의 이점과 보다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IMF의 필요성을 강조함. IMF는 세계금융 안정성과 균형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우리는 FCL 도입 등 IMF의 용자제도 개편을 환영함. 회원국들이 금융변동성에 대처하고, 갑작스러운 자본흐름의 변동으로부터의 경제적 혼란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준비금 축적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IMF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함. 회복이 확실해짐에 따라, IMF는 국제금융시스템 및 세계

경제가 처한 위험에 대한 공정하고, 솔직하며 독립적인 감시를 할 능력을 강화해야 함. 우리는 IMF가 각국의 정책과 그 정책이 집합적으로 금융안정성과 세계성장의 수준 및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를 요청함

- (21) IMF의 지배구조 현대화는 IMF의 정당성, 신뢰성(credibility),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우리의 노력의 핵심 요소임. 우리는 IMF가 출자지분을 바탕으로 한 조직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출자지분 배분은 회원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함. 이는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강한 성장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 IMF 출자지분 공식을 활용하여,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의 최소 5%의 출자지분이 신흥시장과 개도국으로 이동되어야 하는 것에 합의함. 우리는 또한 IMF 내에서 최빈국의 투표권 비중을 보호하기를 합의함. 이러한 기반 및 2011년 1월까지 이행해야 하는 IMF의 출자지분 검토의 일부로서, 우리는 이러한 검토가 성공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작업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함. 출자지분 검토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함. 출자지분 비중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IMF 출자지분 증액규모, 이사회 구성 및 규모, 이사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IMF의 전략적 감시에 있어서의 거버너 참여 등이 그러한 이슈들임. 직원다양성이 제고되어야 함. 포괄적인 개혁 패키지의 일부로서, 우리는 모든 국제기구의 총재 및 임원을 공개, 투명, 능력에 기반하여 선출하는 절차를 통해 지명하는 것에 합의함. 우리는 2008년 4월에 합의된 IMF 출자지분 개혁안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함

☒ MDB 개혁

- (22) MDB는 금융위기가 세계의 극빈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출을 확대, 가속화해야 한다는 우리의 4월 요구에 개편된 제도 및 새로운 수단, 빠른 대출 확대로 대응하였음. MDB는 약속대로 1,000억 달러의 추가 대출을 순조롭게 이행중임. 우리는 MDB가 그들의 재무제표를 완전히 활용하기를 장려하고 환영함. 우리는 또한 IaDB에서 실시되었던 것과 같이 특정국가로부터의 요구불 자본의 임시적인 사용과 같은 추가적인 수단도 환영함. 우리 재무장관들은 일시적인 요구불 및 조건부 자본이 위기시 MDB의 대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에 대해 고려해야 함. MDB와 IDA와 AfDF와 같은 양허성 용자기구에 적절하게 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

- 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함
- (23) 우리는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세계의 장기적인 과제들에 대응할 개발구조를 강화하고 개혁해야 함
- (24) 우리는 개발 및 세계 빈곤 퇴치가 개발은행의 중심 임무임에 동의함. 세계은행과 다른 다자개발은행들이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와 같은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한 과제들을 다루는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세계은행은 지역개발은행 및 국제적인 조직과 함께
- 관계 특성화된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식량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야 함
 - 최빈국과 어려운 환경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안보 문제를 다루어야 함
 - 최빈국의 기회 확대, 사회적·경제적 통합 및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주도 성장 및 인프라를 지원해야 함
 -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개발 및 사용, 에너지 효율성제고, 기후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녹색경제로의 이전을 위한 자금조달에 기여해야 함. 이는 개발전략 및 개선된 국내정책에 기후변화 문제를 편입하고 새로운 기후 금융 자원에 접근하려는 나라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함
- (25)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계은행과 다른 다자개발은행은 필요시 다른 양자 및 다자기구들과 협력해야 함. 또한 전략 및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수원국의 ownership을 강화하고 수원국에 적절한 정책여지를 주어야 함
- (26) 우리는 MDB들이 네 가지 과제와 그들의 개발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2010년 상반기에 완료될 일반자본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충분한 재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임. 그러나 추가적인 재원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업과 협동,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혁신능력과 민주적 결과 도출 능력의 확대, 최빈국의 수요와 같은 주요 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 함
- (27) 우리는 세계은행이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정당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투표권 개혁과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기능적 효율성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세계은행이 국가의 경제적 비중과 세계은행의 개발 의무를 반영한 동태적인 지분공식을 적용함으로써 균등한 투표권으로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함. 이는 1단계 개혁에서 1.46% 증가한 것에 추가하여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 및 전환국으로의 상당한(최소 3% 이상)의 투표권 증가를 가져올 것임. 최빈국의 의결권 보호도 중요할 것임. 우리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2010년 봄 회의시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함

☒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28)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고 여유 있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접근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함. 비효율적인 시장과 과도한 가격변동성은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세계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에너지 생산·소비·운송국들의 공동 관심을 인식한 바 있는 「세계 에너지안보에 대한 페테르스부르크 원칙」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개별적·집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함

- 2010년 1월부터 원유 생산·소비·정제·제고 수준에 대한 완벽하고 정확하면서도 적시의 정보를 정기적(이상적으로는 월 단위가 적절)으로 공표함으로써 원유시장 투명성과 시장 안정성을 제고함. 우리는 국제에너지포럼(International Energy Forum : IEF)이 관리하는 원유정보 공동이니셔티브(Joint Oil Data Initiative : JODI)를 주목하며, 천연가스로 정보 수집을 확장하기 위해 조사하려는 JODI의 노력을 환영함. 우리는 에너지 자료 수집 및 에너지 수요·공급 예측 개선을 위한 국내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며,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EA)와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OPEC)가 이러한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관심 있는 국가에 대해 지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함. 우리는 수요·공급 추세, 가격 변동성 등을 포함하여 시장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생산자·소비자간 대화를 강화시킬 것이며, IEA 그룹의 활동에 주목할 것임
- 상품선물시장에 대한 IOSCO의 권고를 이행하고, 관련 규제당국이 국내 상품선물시장에서 원유에 대한 거래자 포지션의 대규모 집중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에 대한 규제실수를 개선함. 우리는 관련 규제당국들이 이행 진전사항을 차기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우리는 관련 규제당국들이 역외 원유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과도한 가격변동을 초래하는 시장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도 요구할 것임. 우리는 가능하다면 국제적으로 조정된 더 자세하고 세분화된 자료의 공표 등을 통해 상품시장 정보가 더 정교해지고 개선될 것을 요구함. 우리는 IOSCO가 이러한 정책을 각국 정부가 수립·집행하는데 지원할 것과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권고조치를 하고,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함

(29)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중요

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며,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노력을 감소시킴. OECD와 IEA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할 경우 205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음. 많은 국가들이 가장 가난한 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면서도 화석연료 보조금을 감축시켜왔음. 이러한 노력에 기초하고, 에너지 빈곤으로부터 고통 받는 인구의 도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함

- 과소비를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적절한 기간 동안 합리화시키고 단계적으로 철폐시킴.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한적인 현금 양도 및 여타 적절한 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필수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는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함. 이러한 개혁은 청정·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 우리는 에너지장관 및 재무장관들이 각국별 국내 상황에 기초하여 이행전략과 시간표를 발전시키고, 차기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임. 우리는 국제금융기구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전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보조금들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려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함
- (30) 우리는 IEA, OPEC, OECD 및 세계은행 등 관련 기구들이 에너지 보조금의 범위 분석과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한 제안을 제공하고, 차기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31)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대화 촉진은 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및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임. 경제적으로 건전한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채택 가속화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한 조치는 에너지 공급선을 다양화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킴.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합의함
-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개도국에서의 그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 합동연구 및 역량 축적 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기술의 유포 또는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들을 취함. 이 분야에서의 무역 및 투자 장벽 축소 내지 철폐는 논의되고 있으며, 자발성에 기반하고 적절한 토론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 (32) 세계 주요국 정상들로서 우리는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중임. 우리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함. 우리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포함한 UN기후변화협약의 목적, 조항 및 원칙을 재확인함. 우리는 이탈리아 라퀼라 주요국포럼(MEF)에서 정상들이 승인한 원칙들을 유념함. 우리는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UN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코펜하겐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 포괄적인 합의는 감축, 적응, 기술 및 재원을 포함해야 함

- (33) 우리는 재무장관들의 작업을 환영하고 코펜하겐 UN기후변화협약 협상시 고려되도록 재무장관들이 기후변화 재원을 위해 선택가능한 옵션을 차기 재무장관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지시함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34) 많은 신흥개도국들의 경제가 선진국의 생산성과 생활수준으로 수렴함에 따라, 생활수준 향상에 큰 걸음을 내딛어 옴. 이러한 과정은 위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임. 최빈국은 위기, 특히 식량가격 급등에 뒤이어 온 금융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경제적 완충제(cushion)가 거의 없음. 우리는 글로벌 위기가 저소득 국가의 보건, 교육, 안전망 및 인프라 등 주요한 지출 분야에 미치는 역효과에 대해 관심을 주목함. UN의 '글로벌 영향과 취약계층 경보시스템'은 위기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의 모니터링 노력을 도와줄 것임. 우리는 위기의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고, 모든 분야가 회복에 참여하는 공동의 책임을 공유함
- (35) 다자개발은행은 빈곤을 퇴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는 저소득 국가가 극빈층의 위기에 대한 완충장치를 만들기 위한 신속하고 추가적인 양허성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기시 대출 확대를 환영하며, 취약한 국가로의 양허성 자금 축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을 지지함. IMF는 새로운 수입모델에 따라, 위기동안 저소득 국가에 대한 양허성 대출을 역시 확대함. IMF의 금 판매로 인한 재원과 내외부의 자금은 IMF의 중기적인 양허성 용자능력을 두 배로 증가시킴
- (36) 몇몇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개별국의 상황에 맞게 SDR을 최빈국에 대한 IMF의 지원수단에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우리가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나, 우리는 동시에 세계의 장기적인 과제에 대응하는 개발기구를 개혁하고 강화해야 함. 우리는 관계 장관들이 미래의 위기로부터 저소득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IDA내의 새로운 위기대응 수단의 이점을 검토하고, 보증 확대를 포함하여, 위기시 중간소득 국가들의 투자계획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수단의 사용을 검토하기를 요청함

- (37) 우리는 무역을 위한 원조, 부채탕감, 글레이글스에서 합의한 협약 등 역사적인 새천년 개발목표(MDG)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함
- (38) 위기 이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가난으로 고통받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와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했음. 위기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식량(food), 연료(fuel), 금융(finance)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을 공약함
- (39) 지속적인 자금지원과 목표에 맞는 투자가 장기적인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 긴급히 요구됨. 우리는 라켈라에서 선언된 식량안보에 관한 이니셔티브와 ‘세계 농업 및 식량안보를 위한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노력 및 과도한 가격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환영함. 우리는 세계은행이 관심있는 기부자와 기구들과 협력하여, 저소득 국가에 대한 농업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자 신탁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구함. 이 기금은 ‘포괄적인 아프리카 농업개발 프로그램(Comprehensive Africa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등 세계적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혁신적인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지원할 것임. 이 기금은 아크라에서 합의된 원조 효과성에 대한 원칙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원국 주도, 기금의 신속한 배분을 보장하고, 민간재단, 기업, NGO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러한 노력들은 UN의 ‘농업에 대한 포괄적 종합프레임워크(Comprehensive Framework for Agriculture)’를 보완해야 함. 우리는 기존의 식량 안보를 위한 다자·양자간 노력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AfDB,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FAO),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 IFAD),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 WFP)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협조하기를 요구함
- (40)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리는 개도국에 대한 청정하고 이용가능한 에너지의 제공을 촉진할 것임.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대재생에너지프로그램 및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이니셔티브(Energy for the Poor Initiative)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원할 것과 양자간 노력을 확대시키고 보다 긴밀하게 조화시킬 것을 약속함
- (41) 우리는 빈곤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빈곤층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안전하고 견전하게 확산되도록 하고, 소액 금융사례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금융의 성공적인 모델을 확대할 것임. CGAP, IFC 및

기타 국제 조직과 협력하여, 우리는 G20 Financial Inclusion 전문가그룹을 발족할 것임. 이 그룹은 빈곤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법에 대한 교훈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규제 및 정책 접근을 촉진하며, 금융접근성, 금융활용능력, 소비자보호에 대한 기준을 고안할 것임. 우리는 민간분야에서 공공자금이 민간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제안을 내도록 하기 위해 G20 SME Financing Challenge를 발족할 것을 약속함

- (42) 우리는 개도국으로 자본 흐름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이의 불법적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음. 우리는 개도국으로 은닉된 자산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세계은행의 StAR 이니셔티브와 함께 은닉자산이 개도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불법적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원함. 우리는 FATF가 고객실사와 특혜적인 소유권 및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패를 탐지하고, 축소하는 것을 도울 것을 요구함. 우리는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및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의 원칙을 인지하고, 2010년까지 국제원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우리는 OECD의 '뇌물방지협약(Anti-Bribery Convention)'과 같은 뇌물에 대한 법의 강화 및 적용을 촉구하며, G20이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비준과 이의 이행의 검토를 위해 도하에서 개최된 제3차 COP에서 논의된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메커니즘을 적용하기를 요구함. 우리는 채굴산업에서 정부로 지급되는 payment의 정기적인 공개 및 이러한 기금의 수령기록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지함

☒ 양질의 고용 확대

- (43) 각국의 신속하고, 강력하며, 지속적인 정책대응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였음. ILO에 따르면, 각국의 노력은 올해 말까지 최소한 7~11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없다면 경제가 안정된 후에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경제성장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각국은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우리는 품위 있는 일자리(Decent work)를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고용 증가를 우선시하는 경기회복 정책의 시행을 약속함. 우리는 실업자와 실업위험에 처한 계층을 위한 소득, 사회보호 및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할 것임. 우리는 현재의 도전 때문에 국

- 제노동기준이 무시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합의함. 우리는 세계 경제성장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게 하기 위해 ILO의 원칙에 합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함
- (44) 강력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체제는 더 수용적인 노동시장,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및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창조하는 구조 개혁을 요구함. 각국은 국내정책을 통해서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적응하고 신기술·청정에너지·환경·건강·인프라에 대한 혁신 및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노동자들의 능력을 강화해야 함. 노동자들을 현재의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음. 우리는 평생 기술 개발(lifelong skill development)을 지원하고 미래 시장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선진국은 개도국이 그러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고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함
- (45) 우리는 성장전략과 투자에서 활발한 직업훈련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성공적인 고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흔히 고용주 및 노동자와 함께 설계되었음을 인식하고, ILO가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 회원국 및 NGO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G20을 위한 직업훈련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 (46) 우리는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고용지향적인 체제 수립의 중요성에 합의함.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런던 고용컨퍼런스와 로마 사회정상회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우리는 아울러 ILO에서 최근에 채택된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을 환영하고, 각국이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동 협약의 주요 구성요소를 채택할 것을 약속함. 국제기구들은 위기 및 위기이후 분석과 정책수립 활동에 있어서 ILO의 기준과 동 협약의 목표를 고려해야 함
- (47) 고용정책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피츠버그 정상회의 의장(미국 대통령)은 자국 노동부장관에게 2010년 초에 각국 고용·노동장관을 초청하여 곧 개최 예정인 OECD 고용·노동장관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고용 및 비즈니스를 논의하도록 요청하였음. 우리는 장관들에게 변화하는 고용상황을 평가하고, ILO 및 기타 국제기구들의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여, 추가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함. 우리는 또한 장관들이 중기 고용·직업훈련 정책, 사회보호 프로그램 및 관련 모범규준을 검토하도록 지시함

☒ 개방된 세계경제

- (48) 세계 무역 및 투자의 회복을 지속하는 것은 세계 경제성장을 복원하는데 필수적임. 우리가 함께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필요함. 우리는 무역금융

이니셔티브 2,500억 달러의 신속한 조성을 환영함. 우리는 공개되고 자유로운 시장을 유지할 것이며, 워싱턴 및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함. 우리는 투자 또는 상품·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을 신설하거나, 수출 제한 조치를 새로이 적용하거나, 수출 촉진을 위해 WTO 규범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러한 조치가 발생할 때는 즉시 원상회복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재정정책과 금융부문 지원 조치를 포함한 국내 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할 것임. 우리는 금융보호주의, 특히 개도국으로의 세계적인 자금 흐름을 제약하는 조치들로 후퇴하지 않을 것임. 우리는 그러한 조치들을 WTO에 즉각적으로 고지할 것임. 우리는 WTO, OECD, IMF 및 UNCTAD의 최근 합동 보고서를 환영하고, 상기 국제기구들이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대외 공개할 것을 요청함

- (49) 우리는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에 전념할 것임. 우리는 세부원칙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진전사항에 기초하여 야심차고 균형 잡힌 도하개발라운드의 2010년 타결을 추진하기로 결단하였음. 우리는 현존하는 입장 차이를 평가하고 좁히기 위해서는 다자간 절차의 중심적인 역할을 명시하는 WTO 내에서 양자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였음. 우리는 2010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입장 차이를 좁혀야만 한다는 것에 주목함. 우리는 장관들이 늦어도 2010년 초까지는 현 상황을 평가하고, 뉴델리 통상장관회의 이후 제네바에서 합의된 작업계획을 고려하여, 농업 및 비농업 시장접근성(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규범,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 및 기타 이슈에서 진척할 것을 요청함. 우리는 지속적으로 간여할 것이며, 다음 정상회의에서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임
- (50) 우리는 G20을 국제경제협력력을 위한 최상위의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하였음. 우리는 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권고를 다음 회의시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음. 우리는 2010년 6월 캐나다, 11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그 이후 우리는 연례적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만날 것임

● 부속서 1 :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가치

경제위기는 책임감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세계경제활동이라는 새로운 시대 도래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음. 현 위기는 우리의 성장과 변형은 상호연계되어 있으며, 지구상 어떠한 지역도 글로벌화된 세계경제로부터 차단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재확인했음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모인 우리 정상들은 우리경제가 안정적인 기반으로 돌아가 다시 번영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행동이 필요함을 인식함.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소비자, 근로자, 투자자, 기업가)가 균형있고, 공평하며, 포용적인 세계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국가내 뿐만 아니라 국가간 균형잡힌 성장과 일관된 경제·사회·환경 전략, 견고한 금융시스템, 그리고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변형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임을 공유함

우리는 경제개발과 변형에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도 나라별 제반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함

우리는 특정한 핵심 원칙은 기본적인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이러한 정신 하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가치들을 존중할 것을 약속함

- 우리는 장기적인 경제목표에 이바지하고, 지속될 수 없는 세계 불균형을 피할 수 있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담보할 책임이 있음
-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개방시장을 지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증진할 책임이 있음
- 우리는 적절한 규칙과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시장과 여타 시장이 타당성·신뢰성·투명성에 기반하여 작동하도록 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할 책임이 있음
- 우리는 감독과 투명성,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가계, 기업 및 생산적 투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금융시장을 준비할 책임이 있음
- 우리는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자원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도모하고, 기후변화라는 도전에 대응할 책임이 있음
- 우리는 교육, 직업훈련, 양질의 근무조건, 의료와 사회안전망 지원 제공을 통해 인적자원에 투자하고, 빈곤과 인종차별, 모든 형태의 사회적 배타주의를 배격할 책임이 있음
- 우리는 빈국과 부국을 포함한 모든 경제체제가 경제성장의 편익이 넓고 공평하게 공유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경제 구축의 동반자라는 점을 인식할 책임이 있음.

또한, 우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를 달성할 책임이 있음

- 우리는 세계경제 변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도전을 반영하는 국제경제 · 금융 체제를 담보할 책임이 있음

● 부속서 2 : G20 지속가능한 성장 체제

- (1) G20 국가들은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 달성, 회복력 있는 국제 금융시스템 구축, 세계경제 개방의 혜택 활용을 위한 정책을 채택할 공동의 책임을 지님. 우리는 이를 위한 각국의 전략이 상이할 것임을 인식함.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세계 성장 체제 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 단기 유연성 및 중장기 지속가능성 요건을 고려해 책임성있는 재정정책을 이행
 - 금융시스템 내 과잉 신용 성장 및 과도한 레버리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감독을 강화. 신용 및 자산 가격 주기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시건전성 및 규제 정책을 시행
 - 보다 경상수지 균형을 장려하고, 세계 번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역 및 투자 개방을 지지하며 보호주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거부
 -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시장 지향적 환율의 맥락 하에 물가 안정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시행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안전망을 개선
 - 개발 불균형 감소 및 빈곤 감축을 위해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경제 발전을 장려
- (2) 우리는 보다 균형잡힌 세계 성장을 위한 프로세스가 질서있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함. 모든 G20 회원국들은 자국 경제의 취약점 해결에 합의함
- 지속적으로 상당한 대외 적자를 유지하는 G20 회원국들은 민간 저축 지원책을 시행하고, 시장 개방 유지 및 수출 부문 강화와 동시에 재정 건전화를 이행하기로 결의
 - 지속적으로 상당한 대외 흑자를 유지하는 G20 회원국들은 국내 성장원천을 강화하기로 결의. 이는 각국 여건에 따라 투자 증대, 금융시장 왜곡 축소,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 사회안전망 개선, 수요 증가에 대한 제약 해제 등 포함
- (3) 각 G20 회원국의 1차적 책무는 자국 경제를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며, 또한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보할 공동의 책임을 지님. 정기적 협의, 거시경제정책 협력 강화, 구조적 정책 경험 교류 및 지속적인 평가가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책의 채택을 증진할 것임. 상호 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 G20 회원국들은 공동 정책 목표에 합의할 것이며, 상황 변화에 따라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정
 - G20 회원국들은 중기 정책 체제를 설정하고, 각국의 정책 체제가 전체적으로 세계 성

장의 수준 및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

- G20 회원국들은 상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 및 합의

(4) 우리는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상호 평가 프로세스를 재무장관들이 개발할 것을 촉구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장관들은 IMF의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은 조치에 착수해야 함

- 수급 · 보유고 · 부채 · 보유고 증가 패턴이 건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뒷받침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돕기 위해 G20 경제 상황에 대한 미래지향적 평가를 개발
- 재정 · 통화정책, 신용 확대, 자산 시장, 외환 상황,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경상수지 불균형의 영향 및 일관성을 평가
- 세계경제 동향, 주요 위험요인, 성장 패턴 관련 우려사항, G20 각국 및 전체의 정책 조정 제안을 G20과 IMFC에 정기적으로 보고

선진 7개국(G7)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에 의해 금융안정화포럼(FSF)에 부여된 최초 권한(1999년 2월 20일), 주요 20개국(G20)의 각국 정상에 의해 부여된 확대된 권한(2009년 4월 2일 개최된 런던 정상회의, ‘금융시스템 강화 선언문(Declaration on Strengthening the Financial System)’과 FSB가 더욱더 강화된 제도적 기초와 향상된 능력으로 재창설되도록 하는 G20 각국 정상의 요청과 강력한 규제감독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업권간·국가간 일관성 있는 이행을 통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안정을 증진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음 정관을 공포한다.

I. 총 칙

제1조 목 적

FSB는 각국 금융당국, 국제기준 제정기구(SSB) 및 국제금융기구의 업무를 국제수준에서 조정하고, 효과적인 규제, 감독, 기타 다른 금융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하에 FSB는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위해 금융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제2조 임무 및 업무

- (1) FSB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국제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 평가 및 그 대응을 위해 필요한 규제·감독 조치의 확인 및 검토
 - (b) 금융당국간 정책조율 및 정보교환
 - (c) 금융시장의 발전 및 이에 따른 규제정책의 시사점 모니터링 및 조언
 - (d) 규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모범사례(Best Practice) 모니터링 및 조언
 - (e)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정책 개발이 시의성 있게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회원국 공동의 전략적 검토(Joint Strategic Reviews) 수행
 - (f) 공동감시단의 설립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원
 - (g)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관련 국경간 위기관리에 대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ning) 수립 지원

- (h)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s) 수행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조
 - (i) 동 정관의 범위내에서 회원간 합의된 기타 업무를 수행
- (2) FSB는 건전성 및 시스템 리스크, 시장 투명성(integrity) 및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인프라, 회계처리 및 감사관련 국가별 규제체제의 변화를 고려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고 중복 또는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준 제정기구 활동의 조율을 지원하고 제고한다.

제3조 협의

FSB의 중장기적 전략적 계획, 원칙, 규범 및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FSB는 그 회원 및 민간부문과 비회원을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한다. 국제금융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 과정은 참여 국가를 확대하도록 지역 확대 활동을 포함한다.

II. 회원

제4조 회원

-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 (a) 재무당국, 중앙은행, 감독 및 규제기관 등 금융 안전성 유지에 있어 책임을 가지는 국가 및 지역 당국
 - (b) 국제금융기구 및 감독 기관
 - (c) 국제규범 설정, 규제·감독 기관 및 중앙은행

FSB 회원의 권한 및 기관의 적격성은 FSB 목표를 고려하여 총회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 (2) FSB 회원은 별표 1(☞참고)에 제시되어 있다.

제5조 회원의 책무(Commitments)

- (1) 회원은 다음을 위해 노력한다.
 - (a) 금융 안정의 유지 도모
 - (b) 금융 부문의 개방성 및 투명성 유지
 - (c) 국제적 금융 규범 도입
 - (d) IMF/세계은행의 공식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를 활용한 정기적 상호 검토 수행에 합의

FSB는 이에 대한 이행 및 평가절차에 대해 보고한다.

- (2) 제2조 (1)의 (e)에 명시된 임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제기준 제정기구는 기존 보고 체제 또는 고유 독립성을 해치는 일 없이 수행 업무에 대해 FSB에 보고한다. 본 보고 절차는 규범 설정 절차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고 보다 확대된 책임부담의 틀(accountability framework)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견고해진 규범 설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3) 국제금융기구는 각각의 법적 틀과 정책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FSB 회원으로서 참석을 한다.

III. 조 직

제6조 FSB의 구성

FSB는 다음의 내부구조로 구성된다.

- (a) 총회
- (b) 운영위원회
- (c) 의장
- (d) 사무국

총 회

제7조 총회의 책임

- (1) 총회는 FSB의 의사결정기구이다.
- (2) 총회의 의사결정은 전원합의(consensus)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3) 총회는 :
 - (a) 총회의 업무수행방식을 결정한다.
 - (b) FSB의 작업프로그램을 승인한다.
 - (c) FSB에 의해 개발된 보고서, 원칙, 기준, 권고안, 가이드라인을 채택한다.
 - (d) FSB의 회원자격(Membership)을 결정한다.
 - (e) 의장을 임명한다.
 - (f) 정관 개정을 의결한다.
 - (g) FSB의 업무와 사무에 관한 기타 문제를 의결한다.

제8조 대표 및 참석

- (1) 총회에서의 대표는 중앙은행총재 또는 부총재, 주요 감독 규제기관의 장(head) 또는 차장(immediate deputy) 및 재무부의 차관(deputy minister) 또는 차관급(deputy head)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총회 대표자는 주요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장, 중앙은행 전문 위원회 위원장, IMF,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및 OECD의 고위급 대표를 포함한다.
- (2)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며 의장이 총회를 주재한다.
- (3) 의장은, 회원과 협의를 거쳐, 비회원 기관의 대표자를 총회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석하도록 특별 초청할 수 있다. 총회의 일부 세션의 논의와 관련하여 의장은, 회원과 협의를 거쳐, 민간부문의 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

제9조 소 집

- (1) 의장은 매년 2회 이상(통상 3월과 9월)의 총회를 소집한다.
- (2) 추가 비정기 회의는 상황에 따라 개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회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한다.
- (3) 필요할 경우 FSB의 지역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제10조 좌석배정

- (1) 국가별로 배정되는 총회의 좌석 수는 해당 회원의 국가 경제 규모, 금융시장에서의 활동 및 국가적 금융 안정 체제를 반영한다.
- (2) 하나 이상의 좌석을 배정받은 대표단은 한 명의 대표자를 뒤에 앉힐 수 있다. 뒤에 앉은 대표자는 발언권(rights of the table)을 갖는다. 테이블에 앉은 대표(Representative at the table)는 주제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제11조 상임위원회와 작업반

- (1) 총회는 FSB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상임위원회 및 임시 작업반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 (2)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총회의 회원중 의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된다. 상임위원회 의장은 업무 프로그램을 총회에 보고한다. 작업반의 의장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임명한다.
- (3) 상임위원회와 작업반의 회원자격은 효과성, 균형된 대표성 및 각 상임위 또는 작업반

- 의 임무를 적절히 고려하여 각 (상임위 또는 작업반의) 의장이 (총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회원은 일반적으로 총회의 회원으로부터 선정된다.
- (4) 해당국가는 의장과 협의의 통해 상임위원회 회원이 FSB 회원으로 구성될 것인지 아니면, 회원이 아니지만 적절한 해당국가의 기관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 (5) 상임위원회 및 작업반의 의장은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회원을 임시적으로 초청할 수 있다.
 - (6) FSB 사무국은 상임위원회와 작업반의 업무를 지원한다.
 - (7) 현재의 상임위원회와 작업반은 정관 부속서에 명기되어 있다.

운영위원회

제12조 구성 및 임명

- (1)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의장의 제안에 따라 총회는 FSB 업무수행의 최대 효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적·기구의 기능적 측면에서 균형된 구성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 (2)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이전 세션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책임 및 권한

- (1) 운영위원회는 FSB의 목표를 위해 총회 소집 사이에 운영상 지침을 제공한다.
- (2) 의장은 시기와 장소는 의장이 정하여, 매년 적어도 4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3) 운영위원회는 FSB 비회원 기관의 대표를 포함하는 작업반을 구성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회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FSB의 진행되는 사업의 진행 모니터 및 지도
 - (b) 실무팀간 조율 제고 및 상임위원회 및 기타 작업반으로부터 업무 위임
 - (c) 모든 회원간 효과적인 정보 교환 보장
 - (d) 총회에서의 검토를 위해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정책개발작업에 대해 공동으로 전략적 검토 수행
 - (e) FSB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모든 일을 총회와의 협의에 따라 직접 진행

의 장

제14조 임명 및 역할

- (1) 의장은 총회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3년의 임기를 가지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의장은 국제금융정책분야에서 인정받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재직중(standing)이어야 한다.
- (3) 의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의장은 사무국을 관할한다.
- (4) 의장은 대외적으로 FSB를 대표하며, 의장은 FSB와 관련한 모든 중요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또한, 의장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FSB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결정 및 조치를 취한다.
- (5) 의장은 의장으로서 그 기능의 수행에 있어 다른 당국이나 기구가 아닌 FSB에 전념하여야 한다.

사무국

제15조 사무국

- (1) 사무국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따른다.
- (2) 사무국장은 의장의 제안에 따라 총회에서 임명한다.
- (3) 사무국장은 의장의 책임하에 있게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의장은, 총회에서 주어진 방향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전반적 방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 (4) 사무국 직원의 임명에 있어, 사무국장은 효율성과 기술적 능력에 대한 최고의 기준을 보장하되, 지역적·기구의 기능적 측면에서 균형된 구성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 (5)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당국이나 기구가 아닌 FSB에 전념하여야 한다.
- (6) 사무국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FSB의 상임위원회 및 작업반 등 FSB의 활동 지원
 - (b) 회원간 그리고 FSB와 관련 기관간 효율적 협력 보장
 - (c) 회원과 관련 기관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보장
 - (d) FSB에 배정된 재정적, 인적, 및 물적 자원 관리(회원에 의해 지지 받는 직원의 임명

포함)

- (e) 기록 유지관리, 홈페이지 관리 및 FSB의 의사소통 처리
- (f) 의장 또는 총회가 지시한 기타 기능 수행
- (7) 사무국은 바젤에 소재한 BIS에 위치한다.

IV. 부 칙

제16조 법적 효력

본 정관은 어떠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창출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제17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2009년 9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참고

FSB 회원 현황(총 24개국(52개 기관) 및 12개 국제기구)

국가	FSB 참석기관			52
	감독당국	중앙은행	재무부	
캐나다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Bank of Canada	Department of Finance	3
프랑스	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AMF)	Banque de France	Ministry of Economy	3
독일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Deutsche Bundesbank	Ministry of Finance	3
이탈리아	CONSOB	Banca d'Italia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3
일본	Financial Services Agency	Bank of Japan	Ministry of Finance	3
영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Bank of England	H M Treasury	3
미국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Department of Treasury	3
브라질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Banco Central do Brasil	Ministry of Finance	3
러시아	Federal Financial Markets Services	Central Bank of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Finance	3
인디아	Securities & Exchange Board of India	Reserve Bank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3
중국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People's Bank of China	Ministry of Finance	3
한국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ank of Korea		2
멕시코		Banco de Mexico	Ministry of Finance & Public Credit	2
스페인		Bank of Spain	Ministry of Economy & Finance	2
호주		Reserve Bank of Australia	Department of the Treasury	2
스위스		Swiss National Bank	Swiss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2
네덜란드		De Nederlandsche Bank	Ministry of Finance	2

※ 음영부분은 2009년 4월 신규 가입 회원임

국가	FSB 참석기관		
	감독당국	중앙은행	재무부
홍콩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싱가포르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인도네시아		Bank Indonesia	
사우디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터키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Turkey	
아르헨티나		Central Bank of Argentina	
남아공			National Treasury

국제기구 등

구 분	기 구	17
국제금융기구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
	World Bank	2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
국제기준 제정기구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2*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2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2*
중앙은행 그룹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	1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CGFS)	1
기 타	European Central Bank	1
	European Commission	1

* 2명중 1명(BCBS-네덜란드, IOSCO-미국)은 국가의 대표회원과 중복

가. 창립 총회 주요내용

(2009년 6월, 스위스 바젤)

1 개 관

FSB는 2009년 6월 26~27일 스위스 바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FSF이 회원국이 추가되고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할을 부여(mandate)받아 FSB로 개편된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이다. FSB는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식별 및 감독, 금융당국간 조율 및 정보교환 촉진, 금융시장 발전과 이와 관련된 규제정책 모니터링 및 자문, 국제기준 제정기구와의 공동의 정책 검토(joint strategic review), 공동감시단 가이드라인 제시와 설립 지원, 국경간 위기관리에 대한 비상계획 관리, 조기경보활동을 위한 IMF와의 협력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번 FSB에서는 G20으로부터의 위임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금융시스템이 직면한 각종 위험과 도전, FSF/FSB와 G20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2 FSB 조직구조

FSB는 총회, 운영위원회 및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취약성평가 상임위원회, 국제기준 이행 상임위원회 등의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FSB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총회 회기간에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취약성평가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Assessment of Vulnerabilities : SCAV)는 금융시스템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요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FSB 조치를 제안하고 조기경보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의장은 Jaime Caruana BIS 총재가 맡는다.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for Supervisory and Regulatory Cooperation : SRC)는 규제당국간 의견 조정 및 정책개발 이슈를 다룰 것이다. 동 상임위원회는 공동감시단의 설립 및 효율적 기능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관성 유지, 협력 및 공평경쟁(level playing)을 위해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

을 실시한다. 주요 금융회사의 국경간 위기관리에 관한 비상계획 마련 작업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보다 광범위한 위기관리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한다. Adair Turner 영국 FSA 의장이 동 상임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기준이행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for Standards Implementation : SCSI)는 FSB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실시하고, 국제금융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동 상임위원회는 건전성 규제감독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진전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Tiff Macklem 캐나다 재무부 차관이 의장을 맡는다.

국경간위기관리 작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FSB는 국경간 위기관리 작업반(Cross-border crisis management)을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산하에 설립했다. 이 작업반은 Paul Tucker 영국은행 부총재가 의장을 맡으며, 위기관리를 위한 국경간 협력 원칙 이행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3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FSB는 향후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과 자금조달시장 등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은행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있으나 구조조정과 금융회사 재무상황 개선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회사채 발행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은행대출과 증권화 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긍정적 신호가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금융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 회복력(system 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FSB는 상황이 개선될 경우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정책과 관련한 출구 전략 논의를 진전시키고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SB 회원국은 최근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경험을 공유했다. 이러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방식과 목적은 각각 다르지만, 금융시스템과 금융회사의 회복력을 평가하는데에 도움이 되었다. 회원국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가정과 방법론에 관한 정보교환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4 금융시스템 강화 관련 진전 사항

FSB는 G20와 FSB 권고사항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 이행점검 과제로서는, 국제회계기준 강화, 금융규제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접근, 헤지펀드 및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금융규제의 범위 검토, 국제적 감독 및 규제기준 준수 강화, 공동감시단, 국경간 위

기관리 및 보상체계 개선이 포함된다. FSB는 2009년 4월부터 이루어진 주요 진전사항에 대해 환영하고 금융시스템 강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촉구했다.

- IASB는 금융상품 회계기준 단순화, 대손충당금 설정 및 위험회피회계 기준 개선작업 이외에도 FSB 및 G20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작업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회계기준을 개선하여 금융회사 2009년 연차 회계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SB는 회계기준의 일치 및 경기순응성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IASB로 하여금 금융당국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재무보고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였다.
- FSB는 규제 및 감독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접근방식 채택과 관련한 진전사항을 점검하였다. 특히 BCBS는 2009년말까지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기준에는 경기순응성 및 시스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 FSB는 IOSCO가 헤지펀드 규제 원칙을 공표한 것과 Joint Forum이 건전성 및 금융안정성 관점에서 헤지펀드 감독 작업을 수행한 것을 환영하였다. FSB는 각국의 일관성 있는 기준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FSB는 IOSCO의 증권화(Securitization) 및 신용부도스왑(CDS) 감독 방식에 대한 권고사항 마련 작업을 환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SB는 2009년 9월 IOSCO의 최종보고서 발간을 기대한다.
- 신용평가사 감독 강화 작업이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다. FSB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감독 및 규제체계 수립을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 FSB는 Joint Forum이 금년(2009년)말까지 은행, 보험 및 증권 등 권역별 규제의 성격 및 범위의 적정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규제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 FSB는 국제적 감독 및 규제기준 이행촉진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했으며,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전에 세부 사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FSB는 공동감사단 관련 진전사항 및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검토하였다.
- FSB는 최근 IADI(International Association Deposit Insurance) 및 BCBS가 제시한 효과적인 예금보험시스템을 위한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을 환영했다. IADI, IMF 및 세계은행은 핵심원칙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작업을 진행중이다.

- FSB는 FSF 건전한 보상원칙(FSF 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을 감독 및 공시 지침에 구체화하기 위한 BCBS 및 IOSCO의 작업을 환영하며, 국경간 일관성 있는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FSB는 G20 런던 정상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2009년 11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그 진전사항을 보고할 것이다.

나. 제2차 총회 주요내용

(2009년 9월, 프랑스 파리)

1 개 관

FSB는 2009년 4월 설립 이후 두 번째 총회를 9월 15일 파리에서 개최하였다.

2 리스크, 취약성 및 대응에 대한 평가

FSB는 금융시스템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검토하였다.

최근 몇 개월간 금융시장의 정상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내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신용 공급도 저조하다. 많은 금융회사가 최근 이익이 증가하였지만 이는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임시적 조치에 주로 기인한다. 금융회사들은 공적 지원 조치의 중단에 대비하여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유보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보다 강화된 자본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은행은 이를 위해 과도한 배당금 지급제한, 자사주매입 및 보상에 대한 제한 등 자본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회복에 대한 우려로 은행 부문의 압박 및 금융시장 위기가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당국은 금융 회사의 재무제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각국 금융당국은 증권화 시장(securitization market)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위기를 촉발한 과도한 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FSB는 급증하는 정부 부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출구 전략의 시점과 관련된 리스크, 금융규제 개혁의 속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금융당국은 재무제표상 통화 불일치 및 불안정한 포트폴리오 자금유입과 관련된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3 개혁 추진에 대한 진전

FSB는 9월 24~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 두 건의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첫 번째 보고서는 런던 정상회의 이후 G20 및 FSB의 전신인 FSF의 권고에 따른 이행 사항 점검에 대한 보고서이며, 두 번째 보고서는 금융규제개선을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한

평가 보고서이다.

2008년 11월 G20 워싱턴 정상회의 및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개혁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은행규제 자본 Framework의 강화, 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의 개선, 리스크 관리 기준 제고, 은행의 장부내외 익스포져 개선, 보상 체계에 대한 규제와 감독, 장외파생상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중앙청산소의 도입, 헤지펀드 및 신용평가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진전이 있었다. FSB는 상기과제에 대한 진척 과정에 관하여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4 금융 규제 개선을 위한 추가 작업

개혁 의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국제적 정책 수립과 함께 각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FSB는 개혁 목표수준 유지,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의 수립, 조율 작업을 통한 국경간 일관성 유지 및 공정 경쟁의 장 조성 등을 지속할 것이다.

5 글로벌 자본 체계의 강화

금융당국은 은행의 규제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은행시스템의 자본의 수준과 품질을 높이고 경기순응성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보인다.

6 글로벌 유동성의 강화

BCBS는 2009년말까지 새로운 최소 글로벌 유동성 기준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7 도덕적 해이 감소 및 국경간 정리에 대한 역량 증가

FSB는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FSB의 국경간 위기관리 작업그룹 및 BCBS에 의해 진행중인 국경간 은행 정리 작업을 발판으로 진행될 것이다.

8 회계 기준의 강화

FSB는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회계기준 개선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건전성 감독 및 규제 감독기관·금융회사간의 논의 활성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각 회원국들은 초기에 손실을 인식함으로써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가치평가 및 충당금 적립 원칙의 간소화 및 개선을 위한 통합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독려하였다.

9 보상 체계의 개선

FSB는 보상관리 체계, 보상구조 및 공시에 대한 구체적 이행 가이드라인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제시할 예정이다.

10 금융시스템의 감독 강화

FSB는 헤지펀드의 등록, 감독 및 보고 요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 차원의 접근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 신용평가사의 등록 및 감독을 검토하였다. FSB는 또한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 및 상품에 의해 제기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IOSCO에 요청하였다.

11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강화

정부는 자본 요건을 강화하여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앙청산소 또는 조직화된 거래소(organized exchange)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청산(clearing)과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청산소의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12 증권화 시장의 재활성화

증권화에 대한 기준 및 시장 관행을 강화하기 위해 용어나 구조의 표준화, 복잡성 감소, 투명성 개선 작업 등이 진행중이다. FSB는 정부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및 시장 규제를 통해 증권 시장내 규율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13 국제기준의 이행

FSB는 국제 규제 및 감독 기준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최상의 기준 이행을 위한 경쟁을 촉진하며, FSB 회원국들은 국제기준의 이행 수준을 공개함으로써 모범을 보인다. FSB는 이를 통해 기준 이행이 미흡한 국가를 파악하고, 기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다. 제3차 총회 주요내용

(2010년 1월, 스위스 바젤)

1 개 관

FSB는 금융 개혁 의제 논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일정을 재확인하기 위해 2010년 1월 9일 바젤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국제기준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에 동의하고 금융 시스템의 최근 현황과 국가간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2 금융시장 상황

최근 몇 달 동안 금융시장은 개선되었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경우, 민간부문에서의 유동성과 자본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금번 위기동안 각 금융부문별로 시행된 다양한 지원대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반에 회복의 신호가 있으나, 그 회복의 수준은 시장별, 금융회사별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포함한 정책 대응은 상대적으로 특정 산업의 취약성을 점검하는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이 신용을 확대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3 금융규제 개선

앞으로의 작업은 위기를 유발한 취약한 부분을 인식하는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기초는 이어질 것이다. 정책적 일관성 유지와 공정한 경쟁의 장 유지를 위한 개혁작업이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 건전한 보상체계 실행

FSB 회원국들은 보상체계가 리스크와 연동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감독 강화 조치를 취했다. FSB는 2009년 12월 건전한 보상체계 실행에 관한 원칙과 기준 이행에 대한 상호평

가를 시작하였다. 이번 평가는 그 동안 주요 금융회사의 이행사항과 FSB 회원국이 보상체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보고서는 G20 정상들이 요청대로 2010년 3월까지 완료된 후 공개될 것이다. 이번 평가를 위해 금융회사와 여타 이해관계자들에게 FSB는 FSB 원칙과 기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 경험에 대해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5 은행 자본과 유동성

FSB 회원국들은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로 한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 회원국들은 은행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BCBS가 최근 권고한 글로벌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방안의 적시성과 방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회원국들은 BCBS가 자본의 정의 및 질에 대한 이슈 및 다른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글로벌 은행 시스템의 회복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논의 결과에 따른 기준과 원칙이행에 합의했다.

권고안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는 바젤II 변동 사항의 누적효과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FSB는 제안된 규제의 실행이 주는 거시경제적 영향도 평가할 것이다. BCBS는 동 평가 결과를 최종 합의될 권고안을 도출하는데 고려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FSB는 개발도상국에서 시스템적으로 발생한 유동성 문제를 평가하고 국제적 대안을 모색하는 여러 작업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6 도덕적 해이 축소와 국경간 정리를 위한 역량 강화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2010년 10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최우선적으로 실행될 것이며 다양한 FSB 회원국간의 공동작업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동 조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파산에 따른 충격 및 파산 가능성 축소, 파산한 금융회사의 질서있는 정리를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핵심 금융시장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실행 가능한 정책적 대안들은 2010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다.

FSB는 또한 금융서비스 공급의 집중도와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7 규제영역과 규제에 대한 일관성

FSB는 금융산업 분야별 감독 및 규제차이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권고안 및 금융 권역별 일관성 유지를 담은 Joint Forum 보고서에 대해 환영했다. FSB는 동 보고서에서 언급한 논의 사항에 대한 정책 개발과, 이들 논의과제 중 아직 다루지 않은 이슈에 대한 방안들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8 회계기준 강화

FSB는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회계기준을 일치시키고 보다 개선된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해 G20과 FSB가 권고한 사항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FSB 회원국들은 IASB의 금융회사 보고 안전과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시장 규제기관과의 논의 진척과 금년말까지 금융상품 기준에 대해 최종 검토를 마무리 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

9 국제기준 준수 강화를 위한 체계

금일 FSB는 국제 금융기준 준수 강화를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발표한다.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인 국제기준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FSB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금융기준 준수를 위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행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도록 다음과 같은 체계에 따라 노력할 것이다.

FSB 회원국들은 국제 금융기준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수준을 공개함으로써 모범을 보여 줄 것이다. FSB 회원국들은 국제기준 준수 평가에 있어 기간별로, 주제별 및 국가별 상호 평가를 실행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인 주제별 평가는 건전한 보상체계에 관한 FSB 원칙 이행 여부이다.

FSB는 국제 금융기준 준수에 비협조적인 회원국을 선별하여 이들이 기준 준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회원국이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법을 확정할 것이다. FSB는 우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기준이행이 미흡하고 금융규제 및 감독분야에서의 불충분한 정보공유와 비협조적인 체제로 인한 금융안정성에 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 중점을 둘 것이다. FSB는 추가적인 필요한 국가풀(pool)을 선정하고 이들의 기준 이행수준을 향상시킬 방법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Financial Stability Board holds inaugural meeting in Basel

27 June, 2009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held its inaugural meeting in Basel on 26-27 June. This was the first meeting since 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FSF) was re-established as the FSB with an expanded membership and a broader mandate to promote financial stability.

The FSB's mandate is to assess vulnerabilities affecting the financial system; identify and oversee action needed to address them; promote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among authorities responsible for financial stability; monitor and advise on market developmen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gulatory policy; advise on and monitor best practice in meeting regulatory standards; undertake joint strategic reviews of the policy development work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etting bodies; set guidelines for and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supervisory colleges; manage contingency planning for 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and collaborate wi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o conduct Early Warning Exercises.

The FSB set up the internal structures needed to fulfill this mandate. It also discussed risks and challenges facing financial systems and progress in implementing prior FSF/FSB and G20 recommendations.

Institutional structures of the FSB

The new structures of the FSB include, in addition to the FSB Plenary, a Steering Committee and three Standing Committees – for Vulnerabilities Assessment; Supervisory and Regulatory Cooperation; and Standards Implementation.

The Steering Committee will be chaired by the FSB Chair and will provide operational guidance between Plenary meetings to carry forward the directions of the FSB.

The Standing Committee for Vulnerabilities Assessment will assess and monitor vulnerabilities in the financial system and propose to the FSB actions needed to address them. Its findings will be the basis for the FSB's vulnerabilities deliberations, and will provide input for the Early Warning Exercises. It will be chaired by Jaime Caruana, General Manager of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The Standing Committee for Supervisory and Regulatory Cooperation will address coordination issues that arise among supervisors and regulators, and will raise any need for policy development that arises in this regard. It will set guidelines for and oversee the establishment and effective functioning of supervisory colleges, and will monitor and advise

on best practice in meeting regulatory standards with a view to ensure consistency, cooperation and a level playing field across jurisdictions. It will maintain a link with work on contingency planning for 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at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advise on crisis management issues more broadly. Adair Turner, Chairman of the U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will chair the Committee.

The Standing Committee for Standards Implementation will prepare the FSB's planned peer reviews of its members, which are an obligation of membership; and will report on members' commitments and progress in implementing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 and other initiatives. More broadly, the Committee will propose a framework and discuss progress in strengthening adherence to prudent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standards by relevant jurisdictions. Tiff Macklem, Associate Deputy Minister of the Department of Finance of Canada, will chair this Committee.

To take forward earlier FSF work on 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the FSB also established a 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Working Group under the Standing Committee for Supervisory and Regulatory Cooperation. The Working Group, chaired by

Paul Tucker, Deputy Governor of the Bank of England, will work to provide a framework to implement the FSF Principles for Cross-border Cooperation on Crisis Management.

Financial system risks and responses

The FSB noted signs of improvement in the global macroeconomic outlook and in some financial markets, especially funding markets. Banks have raised capital from the private sector, but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and strengthening bank balance sheets is not yet completed. Corporate bond markets continue to see strong primary issuance, but other credit channels, including bank lending and securitisation,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support a sustained recovery. It will thus be important for authorities to follow through in implementing policies to resolve problems in financial systems and strengthen systemic resilience, so that the recent positive signs can be translated into sustainable growth.

The FSB agreed on the need to develop and consult with each other on plans for exit strategies from the financial system policies put in place in response to the crisis, although these should only be implemented once conditions are suitable.

FSB members shared experiences with regulatory stress tests performed recently or planned for their financial sectors. While the formats and objectives of these tests have necessarily varied in response to local conditions and challenges, they are proving to be effective tools for assessing resilience of institutions and the financial system. Members agreed to continue exchanging information on the assumptions and methodologies used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tests.

Progress in work to strengthen financial systems

The FSB took stock of progress in implementing FSF/FSB and G20 recommendations. These include work o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developing a macroprudential approach to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reviewing the scope of financial regulation, including oversight for hedge funds and credit rating agencies (CRAs); enhancing adherence to international supervisory and regulatory standards; supervisory colleges; 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and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The FSB welcomed the significant progress made since April and encouraged continued efforts to meet the objectives of strengthening financial systems:

-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has accelerated its work programme to respond to issues and recommendations identified by the FSB, the G20 and others, including plans to issue proposals in 2009 to improve and simplify the accounting for financial instruments, loan loss provisioning and hedge accounting. The IASB indicated that the changes to simplify and address impairment in certain financial assets would be decided by the IASB in time to be implemented for the 2009 annual accounts. The FSB stressed the need to achieve convergence of accounting standards and take into account their procyclicality effects, and encouraged the IASB to explore ways to further enhance its technical dialogue with prudential authorities, market regulators and other stakeholders on financial institution reporting issues.
- The FSB reviewed progress in developing tools to adopt a macroprudential approach to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particular,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will make an integrated proposal to strengthen the capital and liquidity regime by end-2009, which will include requirements to address procyclicality and systemic risk.
- The FSB welcomed the publication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of Principles for Hedge Funds Regulation, and work by the Joint Forum on hedge funds oversight from a prudential and financial stability perspective. The FSB stressed the need for coherent national implementation.

- The FSB welcomed the IOSCO work to develop recommendations on regulatory approaches to securitisation and credit default swap markets. It looked forward to publication of the final IOSCO report in September 2009.
- National and regional initiatives are ongoing to strengthen oversight of CRAs. The FSB will continue to work to ensure a globally consistent approach to oversight and regulation of CRAs, together with its members.
- The FSB looked forward to the outcome later this year of work by the Joint Forum to analyse regulatory gaps and propose solution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nature and scope of regulation across banking, insurance and securities markets are appropriate and consistent.
- The FSB discussed a mechanism to promote a race to the top in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upervisory and regulatory standards. It will develop the details in the design of this program ahead of the Pittsburgh Summit in September 2009.
- The FSB discussed efforts underway and next steps in its work on supervisory colleges and set work in train to promote consistency in approaches and identify best practices.
- The FSB welcomed the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recently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 and the BCBS. Work is underway between IADI and the IMF and World Bank to develop an assessment methodology for these Core Principles.
- The FSB welcomed national initiatives and work by the BCBS and IOSCO to incorporate the FSF 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in their supervisory and disclosure guidance, and stressed the need for consistent implementation across jurisdictions.

The FSB will continue to monitor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G20 London Summit recommendations and provide a report to the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in November 2009. It will also report on progress to the G20 Ministers and Governors and to the Pittsburgh Summit in September 2009.

Financial Stability Board meets in Paris

15 September, 2009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met in Paris on 15 September. This was the second plenary meeting of the FSB since its establishment in April.

Assessment of risks, vulnerabilities and responses

The FSB reviewed the main risks facing the financial system and potential policy responses.

Despite welcome signs of movement toward normalisation of markets in recent months, fragilities remain and the supply of credit remains weak. Although many financial institutions have returned to profitability in recent quarters, this owes much to the extraordinary official measures to stabilise the system. It is important that firms retain these profits in order to rebuild capital to support lending after official support measures have been removed and prepare to meet future higher capital requirements. To these ends, banks need to take a combination of capital conservation measures, including actions to limit excessive dividend payments, share buybacks and compensation.

There is a risk that a revival of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recovery could trigger renewed banking sector strains and turbulence in asset markets. To address the current challenges, authorities will continue to foster the strengthening and transparency of balance sheets. Authorities will also work to rebuild securitisation markets, so that these markets can support sustainable credit growth while avoiding the excesses that characterised them in the lead-up to the crisis.

Other risk areas discussed by the FSB included: the market impact of rapidly rising government debt, risks related to the timing of exit strategies from current policies, and the challenges in maintaining an appropriate balance and pace of regulatory reform. Authorities in emerging economies are assessing policy challenges related to currency mismatches on sectoral balance sheets and instability in portfolio flows.

Progress in implementing reforms

The FSB will submit two reports to the G20 Leaders' Summit in Pittsburgh on 24-25 September: an overview of progress since the London Summit in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G20 Leaders and of the FSB's predecessor, 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and a forward-looking assessment of next steps for improving financial regulation.

Good progress has been made on the policy development needed to implement the package of reforms set out in previous FSF reports, the G20's Washington Action Plan of November 2008 and the London Summit Statement of April 2009. In particular: the Basel capital framework has been strengthened; accounting standards and practices enhanced; standards for risk management raised; bank disclosures of on- and off-balance sheet exposures improved; 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integrated into the supervisory framework; central counterparties for over-the-counter derivatives introduced; stronger oversight regimes for hedge funds and credit rating agencies developed; and supervisor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mproved. The FSB will report more fully to the Pittsburgh Summit on progress in these and other areas.

Further work to improve financial regulation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o implement the reform agenda in full. It is important that international policy development be completed and consistent national implementation follow. The FSB will continue to work to ensure that the goals remain ambitious, that clear targets are set that maintain momentum towards those goals, and

that coordination takes place to assure consistency across borders and maintain a level playing field.

Strengthening the global capital framework. Decisions have now been taken by supervisors that will lead to a comprehensive set of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ital framework which would substantially raise the level and quality of capital and reduce procyclicality in the banking system. The reforms will set reasonable implementation windows to avoid impeding the recovery of the economy.

Making global liquidity more robust. The Basel Committee will publish by end-2009 specific proposals for a new minimum global liquidity standard.

Reducing moral hazard and strengthening capacity for cross-border resolution. The FSB is setting in train a work programme to address the moral hazard risks and other challenges posed by 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s. This will build upon the work underway by the FSB's 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Working Group and the Basel Committee's ongoing work on cross-border bank resolution.

Strengthening accounting standards. The FSB welcomed the steps taken by accounting standard setters to address weaknesses in existing standards and the enhanced dialogue between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prudential authorities and market regulators on financial institution reporting issues. Members encouraged agreement on converged standards that would simplify and improve principles for valuation and provisioning and mitigate procyclicality by recognising credit losses at an earlier stage of the cycle.

Improving compensation practices. The FSB will set out for the Pittsburgh Summit specific implementation guidelines on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disclosure of compensation, which will limit the level of compensation in the light of the need to conserve capital and ensure that the structure and incentives are aligned with good risk management, in line with the FSB 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in

financial institutions issued in April.

Expanding oversight of the financial system. The FSB reviewed the progress to implement consistent regulatory approaches to the registration, oversight and reporting requirements of hedge funds, and also the registration and oversight of credit rating agencies. The FSB also asked IOSCO to continue its work on the issues raised by unregulated markets and products.

Strengthening the robustness of the OTC derivatives market. The official sector will strengthen capital requirements to reflect the risks of OTC derivatives and further incentivise the move to central counterparties or organised exchanges. It will strengthen standards for central counterparties to address the issues specific to clearing OTC derivatives.

Re-launching securitisation on a sound basis. Regulatory and industry initiatives are underway to strengthen standards and market practices for securitisation, including standardising terms and structures, reducing complexity and enhancing transparency. The FSB noted that the official sector, through supervision of market participants and regulation of markets, must provide the framework that ensures discipline in the market as it revives.

Adhere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 FSB is developing a framework to strengthen adherence to internation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standards. This framework will be used to promote a race to the top in standards implementation, with FSB members leading by example in disclosing their degree of compliance with these standards. The FSB will also use the framework to identify jurisdictions of concern with reference to prudential and regulatory standards relating to cooper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and develop a toolbox of measures to promote adherence.

Financial Stability Board meets on the financial reform agenda

9 January, 2010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met in Basel on 9 January to take forward the regulatory policy reform agenda and reaffirm the timelines for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2010. The meeting also agreed on a framework for strengthening adhere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viewed current conditions and adjustment in the financial system.

Financial conditions

Financial conditions have strengthened across a range of markets in recent months. For many financial institutions, access to liquidity and capital from the private sector has improved. As a result, a variety of emergency financial sector support measures put in place during the crisis are being withdrawn or scaled back.

Although there are signs of recovery in the global system as a whole, the strength of that recovery is increasingly differentiated among markets and institutions. The policy response, including continued official support, may therefore need to be more targeted to addressing specific areas of weakness than during the crisis itself and its immediate aftermath. It is important that liquidity and risk capital be directed toward supporting credit to sectors that will contribute to a stronger real economy,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mproving financial regulation

Further work is essential to address the underlying weaknesses that gave rise to the

crisis. Momentum is being maintained towards meeting the clear targets set by G20 Leaders for improving financial regulation. Coordination is taking place to achieve consistency across borders and maintain a level playing field.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FSB members are undertaking substantial changes in oversight of compensation practices to assure they are better aligned with risk.

The FSB launched in December 2009 a peer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The review will focus on the steps being taken or planned by FSB member jurisdictions to ensur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as well as progress to date in implementation by significant financial institutions. The review is to be completed by March 2010, as requested by G20 Leaders, and the resulting report will be published.

As part of this review, the FSB is inviting feedback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stakeholders on practical experiences in implementing the FSB Principles and Standards (or the respective national rules).

Bank capital and liquidity. FSB memb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raising the quality and level of capital and liquidity buffers in the banking system. They expressed their support for the timing and direction of the Basel Committee's recent consultation package of proposals to strengthen global capital and liquidity regulations with the goal of promoting a more resilient banking sector. Members noted the importance of the Basel Committee moving forward with finalisation of the outstanding issues, including in the area of the quality and definition of capital, as part of the consultation process. Members confirmed their commitment to implement the resulting standards, thus preserving a level playing field as the resilience of the global banking system is strengthened.

The planned quantitative impact assessment of the proposals will take careful account of the cumulative effect of all elements of the proposed Basel II changes. The FSB will assess the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regulation.

The Basel Committee will take this assessment into account in framing the appropriate transitional arrangements.

Separately, the FSB is coordinating a number of workstreams to assess and propose international policy actions to address system-wide cross-border liquidity risks, including the particular issues that arise for emerging markets.

Reducing moral hazard and strengthening capacity for cross-border resolution. The FSB agreed on the next steps in the work programme it announced last September to develop by the end of October 2010 a package of measures to address the “too big to fail” problems associated with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This work is being taken forward as a high priority. It brings together projects by a number of FSB member bodies, and covers three areas: reducing the probability and impact of a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failure; improving the capacity to undertake an orderly resolution of a failing firm; and strengthening the core infrastructures and markets. A preliminary assessment and possible policy options will be presented to the June 2010 G20 Summit.

The FSB also discussed changes in concentration and competitive conditions in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The perimeter and consistency of regulation. The FSB welcomed the Joint Forum report on the differentiated nature and scope of regulation, which makes recommendations to address current gaps in supervision and regulation, and to increase the consistency of approach across sectors. The FSB will monitor policy development on the issues the report identifies and propose action where issues raised are not yet being addressed.

Strengthening accounting standards. As requested by the G20 Leaders, the FSB continues to monitor progress in implementing G20 and FSB recommendations for improved, converged accounting standards. FSB members welcomed the IASB’s plan to continue its enhanced technical dialogue with prudential authorities and market

regulators on financial institution reporting issues, and to conclude its full review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standard by the end of this year.

Framework to strengthen adhere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 FSB is publishing today the framework that it is putting in place for strengthening adherence to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s necessary to protect financial stability. The FSB will foster a race to the top by encouraging all countries and jurisdictions to raise their level of adherence to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 Under this framework:

- FSB member jurisdictions will lead by example, including by implementing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 and disclosing their level of adherence.
- FSB member jurisdictions will undergo periodic thematic and single-country peer reviews to evaluate their adhere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 first thematic review i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FSB 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 The FSB is finalising procedures to encourage the adherence of all countries and jurisdictions to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 including by identifying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and assisting them to improve their adherence. The initial focus of the FSB is on jurisdictions that could pose a risk to financial stability because of their systemic importance and their weak adherence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standards in the financ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area. The FSB is prioritising a pool of jurisdictions to engage in dialogue in order to further evaluate their adherence to the relevant standards and possible ways to improve adherence, and will launch this evaluation process by end-February 2010.

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BCBS)

(1) 설 립

- 1974년 12월 독일 Herstatt Bankhaus 파산을 계기로 은행감독당국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BIS 후원 아래 G10 중앙은행총재회의 결정으로 설립
 - G10 국가와 스위스를 포함한 11개국으로 출범
 - 2008년 11월 G20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FSF 및 BCBS 등 주요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회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9년 3월 우리나라(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를 비롯한 7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27개국이 회원으로 활동
 -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스페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한국(2009년 3월 가입),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홍콩, 싱가포르

(2) 기 능

- 은행감독업무의 질적 수준향상과 국제적인 표준화
- 각국 감독제도의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개선
- 각국 감독 당국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 촉진
- 건전성 감독표준 강화를 위한 비회원국간의 교류
- 기타 국제기준 제정기관과 협력

(3) 조 직

(가) 최고위급 회의

- 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며, BCBS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중요 국제 감독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제·개정 여부를 결정하며 BCBS

의 전략적인 방향을 결정

(나) 정례회의

- 실질적으로 은행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 권고사항을 결정하며, 중요사항을 최고 위급 회의에 상정

(다) 소위원회

1) 기준이행소위원회(SIG)

- 회원국간 정보공유를 통해 바젤Ⅱ 등 국제기준이행의 국가간 일관성 증진을 도모
- 산하에 신바젤협약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적정성검증소그룹과 운용위험소그룹을 운영

2) 정책개발소위원회(PDG)

- 과거 자본대책반(Capital T/F)을 대체하는 조직으로 감독 관련 이슈들을 식별하여 필요에 따라 정책 개발 및 제안
- 산하에 위험관리 및 모델링그룹, 조사분석대책반, 유동성작업반, 자본정의작업반, 바젤Ⅱ 모니터링그룹, 트레이딩복소그룹, 바젤Ⅱ 및 자본 실무작업반을 운영

3) 회계 대책반

- 회계, 감시기준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장규율이 작동되는 여건을 마련
- 개념구조이슈소그룹, 금융상품관행소그룹, 감사소그룹 등 운영

나. 국제증권감독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IOSCO)

(1) 설 립

- 1983년 에콰도르에서 개최된 미주 11개 증권감독기관 회의에서 Inter-American Regional Association을 국제적인 증권감독기구로 확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IOSCO 창설
- 109개 정회원, 11개 준회원, 68개 관계회원 등 188개의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
 -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예금보험공사가 준회원으로 활동중

(2) 기 능

- 효율적 시장규제방안, 국제증권거래에 관한 감독 및 기준 설정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상호간 협력 증진을 도모
- IOSCO는 (i)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의 이행 (ii)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 관련 다자간 양해각서 체결 (iii) 증권 규제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이행평가방법을 통한 이행평가를 3대 중점과제로 추진

(3) 조 직

(가) 대표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 PC)

- 연차총회 기간중 소집되며 집행위원회와 회원이 제출한 결의안의 심사 및 승인을 담당

(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 EC)

- IOSCO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예산 및 결산을 승인

(다)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 TC)

- 회계 및 공시, 유통시장규제, 시장중개기관 규제, 법집행 및 정보교환, 투자신탁 관리 등 국제 증권시장과 선물거래 관련 이슈를 검토하며 산하 5개 실무작업반 운영

(라)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ttee : RC)

- 회원국의 특정 지역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아중동 지역위원회, 유럽 지역위원회, 미주 지역위원회 등 4개의 지역위원회가 있다.

(마) 신흥시장위원회(Emerging Market Committee : EMC)

- 산하에 5개 실무작업반을 두고 그 연구결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

(바) 자율규제기관협의회(SRO Consultative Committee : SROCC)

- 64개 관계회원으로 구성되며, 대표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참여 불가

다. 국제보험감독자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IAIS)

(1) 설 립

- 1990년 전미보험감독관협회 총회에서 IAIS 창설 논의를 시작하여, 1994년 83개국이 참가하는 IAIS를 창립
- 정회원 146개 기관(4개 국제기구, 142개 감독기관)과 옵저버 133개 기관이 활동
 - 2002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정회원 자격 보유

(2) 기 능

- 효율적이고 공정한 보험시장 유지를 위한 보험감독제도 개선에 기여
- 적절한 감독규제를 받는 보험시장의 발전 증진
- 보험감독 관련 준칙,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촉진
- 보험감독자간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자문, 교육, 훈련 및 정보교환 촉진

(3) 조 직

(가) 총 회(Association in General Meeting)

- 연차총회 개최지 결정, 예산 관련 승인, 각종 보험감독관련 지침서 채택 등 IAIS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 총회 결정사항의 이행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최고 집행기구

(다)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 각종 보험감독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담당하며, 산하에 지급여력소위원회, 재보험소위원회, 회계소위원회 등 9개 소위원회 및 1개의 대책반이 활동중

(라) 이행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

- 기술위원회가 제정한 각종 보험감독관련 국제기준 이행, 개발도상국의 보험감독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연수제공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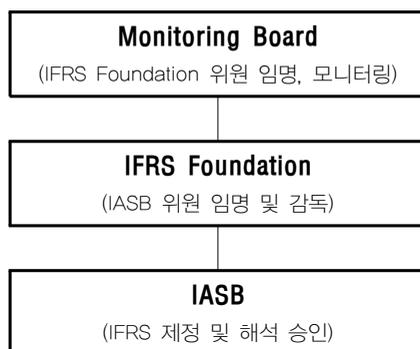
(마)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 IAIS 회원국의 연회비 책정 및 경비지출 담당

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IASB)

(1) 국제회계기준 관련 기구 지배구조

- 국제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독립된 기준 제정기구인 IASB와 IASB를 감독하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Foundation), IFRS Foundation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Foundation과 자본시장 감독당국간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Monitoring Board로 구성



(2) Monitoring Board

- (목적) IFRS Foundation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Foundation과 자본시장 감독당국간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
- (구성) EC, IOSCO 신흥시장위원회 의장, IOSCO 기술위원회 의장, 일본 금융청장, 미국 SEC의장 등 5인
- (기능) IFRS Foundation 위원 선임과정 참여 및 선임 승인
 - Foundation 재원조달 및 관리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 Foundation의 IASB 감시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 회계 현안을 Foundation 또는 IASB에 전달

(3) 국제회계기준 재단(IFRS Foundation)

- (목적) IASB를 감독하기 위해 2000년 설립된 비영리재단(런던)
- (구성) 총 22명(감사인, 기업, 이용자, 학계, 정부 관계자 등)

- * 북미 : 6명(미국 5명, 캐나다 1명)
 - 유럽 : 8명(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폴란드 각 1명)
 - 아태 : 6명(일본 2명, 중국 2명, 인도 1명, 호주 1명)
 - 기타 : 3명(남아공 1명, 브라질 1명)
- (기능) IASB 위원 임명, IASB 예산승인, 재원조달 및 관리, 홍보, IFRS Foundation 정관 개정 승인 등
 - ※ 최근 IASCF에서 IFRS Foundation으로 명칭 변경(2010년 3월)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목적) IFRS를 제·개정하는 독립된 기준 제정기구(런던)
- (구성) 위원장을 제외하고 각 국가별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 * IASCF 정관 개정으로 위원이 종전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예정
 - * 미국 4명, 유럽 4명, 아태 4명(일본, 중국, 인도, 호주 각 1명), 기타 2명(남아공 1명, 브라질 1명)
- (기능) IFRS 제·개정, 관련 해석서 승인 등

2008.11.15	G20 워싱턴 정상회의(제1차 정상회의) -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논의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원칙 천명
2009.2.2	G20 실무작업반(WG1) 회의(영국 런던) - 금융위기 발생의 주요원인 및 금융위기 극복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비전 설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
2009.2.24	G20 실무작업반(WG2) 회의(프랑스 파리) - 규제·감독당국간 협력, 시장신뢰성 회복, IMF/FSF 협력 등 논의
2009.3.26	FSF(FSB) 회원국으로 한국 포함 통보
2009.4.2	G20 런던 정상회의(제2차 정상회의) - ① 재정확대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 ② 보호주의 저지, ③ 신흥·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 ④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안정 조치, ⑤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⑥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논의
2009.6.8	FSB 비협조국가 컨퍼런스 콜 - 판단기준, 국제기준 이행 세부 원칙 및 평가절차, 국제기준 이행 강제 수단, 이행 강제를 위한 상호평가 활용 등 논의
2009.6.26~27	FSB 창립 총회(스위스 바젤) - FSB 기관 구성, G20 정상합의 이행상황 점검, 공동감시단, 보상 체계 개선, 국경간 위기관리 등 논의
2009.7.14	FSB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구성 공식 통보(FSB 의장 서신)
2009.7.20	FSB 운영위원회 컨퍼런스 콜 -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FSB가 제시할 사항 논의
2009.8.5	FSB 운영위원회 회의(독일 프랑크푸르트) - 신흥국 외환시장 안정,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증권화 재활성화의 중요성,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합화 등 논의
2009.8.29	FSB 운영위원회 회의(영국 런던) - 신흥국에 대한 안정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국제기구의 대안 연구 및 외환/외화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한 각국 감독당국의 적절한 국내외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국제회계기준의 조속

	한 이행, 은행의 자본확충, 거대 다국적 은행의 자회사, 장외파생상품 규제강화 등 논의
2009.9.9	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회의(영국 런던) - ① 공동감시단, ② 거대다국적 은행 규제, ③ 증권화 재활성화, ④ 회계제도 개선, ⑤ 보상원칙 이행 등 논의
2009.9.15	FSB 제2차 총회(프랑스 파리) - 자본규제 강화 방법 및 일정,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축소, 금융상품 회계기준 개선, 보상관행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논의
2009.9.24	FSB 총회 컨퍼런스 콜 - 보상원칙 이행기준 최종 검토 및 정관 승인
2009.9.24~25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제3차 정상회의)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최빈국 지원, 고용, 무역,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합의
2009.10.26	FSB 운영위원회 회의(이탈리아 로마) -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2009.11.6~7)에 FSB가 제출할 보고서(① 금융지원 정상화 조치, ②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작업계획, ③ G20 권고안 이행현황(건전성규제, 보상, 장외파생상품, 이행상황표 등), ④ 국제금융기준 이행강화(국제공조 현황, 비협조지역 판단기준, FSB 상호평가, 이행상황 평가) 등 논의
2009.11.2	FSB 총회 컨퍼런스 콜 - ① 금융지원조치 정상화 계획, ② 국제기준 이행강화(기준이행상임위 보고서), ③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작업계획, ④ G20/FSB 권고안 이행현황 등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2009.11.6~7)에 FSB가 제출할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2009.11.24·27	FSB 긴급 운영위원회 컨퍼런스 콜 - ‘두바이월드 채무상환 유예요청’ 관련 각국 은행의 익스포져 현황 및 시장상황, 향후 추이에 대해 긴급 논의
2010.1.9	FSB 제3차 총회(스위스 바젤) - BCBS 자본·유동성 규제 공개초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

- 사의 도덕적 해이 축소 방안, 규제의 차별화된 속성 및 범위, 회계 기준 강화, 국가별 상호평가 등 논의
- 2010.1.18 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영국 런던)
-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의 작업현황 보고, 증권시장의 활성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등 논의
- 2010.2.12 FSB 운영위원회 컨퍼런스 콜
- 그리스 금융위기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해 논의
- 2010.2.26 FSB 기준이행상임위원회(서울)
-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공동으로 기준이행상임위원회를 개최, 상호평가, 국제기준이행 강화 및 방법, 평가절차 논의
- 2010.3.4 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싱가포르)
- 각국 감독 강화에 대한 소개, 시스템적 중요회사에 대한 대응, 공동감시단, 국가별 규제차이 검토와 관련 Joint Forum 업무현황 소개, 증권화 시장 활성화 등 논의
- 2010.3.5 FSB 총회 컨퍼런스 콜
- 기준이행상임위의 업무현황 보고, 국제기준이행 방법, 평가절차, 대상 등에 관한 보고서 승인
- 2010.3.8~9 FSB 운영위원회(스위스 바젤)
- 회계기준 강화 및 통합, BCBS의 규제개혁안 확정, 증권화시장 활성화, 은행 자금조달 회복, 시스템적 중요금융회사, 보상체계관련 주제별 평가, 글로벌 유동성, 경쟁 조건의 변화 등 논의

FSB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인 쇄 2010년 4월

발 행 2010년 4월

발행처 금융위원회

자 문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전 화 (02) 2156-9783

팩 스 (02) 2156-9789

인 쇄 한국컴퓨터인쇄정보 (02) 2274-8101
